『가계동향조사』 통계정보보고서

2018. 12.

본 이용자용 통계정보보고서는 정기통계품질진단 수행과정에서 통계작성기관이 작성한 보고서로 작성기준 시점에 따라 현재의 통계작성 정보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朴 레〉

(저	목	え	급	>

١.	조사개요1
П.	통계의 작성목적 및 이용7
III .	조사설계9
IV.	자료수집46
٧.	행정자료 활용(행정자료 활용통계)69
VI.	자료처리72
VII.	통계추정 및 분석77
VIII.	통계공표, 관리 및 이용자서비스97
IX.	참고문헌107

◆ 보고서 개요 ◆

이 보고서는 가계동향조사(소득·지출부문) 자료 및 통계를 생산하기 위하여 통계청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설명한 것이다. 보고서의 작성목적은 조사의 배경, 연혁, 이용자 및 용도와 조사에서 이용되는 개념과 방법론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알고자 하는 통계작성 담당자(통계 전문이용자, 품질진단자 또는 승인담당자)에게 통계과정 전반에 대하여 포괄적이고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조사표개발, 표본설계, 자료수집, 자료 입력 및 처리, 통계추정 및 분석, 통계공표·관리 및 이용자서비스, 통계기반 및 개선 등에 대한 설명이 수록되어 있다.

I. 조사개요

1. 통 계 명

가계동향조사(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 가계소득조사/가계지출조사

2. 법적근거

○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 제101006호

- ※ 개편된 가계동향조사 체계내에서 지출부문은 가계동향조사(지출), 소득부문은 가계동향 조사(소득) 이름으로 조사를 실시
- → 가계동향조사 부문별로 가계동향조사(지출)과 가계동향조사(소득)으로 변경 승인

3. 조사방법

- 조사방법
 - (소득부문) 조사원이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표본 가구에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는 면접 방식
 - (지출부문) 조사원이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표본 가구에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는 면접 방식(연간조사표)과 표본가구가 직접 작성하는 자기기입 방식(가계부) 혼용

4. 통계작성기관/부서명

○ 통계청 / 사회통계국 복지통계과

5. 조사 및 공표주기

○ 조사주기 : (소득부문) 매월/(지출부문)매월

○ 공표주기 : (소득부문) 분기/(지출부문)연간

6. 통계작성과정 개관

- 일반사항
 - 본 조사는 조사기획 및 준비(복지통계과), 표본설계(표본과), 실사준비 및 조사실시(복지통계과· 표본과·지방청), 내검(지방청·복지통계과), 자료처리 및 공표(복지통계과) 순으로 진행

[소득부문]

업무명	담당	추진일정	업무내용
가구관리 및	지방청(시무소)	전월 경활	- 대상가구 방문(설득) 및 변동사항 파악 - 가구명부 작성 및 보완 - 조사표류 배부(비밀보호용 봉투 이용) *신규 가구는 조사표 배부 시 안내문을 공지 (붙임3,4 참조)
조사표 배부	조사 담당자	본조사 기간	
대상가구	표본과	금월	- 구역조정 등 표본대상가구 변동처리
변동처리		1일~10일	*가구표본 관리지침서 준수
기입지도	지방청(사무소)	금월	- 수시방문 및 전화 등을 통한
및 점검	조사 담당자	1일~말일	조사표 기입지도
조사표 회수	지방청(사무소) 조사 담당자	익월 1일 ~5일	 가계소득조사 조사표 회수 가구실태 조사표 변경내역 확인 가구원 전출입 변동처리 응답완료 가구 필수품 지급 *조사필수품 지급 관리 규정 준수
자료입력 및	지방청(시무소)	익월	가구부문통합관리시스템(HIMS) 입력내용검토 후 착오내역에 대한
내용검토	조사 담당자	6일~18일경	재확인 (전화 등) 및 보완 가구·가구원별 수준분석(전월, 전년동월 등)
자료집계 및 결과분석	복지통계과	매월·분기별	- 적격·부적격가구 등 가구현황 및 조사대상 가구·가구원 변동처리 내검 - 가계소득 및 비소비지출 가구별 내검 - 가구 특성별 자료 집계 및 결과표 작성 - 관련 참고자료 수집·작성
결과공표	복지통계과	분기별	- 가계소득조사 공표

[지출부문]

업무명	담당	추진일정	업무내용
조사구 확인	지방청(사무소) 조사 담당자	전월 1~2일	- 조사구 적격여부 확인 및 대체 - 조사대상가구 확인
설득 및 가 계부 배부	지방청(사무소) 조사 담당자	전월 1일 ~말일	대상가구의 조사 참여 설득가구명부 작성가계부, 비밀보호용 봉투 등 배부전자가계부 사용법 설명
연간조사표 조사	지 방청(사무소) 조사 담당자	당월 1일 ~10일	연간조사표 조사상반기가계부 기입지도
연간조사표 입력 및 내검	지방청(사무소) 조사 담당자 복지통계과	당월 11일 ~15일	- 연간조사표 입력 및 내검
	지 방청(사무소) 조사 담당자	당월 16일 ~말일	- 상반기가계부 회수·입력 - 하반기가계부 기입지도 - 연간조사 영수증 수집 및 보완
하반기가계부 회수 및 종합내검	지방청(사무소) 조사 담당자 복지통계과	익월 1일~10일	- 상반기가계부 내검 - 하반기가계부 회수·입력 - 모든 조사표에 대한 연계종합내검
본청 종합내검	복지통계과	익월 11일~14일	- 본청 내검 확인 및 회신
결과공표	복지통계과	연간	- 가계지출조사 공표

7. 조사연혁

□ 개발배경

- 가구에 대한 소득 및 지출 동향 실태를 파악을 통한 국민소득의 수준변화 측정 및 분배 불평등도 파악은 정부 정책의 토대를 형성하는 기초 작업임.
- 특히, 가구를 단위로 한 가계수지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정부 정책 효과를 시의성 있 게 파악하기 가구 조사 및 통계 기법이 필요함.
- 가계동향조사는 이러한 필요성하에 시작되었으며, 일제 강점기부터 최초로 시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조사품목, 조사 방법 등의 구체적 기록이 남아 있지 않으므로 1950년 한국은행에서 시작한 것을 최초의 가계조사로 봄.

□ 조사이력 연혁

○ 가계동향조사는 일제시대부터 최초로 시행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조사품목, 조사방법 등이 기록이 남아있지 않으므로 1950년 한국은행에서 시작한 것을 최초의 조사로 보고 정리 하였다.

가. 한국은행 조사 시기(1950~1962)

- · 조사방법 : 매년 1, 4, 7, 10월 분기조사(면접조사) (단, 식료품은 월의 10일간 가계부 기장)
- · 소득 : 근로소득, 기타소득 · 기타수입 : 자산감소, 부채증가
- 소비지출 : 음식물비, 주거비, 광열비, 피복비, 잡비 비소비지출 : 조세 및 잡부금, 지불이자 등

나. 제1차 개편(1963~1974) : 5대 비목 세목 조정(조사통계국 이관)

- · 조사방법 : 매년 1, 4, 7, 10월 분기조사(면접조사) (단, 식료품은 월의 10일간 가계부 기장)
- · 조사규모 : 1,700가구('63~'69) → 1,600가구('70~'71) → 1,800가구('72~'76), 다목적 표본 1차개편('72)
- 조사품목 : 근로자 소득, 지출 / 근로자외 지출
- 국제노동기구의 분류방식 채택. 주거비와 피복비 중 일부를 잡비에 포함

다. 제2차 개편(1975~1981) : 5대 비목 세목 조정

- 조사방법 : 품목 매월 가계부 기장방식 가구실태 : 면접조사(이후 동일)
- · 조사규모 : 1,800('72~'76)가구 → 4,000가구('77~'81) 다목적 표본 2차 개편('77)
- 조사품목 : 근로자 소득, 지출 / 근로자외 지출
- 제12차 국제노동통계회의 항목분류 권고안 반영 및 구입 비중에 따라 일부항목 조정
- 대분류는 5대 분류로 유지. 식료품, 주거비, 잡비 등에서 세부항목을 나눔

라. 제3차 개편(1982~1989) : 소비지출 5대 비목 → 9대 비목

- · 조사규모 : 4,400가구('82~'87) → 4,500가구('88~'92), 700개 조사구 다목적 표본 3차 개편('82), 4차 개편('88)
- 조사품목 : 근로자가구 및 근로자외 가구 모두 소득, 지출 조사
- 1988년부터 추정식에 가중치 도입
- 1988년 10월부터 현재의 지역코드체계 도입, 가구 가중치 도입
- 5대 비목을 9대 비목으로 확대, 유사항목 통폐합(잡비 세분)
- · 수도료(주거비 → 광열·수도), 성냥, 양초 등(광열 → 가구집기가사용품),
- · 가사사용인급료(잡비→가구집기가사용품), ·위생대(잡비→보건의료), 구두닦기(잡비→피복 및 신발), 세제, 살충제, 화장지, 청소료(잡비→가구집기가사용품)

마. 제4차 개편(1990~1994) : 소득세분, 소비지출 9대 비목 유지

· 조사규모 : 4,500가구('88~'92) → 5,500가구('93~'02), 700개 조사구, 다목적 표본 5차 개편('93 적용)

- · 소득부문 세분 : 기타소득 → 재산소득, 이전소득, 재산소득으로 세분
- 9대 비목은 유지하고 세부항목을 금액 및 향후 지출증가를 고려하여 신설하거나 세분함

바. 제5차 개편(1995~1997) : 9대 비목 → 10대 비목

· 조사규모 : 5,500가구('93~'02), 700개 조사5구

• 경상소득 : 소득원천별 재분류

· 소비지출 : 교육교양오락비 → 교육과 교양·오락으로 분리

사. 제6차 개편(1998~2002)

- · 조사규모 : 5,500가구('93~'02), 700개 조사구, 다목적 표본 6차 개편('98 적용)
- 배우자 정보추가, 가구원의 가구주와 관계 추가 등 실태부문 조사 강화
- 소득부문에서 사업소득(가구주, 배우자, 기타가구원)을 원천에 따라 세분
- 교육부문 등 일부 변경

아. 제7차 개편(2003~2004)

- · 조사규모 : 7,300가구('03~'05), 읍면지역 비농어가 포함, 999조사구 다목적 표본 7차 개편('03 적용)
- · 항목을 기존 564개에서 295개로 축소. 소득(31)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지출을 크게 축소 하여 소비지출 237개 항목으로 축소하였고, 비소비지출은 12항목으로 축소

자. 제8차 개편(2005~2006)

- · 조사규모 : 7,300가구('03~'05) → 8,700가구('06~) 1인가구 포함, 999조사구
- · imputation 처리 : 가구대체법(hot deck) → 가중치조정법('06. 2/4~)
- 항목을 소비자 물가의 가중치로써 활용할 수 있도록 445개로 확대 개편

차. 제9차 개편(2007~2008)

- · 조사규모 : 8,700가구('06~) 1인가구 포함, 999조사구 다목적 표본 8차 개편('07.9 적용)
- · 조세 등을 경상적인 항목과 비경상적인 항목으로 분리. 교육부문의 기타교육 중 방과 후 교육을 구분

카. 제10차 개편(2009~)

· 조사규모 : 8,700가구('06~) 1인가구 포함, 999조사구

- · 항목분류체계를 UN 등에서 권고하는 COICOP분류체계로 개편.
- · 가계지출에서 소비시점을 구입시점으로 통일하였으며(가구간 이전을 소득 및 지출에서 인식하지 않음), Canberra 그룹의 권고에 따라 경상소득 파악이 가능하도록 분류체계 변경
- 비소비지출은 지출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12개 항목에서 24개 항목으로 증가
- 실질적인 소득 및 소비증가를 파악할 수 있는 실질소득 및 실질 소비지출 등 공표

□ 통계 변경 혹은 개편

- (개편 내용) 2017년부터 가계동향조사는 가계수지(소득 및 지출) 통계에서 가계지출 통계로 특화되어 연간 주기 공표 통계로 개편
- (개편 사유) 지출과 소득 통계를 각각의 통계 작성 목적에 가장 적합한 조사체계로 분리 개편하여, 통계 정확도 개선, 타 통계와 정합성 제고 및 응답부담 경감 도모
- 가계동향조사 주요 변경 내용

	 넦동향	개편 전 (~2016년)	개편 후(2017년~)
2	조사	가계수지 분기통계	소득부문(분기)	지출부문(연간)
조기	나대상	일반가구(농어가 제외)	일반가구(농어가 제외)	일반가구 (농어가 포함)
丑も	본설계	경활 다목적 표본	경활 다목적 표본	전용표본
	보규모 격기준)	약 8,700가구	'17년 약5,500가구 '18년 약8,000가구	연간 12,000가구 월 1,000가구(1/12 순환)
조	사표	가계부	면접조사표	가계부, 면접조사표
조기	나기간	36개월	36개월	1개월
조사	가구 실태	거처종류, 점유형태, 보증금 (월세), 월세평가액, 주거면 적, 자동차, 가구원별 종사 상자위성연령직업산업	-좌동-	거처종류, 점유형태, 보증금 (월세), 월세평가액, 주거면 적, 자동차, 가구원별 종 사상지위성연령 가구주의 직 업산업
사 항 목	소득	당월 경상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비경상소득	당월 경상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비경상소득	전년 경상소득(근로, 사업, 재 산, 이전)
	지출	소비지출 비소비지출	비소비지출	소비지출 비소비지출
	가 계 수지	흑자율, 소비성향, 처분가능소득	처분가능소득	-
공표항목	소 득 분배	분기 : 5분위배율 연간 : 5분위배율, 빈곤율, 지니계수	분기 : 5분위배율	-
목	소득	경상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 전), 비경상소득	경상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 전), 비경상소득	_*
	지출	소비지출, 비소비지출	비소비지출	소비지출, 비소비지출

Ⅱ. 통계의 작성목적 및 이용

1. 통계의 작성목적

[소득부문]

□ 조사 목적

- 전국 단위 표본가구를 매월 주기적으로 심층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가계수지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가구 단위 정부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서 활용
- 가구에 대한 소득동향 실태를 파악하여 국민소득의 수준변화 측정 및 분석 등에 필요 한 자료를 제공
 - 소득분배 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 제공
 - 경제·사회통계 작성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 나아가 해외 각국의 가계소득 및 지출조사를 실시 중인 해외 각국과의 비교연구가 가능하 도록 자료를 구축하여 학제간, 국제적 연구가 진행되도록 자료를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음

[지출부문]

- □ 가구에 대한 소비지출 실태를 파악하여 소비 구조의 측정 및 분석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
 - 소비자 물가지수 작성에 필요한 가중치 기초 자료 제공
 - 가계지출 복지 분석 등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 제공
 - 교육, 의료, 복지 등 관련 정책 수립·평가
 - 보상 및 지원 기준 산정의 기초 자료 제공
 - 주거이전비 보상금 산정 등

□ 외국의 관련자료

- 미국 : Consumer Expenditure Survey(CE)
 - 전국 가구 및 가계의 구매 행태, 소득 및 가구 특성에 관한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미국 노동통계국에 의해 조사
- 캐나다 : The Survey of Household Spending (SHS)
 - 가구 지출, 소득 뿐 아니라 주택특성 및 가정용제품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정 책 자료로 활용
- 일본 : Family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FIES)
 - 가계 수지 실태를 파악하여 국가의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입안을 위한 기초 자료 로 제공

2. 주요 이용자 및 용도

□ 가계동향조사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정책 입안 및 집행과 학술연구 등 다양한 방면에서 활용되는 통계로서, i) 법령에 의한 활용, ii)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상 필요에 의한 활용, iii) 연구 및 학술적 목적에 의한 활용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가계동향조사의 주요 활용은 다음과 같음

- 법령의 규정에 의한 활용
- 정책입안에 활용
- 각종 경제 사회정책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
-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한 세입자의 주거대책비 산정 및 국민주택 공급대상의 기준설정

□ 정부, 연구기관, 일반인 등

- (정부부처)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 기획재정부 : 경기동향 및 경제정책 분석의 기초자료
 - 보건복지부 :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소득기준 자료 산정의 기초자료
 -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
- (연구기관) 현대경제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소비지출 구조 분석
- (일반인) 주거이전비 보상에 사용되는 가구원수별 가계지출비 등

○ 활용주제

- 정부의 경제정책 및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 산정
 - ·교육·의료·복지 등 관련 정책 수립, 평가
- 보상 및 지원기준으로 활용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 ·제대군인 교육지원 대상자 선정
 - ·국가보훈대상자 및 국가유공자 보상금 지급
 - 주거이전비 보상금 산정

Ⅲ. 조사설계

1. 조사내용 및 조사표 설계 1-1 조사 항목

[소득부문]

□ 가구실태 조사표

- 가구원에 관한 사항: 가구주와의 관계, 성별, 연령, 교육정도, 취업여부, 산업, 직업, 종사상지위
- 주거에 관한 사항: 거처구분, 점유형태, 사용면적 등
- 기타: 따로 살고 있는 배우자와 미혼자녀, 무직가구의 주된 수입원 등

□ 가계소득조사 조사표

○ 조사대상 기구에서 헌달동안 발생한 소득 및 비소비지출을 가구원별로 구분하여 31개 항목에 대해 기입

□ 조사항목 체계

○ 조사기간 동안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비농림어가 중 일반 **가구**(적격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과 비소비출 항목을 조사함.

□ 주요 개념 정의

○ 조사대상 기본개념

- (1) 가구(家口, Household) 정의
 -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 하는 생활단위
 - 일반가구, 집단가구, 외국인 가구로 구분

일 반가구*	집단가구	외국인가구
①가족으로 이루어진 가구 ②가족과 남이 함께 사는 가구 ③1인 가구 ④남남이 함께 사는 5인 이하의 가구	⑤남남이 함께 사는 6인 이상의 가구 ⑥기숙사나 보육원, 요양원 등 사회시설에 집단으로 살고 있는 가구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한국인과 외국 인이 함께 살면 일반가구임

(2) 조사대상 가구(적격가구)

- 조사기간 동안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일반가구*** 중 가계소득 파악이 가능한 가구

(3) 전출입가구

- 전입가구는 익익월부터 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 (예시) 6월 20일 전입한 경우 8월부터 조사표 작성
- 전출가구는 전출 전달까지만 조사표를 작성·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전출월까지 조 사표를 작성한 경우는 조사표를 제출

〈조사대상 제외가구(부적격가구)〉

• 농가, 임가 또는 어가

- 생산활동을 하는 경영부문과 소비를 하는 가계부문이 명확히 구분하기 곤란하여 제외
- 농가, 임가 또는 어가의 정의는 농림어업총조사 정의를 따름

• 음식숙박겪용주택가구

- 음식점, 여관, 하숙업을 경영하는 가구 중에서 동일 거처 내에서 영업 활동과 주거생활이 이루어지는 가구
- 동일거처에서 가구의 소비지출 중 식료품비, 전기세, 수도료 등의 필수적 지출과 영업을 위한 경비를 분리하기 곤란하여 제외

• 장기출타가구

- 장기출타가 잦은 가구의 경우는 부정기적 출타사유로 인하여 제외

• 일반가구 중 비혈연가구

- 가사사용인이나 영업상 사용인(비혈연가구원)이 2인이상 동거하는 가구
- 2인 이상 비혈연가구원으로만 이루어진 가구(친구나 학생들끼리 동거)

• 외국인가구

- 외국인들로만 구성된 가구나 외국인 1인가구의 경우 ※단, 한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사는 경우는 조사대상가구임

• 지출의존가구

- <주요지출>에서 월 중 ①이면서 ②~⑤의 항목 중 최소한 3가지 항목 을 타가구에 의존하는 경우

<주요지출>

① 식사(월 30끼니 이상)

√(필수)

- ② 전화요금(핸드폰요금 포함)
- ③ 전기요금
- ④ 주거비(공동주택관리비 포함)
- ⑤ 세금(조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 가구구분 지침

- 부모, 자녀, 친척 등이 생계를 같이하는 가구는 1가구로 조사
- 친척이 같은 집에서 살고 있으나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별도 가구로 조사
- 고용가구와 함께 생활하는 1인의 가사사용인 또는 영업상사용인은 주인가구에 포함하여 1가구로 조사

가구 관련 용어 비교

1. 주민등록상 세대

• 주민등록상 세대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법적인 개념이므로 실제 살고 있는 사람과 다르게 등록될 수 있기 때문에 가구의 개념과 다름

2. 가족

가족은 혈연, 혼인, 입양 등으로 한 집안을 이룬 사람들의 집단인 반면,가구는 혈연여부와 상관없이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단위

3. 농가 (농림어업총조사 정의)

- 조사기준시점 현재 논이나 밭을 1,000㎡(10a) 이상 직접 경작하는 가구
- 지난 1년간 직접 생산한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가구
- 조사기준시점 현재 사육하는 가축의 평가액이 120만원 이상인 가구

4. 임가 (농림어업총조사 정의)

- 조사기준시점 현재 산림면적을 30,000㎡(3ha) 이상 보유하면서 지난 5년 중 육림작업(나무 심기, 숲 가꾸기, 간벌하기, 벌목하기 등) 실적이 있는 가구
- 지난 1년간 벌목업, 양묘업(조림용 묘목재배업)을 경영한 가구
- 지난 1년간 채취업을 포함하여 직접 생산한 임산물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가구

5. 어가 (농림어업총조사 정의)

- 지난 1년간 판매를 목적으로 1개월 이상 어선어업, 맨손어업, 나잠어업, 기타 어로어업, 양식어업을 경영한 가구
- 지난 1년간 직접 어획하거나 양식한 수산물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가구
- 조사기준시점 현재 양식하는 수산물의 평가액이 120만원 이상인 가구

(5) 가구원 정의

- 주민등록 등재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실상 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
- 혈연관계의 가족이라도 취업이나 유학 등의 사유로 같이 생활을 하지 않으면 가구원에서 제외하고, 비혈연 관계라도 숙식을 같이하는 경우 가구원에 포함

(6) 조사대상 가구원

-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 및 보호자인 가구원(기간불문)
- 예비군 훈련 중인 가구원
- 상근예비역, 산업체근무요원으로 출퇴근하는 가구원
- 미결수나 구류처분을 받고 경찰서에 수감 중인 가구원
-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직업군인
- 출장, 구직, 무단가출 등으로 집을 떠나 1개월 미만의 부재중인 가구원
- 선박 등의 승무원으로 기숙사가 아닌 선박 등에서 생활하고 있는 가구원
- 3개월 미만의 단기 유학생 및 취업연수생, 조사 월에 출생한 신생아

〈조사대상 제외 가구원〉

- 취업, 취학 등으로 외지에서 하숙, 자취하거나 기숙사에 있는 가구원
- 고아원, 양로원, 모자원, 특수병원, 부녀보호소 등의 사회복지시설이나 요양원, 기도원 등에서 장기간 요양 중인 가구원
- 군대, 전투경찰대에 입대한 가구원
- 경찰대학이나 사관학교 등에 입교하여 교육을 받고 있는 가구원
- 형이 확정되어 교도소, 소년원 등에 수용된 가구원
- 선박 등의 승무원으로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는 가구원
- 구직, 무단가출 등으로 집을 떠난 지 1개월이 넘는 가구원
- 3개월 이상의 장기 유학생 및 취업연수생

(7) 전출입 가구원

- 조사월에 가구원이 전입이나 전출을 하게 된 경우: 조사월의 거주기간이 15일 이 상 인지 여부에 따라 조사대상 가구원을 결정
- 전입일 및 전출일 기준 조사대상 가구원 결정방법
- ① 조사월이 28일인 경우

전출일 기준							丕	사제	2/						<					조	사다	상					>
	1일	19 29 39 49 59 69 79 89 99 109 119 129 139 14										14일	15일	16일	17일	18일	19일	20일	21일	22일	23일	24일	25일	26일	27일	28일	
전입일 기준	<					1	조 사	대심	ł	(1) II.			>				111			조사	제 오	ų.					

② 조사월이 29일인 경우

전출일 기준							丕	사제	2/							<					3	5 사	대성	ł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11일	12일	13일	14일	15일	16일	17일	18일	19일	20일	21일	22일	23일	24일	25일	26일	27일 2	28일 29
전입일 기준	<	22.22					3	사대	상					1222	>						3	E Af	<i>⊼∥</i> ⊈	/				

③ 조사월이 30일인 경우

전출일 기준							조	조사제의														조	사디	상						>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11일	12일	13일	14일	15일	16일	17일	18일	19일	20일	21일	22일	23일	24일	259	269	27	일 28	일 29	일 30일
전입일 기준	<	조사대상											>		11.	1.11	-			조 사	A) 5	2/	10		171		10			

④ 조사월이 31일인 경우

전출일 기준							丕	사제	2/		, ,					<						2	조 사	대성	ł						->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11일	12일	13일	14일	15일	16일	17일	18일	19일	20일	21일	22일	23일	24일	25일	26일	27일	289	29일	30일 :	31일
전입일 기준	<	2122						2	사대	상						1000	>						3	조사	제 오	/					

○ 조사항목 기본개념

일 비소비지출 Ⅰ 소득 - 경상소득 - 공적이전지출 • 근로소득 • 경상조세 · 사업소득 • 연금기여금 · 사회보험료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기타 비소비지출 · 사적이전소득 · 비경상조세 - 비경상소득 · 이자비용 · 가구간이전지출 · 경조소득 · 기타 비경상소득 · 비영리단체로 이전지출

□ 항목별 개념 정의

○ 소득

- 가구의 개별 구성원이 벌어들이는 모든 수입을 의미(연간 또는 그보다 짧은 간격의 현금 및 현물) 단, 우발적인 이득이나 불로소득은 제외(복권 당첨, 도박 등)
- 현재의 소비를 위해 사용이 가능한 수입을 의미. 단, 금융자산의 감소, 비금융자산의 처

- 분, 부채의 증가와 같이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수입은 제외(예금 찾음, 신용대출 등)
- 가구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및 공적이전소득 등으로 구성
- * 회사로부터 현물을 받았거나(근로소득), 자가생산 상품을 소비하였거나(사업소득), 임대료·이자 등의 명목으로 현금 대신 현물을 받은 경우에도(재산소득) 시장가격으로 환산 후 가구소득으로 합산하여 기입

○ 비소비지출

- 조세, 공적연금, 사회보험 등 공적 비소비지출 및 가구간이전, 비영리단체로의 이전 등의 사적 비소비지출

□ 주요 개념에 대한 국내·외 기준

O OECD* 기준

	OECD 기준	가계동향조사
	근로소득	근로소득
	EH : the wage and salary income of the household head, excluding employers' contributions to social security, but including	가구주근로
	sick pay paid by governments.	소득
E	ES : the wage and salary income of the household head spouse or partner, excluding employers' contributions to social security, but including	배우자근로
	sick pay paid by governments.	소득
	EO : the wage and salary income from other household members, excluding employers' contributions to social security, but including sick	기타가구원
	pay paid by governments.	근로소득
SE	사업소득	사업소득
SE	self-employment incomes.	
	자산 및 자본소득	재산소득 +
		사적이전소득
K	capital and property income (net dividends, interests, rents),	재산소득
	private pensions, private occupational pensions, and all kinds of	사적이전소
	private transfers.	득
	공적이전소득	
	social security transfers from public sources (including accident	
TR	and disability benefits, old-age cash benefits, unemployment	공적이전소득
	benefits, maternity allowances, child and/or family allowances, all	
	income-tested and means-tested benefits)	
т.	공적비소비지출	고저비ᄎ비킨ᄎ
TA	taxes and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paid directly by households.	공적비소비지출

- * OECD 요청서(Wave6) 기준
 - 가계조사 소득과 국세청 국세 소득의 비교

1. 소득 개념상의 차이

○ 사업소득의 경우

- 가계조사의 경우 사업소득은 사업장에서 가구로 전입된 소득, 즉 가구에서 생활을 위해 사용하도록 한 소득만이 대상임
- 반면 국세청의 소득은 사업자가 신고한 소득으로 가구로 전입된 소득뿐만이 아니라 사업장에서 벌어들인 수입을 다 파악하므로 가계조사의 사업소득과는 개념이 다르 고 가계조사 사업소득이 과소평가될 수밖에 없음

○ 이자소득의 경우

- 국세청의 이자소득이란 당해연도에 발생한 소득으로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내국 법인,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생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 인액, 2)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3)저 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4)비영업대금의 이익 등이 포함됨
- 가계조사의 이자소득의 경우 가구의 생활비가 되는 금액에서 파악되는 이자소득임

2. 조사상의 차이

- 가계조사는 사업소득이나 이자소득의 경우 가구 생활 소득이므로 그 액수가 작음
- 가계조사는 이자소득이 퇴직금액이나 예금 등의 항목으로 포함되어 조사되는 경우 가 빈번함.

○ 가계조사 소득과 국민계정체계와의 비교

가계동향조사	국민계정체계
근무시간과 작업량에 따른 직접임금과 급여	모든 구성요소는 동일한 기준으로 포함된다.
현금으로 받은 상여금과 사례금	
수수료와 사례비	총임금과 급여 (현금, 현물형태 모두 포함) 는
이사로서 재직하고 얻은 소득	피용자보수의 구성요소로 각각 인정된다.
아윤분배 상여금 및 다른 형태의 성과급	그미게저훼계이 미니저 사들이 게ば에도 그용
보수형태로 주어지는 주식 (스톡옵션 등)	국민계정체계와 미시적 소득의 개념에는 고용 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혜택(예를 들어 병가,
고용주로부터 무상 또는 저가로 주어지는 재	- 구기 구름이는 지뢰고급에¬(에글 글이 증기, - 출산휴가)이 임금이나 급여에 포함되지 않지만
화와 서비스	실제로 이를 분리하기는 쉽지 않다.
퇴직에 대한 보상	
고용주가 낸 사회보험료	고용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는 피용자보수 의 구성요소로 인정된다.
1b. 사업소득	
소유하고 있는 비법인 사업체의 이익 혹은 손	총혼합소득(Gross Mixed Income, GMI)의
실. 이는 총매출액에서 생산에 쓰인 자산의 감	구성요소로 포함된다
가상각을 포함한 비용, 순이자를 제외한 형태	GMI는 비법인사업체가 인건비와 생산에 투입된 중간돼
로 측점됨	비용을 제외하고 생산활동으로부터 얻은 이익이나 손실 이다. 고정자본소모(consumption of fixed capital,
	OFC)나 OKHB은 GM로부터 제외되지 않는다.
	순혼합소득(Net Mixed Income, NM)은 GM에서 CFC
	를 뺀 것으로 마시적 시업소득의 개념에 더 근시하다.
물물교환을 위해 생산된 재화의 가치에서 투	GMI의 구성요소 형태로 포함됨
입된 비용을 제외한 부분	
자가소비를 위해 생산된 재화의 가치에서 투	GMI의 구성요소 형태로 포함됨
입된 비용을 제외한 부분	
2. 자산소득	
2a.금융소득	
가계의 금융소득의 구성요소 중 몇 부분은 비용을	국민계정에서는 비용(예를 들어 투자를 위해 차입한
제외한 순소득의 형태로 자료가 수집된다.	금액에 대한 이자지출)을 제외한 순소득이 아니다. 국민계정의 이지소득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얻는 이지와
금융기관으로부터 얻는 이자	국민에6의 아시조=은 금융기본으로부터 2는 아시와 기구 저축을 관店하는 금융 중개 서비스 기관의 서비스
	의 기치의 추정치(financial intermediated services
	indirectly measured, FISIM)를 포함한다.
소유하고 있는 비법인 사업체의 소득을 포함	법인으로부터의 배당소득은 같은 기준으로 포
한 배당금. 출자만 하고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	· 함된다.
는 동업자로서 얻는 배당금과 부동산, 신탁금	
으로부터의 배당금도 포함된다.	
	SNA의 재산소득은 해외투자금의 재투자 소득
	과 비생명보험으로부터 얻는 투자소득, 가구
	의 자산에 기초하여 연금형태로 받는 소득, 집
	단적 투자 펀드 출자자로서 얻는 투자소득을 포함한다. 이런 소득들은 가구소득조사에서
	포함인다. 이런 소득들는 가구소득소자에서 통상적으로 조사되지 않는다.
	ㅇㅇㄱㅡㅗ ㅗ끼뵈시 녆ㄴ니,

가계동향조사	국민계정체계
2b. 비용부분을 제한 비금융자산 소득 (실물자	 산소득)
유지비, 감가상각비, 이자비용을 제외한 주거 용 부동산의 순임대소득	가계소유의 주거용 주택으로 부터의 임대소득은 총영업잉여(gross operating surplus, GOS)의 구성요소이다. 운영을 위한 중간소비비용 (유지비 등)는 GOS를 계산할 때 공제된다. 그러나 CFC와 이자는 GOS를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않는다. 순영업잉여(net operating surplus, NOS)는 GOS에서 CFC를 제외한 것으로 가계소득의 개념에 가깝다.
유지비, 감가상각비, 이자비용을 제외한 비주거용 부동산의 순임대소득	비주거용 부동산(예를 들어 공장, 가게 등)으로부터 얻는 임대소득은 비법인사업체의 소득으로 여겨지고 GMI로 분류된다. CFC와 이자는 GMI 계산시에 공제되지 않는다.
생산되지 않은 실물자산(토지, 심토)의 임대소득	같은 기준으로 포함된다.
2c. 로얄티, 지적재산권 등	사업소득의 GMI 구성요소 형태로서 포함된다.
3. 자가소비를 위한 생산으로부터 얻는 소득	
3a.자가소유주택, 보조받는 임대주택에서 얻 는 주거 서비스의 순가치	GOS의 구성요소로서 포함된다. 주거서비스는 생산의 경계 안에 포함되고 일반 적으로 가구에서 자가 소비를 위해 생산된 서 비스는 SNA에서 제외하는 관례의 예외이다.
3b. 보수를 지불하지 않는 집안일의 가치	SNA에서 배제된다.
3c. 가구 내구재 서비스의 순가치	SNA에서 배제된다.
4. 이전소득	
4a. 사회보장연금 (사회보험금)	같은 기준으로 포함된다.
4b. 연금, 다른 보험의 보험금	기타 사회보험금으로 같은 기준으로 포함된다. 다음으로 구성된다. · 기타 사회보험의 연금형 보험금 · 기타 사회보험의 연금이 아닌 형태의 보험금
4c. 현물로 지급되는 공적이전을 제외한 사회부조금	같은 기준으로 포함된다.
4d. 비영리단체로부터의 이전소득	같은 기준으로 포함된다.
4e. 의무적 , 반의무적 형태의 가계간 이전소득	SNA는 같이 살거나 그렇지 않은 다른 가계로부터의 현금 혹은 현물 형태의 이전소득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가계간 이전은 가계소득조사에서 자료를 얻지 않는한 측정하기가 어렵다. 또한 SNA는 미시적 소득개념에서는 제외되는 가계의 비생명보험금을 포함한다. SNA는 미시적 소득개념에서는 배제하고 있는 도박에서 딴 돈과 잃은 돈을 부분적으로 봉사료로 보고, 잔여액은 가구간 이전으로 취급한다.

가계동향조사	국민계정체계
5. 생산소득 (1과 3의 합)	동일한 SNA 개념들: ·피용자보수(연금기금부담분 제외) 및 ·GMI - CFC - GMI 수취자가 내는 이자비용 - 미시적 소득개념에서 자산소득으로 여겨지 는 GMI 의 구성요소(예를 들어 임대료). SNA는 보수를 지불하지 않는 집안일의 가치, 가구 내구재 서비스의 순가치를 제외한다.
6. 주소득 (2와 5의 합)	동일한 SNA 개념들 · 피용자보수(연금기금부담분 제외) 및 · GMI - CFC - GMI 수취자가 내는 이자비용 및 · CFC와이지를 뺀기계 소유의 주가용 주택에서의 GOS 및 · 재산소득 - 투지펀드에서의 수익 - 이지산들에서 FISIM 을 제외한 부분 - 비생명보험의 보험료 부가 추정액, SNA는 보수를 지불하지 않는 집안일의 가치, 가구 내구재 서비스의 순가치를 제외한다.
7. 총소득 (4와 6의 합)	주소득 부분을 참조. 또한 SNA는 미시적 소득개념에 포함되지 않 는 비생명보험금을 포함한다.
8. 이전지출	
8a. 직접세 (환급액 제외)	같은 기준으로 포함된다.
8b. 의무적인 수수료 및 벌금	같은 기준으로 포함된다.
8c. 의무적, 반의무적인 가계간 이전지출	SNA는 같이 살거나 그렇지 않은 다른 가계로 부터의 현금 혹은 현물 형태의 이전소득을 포 함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가계간 이전은 가계 소득조사에서 자료를 얻지 않는한 측정하기가 어렵다. SNA는 미시적 소득개념에서는 배제하고 있는 도박에서 딴 돈과 잃은 돈을 부분적으로 봉사료 로 보고, 잔여액은 가구간 이전으로 취급한다.
8d. 고용인과 고용주의 사회보험료 (1a에 포함된 경우)	고용주의 사회보험료 부담은 피용자보수의 요소와 보험에 대한 가계로부터의 이전으로 여겨지는 형태로 각각 식별된다. SNA는 적립 식이 아닌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고용주 분담 금 추정액, 피고용인 스스로의 연금기금에 대 한 분담금 납부, 보험료 추가납부액등을 서비 스료를 제외하고 유사한 형태로 포함한다.
8e. 비영리단체에의 이전지출	같은 기준으로 포함된다.

ココーキエリ	그미게터퀴게
가계동향조사	국민계정체계
9. 가처분소득 (8을 제외한 7)	차이를 취함으로써 SNA의 가구소득과 지출에
	포함된 몇 가지 요소들이 상쇄되어 사라진다.
	SNA에서 가처분소득의 개념
	·위에서 언급된 많은 구성요소에서의 차이점
	인 CFC 요소부분이 제외된다.
	·가계가 소득을 벌어들이기 위해 필요한 비용중의
	한 부분인 이자나 다른 형태의 지불이 제외된다.
	·그러나 가처분 소득의 미시적 개념에서 제외
	되지 않는
	형태의 재산소득지출도 공제됨.
10. 현물형태로 받은 사회적 이전	같은 기준으로 포함된다.
11. 조정가처분소득 (9와 10의 합)	SNA와의 주된 차이는 여전히 가처분 소득의
	거시적 측정을 유도할 때 재산소득지출을 제
	외하는 데 있다.

□ 통계의 수집에 적용하고 있는 분류 체계

○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를 사용하여 통계 수집 제7차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를 사용하여 통계 수집

[지출부문]

- □ 가구실태 조사표(연간조사표)
 - 가구원에 관한 사항: 성별, 생년월일, 교육정도, 취업현황, 종사상지위 등
 - 주거에 관한 사항: 가구원수, 따로 살고 있는 가족수, 집의 종류, 입주형태, 임대보 증금, 월세, 월세평가액, 자동차보유대수 등

□ 가계지출조사 조사표

- 조사항목
 - 가계부(상/하반기): 매일의 모든 지출, 사회적현물이전
 - 연간조사표
 - · 지출·소득 : 최근 1년 지출(69개 품목), 2016년(전년) 소득

조사표		주요 항목	항목수
 가계부	상반기	1일~15일의 모든 지출, 사전점검 목록	380여개
가게ㅜ 하반기		16일~말일의 모든 지출, 의무성 정기지출, 사회적현물이전	30UY171
	가구	(가구원) 성별, 생년월일, 교육정도, 취업현황, 종사상지위 등	
	가구 실태	(가구) 가구원수, 따로 살고 있는 가족수, 집의 종류, 입주형	20여개
연간	실태	태, 임대보증금, 월세, 월세평가액, 자동차보유대수 등	
조사표	지출	(최근 1년) 가구, 가전, 주택설비교체및수리서비스, 자동차,	69개
	(세분류)	항공요금, 단체여행비, 교육비, 숙박비 등	OSZII
	소득	(2016년) 근로・사업・재산소득, 정부수혜금, 사적이전소득 등	6개

가계소득조사와 가계지출조사 항목별 비교

구분	기계스트즈 니(*10)	가계지	디출조사				
T正	가계소득조사('18)	당월소득('18)					
조사대상 가구원	-조사월 거주기간이 15일 이상	-조사월 1일기준					
취업여부 (가구실태)	-경제활동인구조사와 동일	-조사월 1주일(1~7일)동안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이상 일한 경우					
비경상소득	(조사)-비경상적이고일시적인 수입(월 1,500만원 이하)①경조소득②기타비경상소득	비경상적이고 일시적인 수입 월 1,500만원 이하))경조소득					
연말정산 환급금	(조사) -공적이전소득의 ④연말정산 환급금	(조사) -정부수혜금의 ③사회수혜금	('18) (조사) <i>연간조사표</i> -25.연말정산 환불받은 금액				
			('17) (조사) 가계부				
퇴직수당 (명예퇴직수당)	(조사) -②기타비경상소득	(조사) -근로소득의 ②상여금	(조사) <i>연간조사표</i> -22.소득의 ①근로소득				
가구간 현물이전	(조사 제외)	(조사 제외)	('18) (조사 제외) 가계부				
			('17) (조사) <i>가계부</i> *17.7월 조사제외로 지침 변경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	(조사) -현금이외 정부지원 (지출목적을 지정	(조사) <i>가계부</i> -사회적현물이전(55)	(조사) <i>가계부</i> -사회적현물이전(55) (조사 제외) <i>연간조사표</i>				
	또는 현물형태 제공)		. , .				

□ 항목용어 해설

○ 가구(家口, household)

1인 또는 2인이상이 모여 취사, 취침 및 생계를 함께하는 생활단위

○ 가구주(家口主, reference person)

호적상의 호주나 주민등록상의 세대주와는 관계없이 가구의 구성원 중 실제적으로 생계를 책임지고, 생활비용을 주로 조달하고 있는 사람 따라서, 단순히 가구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가장과는 차이가 있음

○ 가구원(家口員, household member)

가족여부나 주민등록 등재여부와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하고 자산 또는 소득의 전부나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가구의 구성원. 가구는 혈연관계인 가족으로 구성되기도 하 고, 비혈연 관계의 가구원이 동거하는 경우도 있음.

또한, 가족이라 해도 취업, 유학 등의 사유로 함께 생활하지 않는 경우는 가구원에 포함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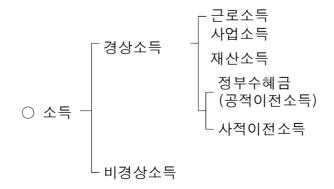
○ 근로자가구(勤勞者家口, wage and salary earners)

가구주가 정부나 기업에 고용되어 정신적 또는 육체적 노동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급여을 받는 가구

○ 소득(所得: income)

가구에서 현금의 감소, 기타 금융·비금융 자산의 처분 및 부채의 증가를 통한 순자산의 감소없이 소비에 이용할 수 있는 일체의 현금 또는 현물수입을 말하며 정기적으로 벌어들이는 경상소득을 조사.

비경상소득, 자산거래, 이전 및 보유로 인한 손익은 조사하지 않음 <참고> 소득의 구성



○ 경상소득(經常所得: current income)

가구 및 가구원이 근로제공의 대가로 받은 근로소득, 사업 및 부업으로부터 혼합소 득인 사업소득, 이자, 배당금 등으로부터 재산소득, 정부, 타가구 등으로부터 이전되 는 소득 등 경상적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 근로소득(employee income)

가구주, 배우자, 기타가구원의 급여 소득, 상여금 등을 포함(조세 및 공과금 등 공제되기 전 총액을 기입)

- 사업소득(income from self-employment)

사업경영을 통해 얻은 총수입액에서 일체의 사업지출(인건비, 재료비, 전기료등)을 차감한 금액을 조사

- 재산소득(property income)

재산의 운영을 통해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이자소득, 배당소득, 개인연금소득, 퇴직연 금소득, 기타재산소득으로 구성

- 이전소득(current transfers received)

상품이나 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반대급부가 아닌 대가없는 이전에 의한 소득

· 정부수혜금(공적이전소득)

사회보험형 연금, 각종 사회보장수혜 등, 현물 포함하지 않음

· 사적이전소득

타가구, 학교 및 비영리단체로부터 정기적으로 받은 생활비 보조

○ 비경상소득(非經常所得: irregular income)

경조금, 퇴직금, 부동산매각 수입 등 일정하지 않고, 확실하지 않으며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조사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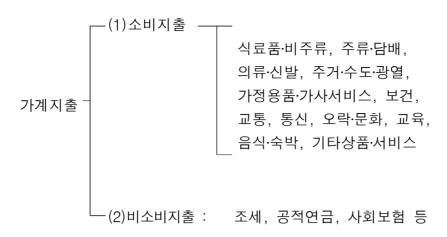
ㅇ 사전점검목록

I. 사회적 현물이전 부문, Ⅱ. 소비지출, 비소비지출 부문으로 분리하여 가구가 사전점 검목록의 사회적현물이전 주기와 정기지출 주기를 가계부 기입전 사전에 체크하여 항 목의 누락이나 이전·지출 주기의 기입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

○ 가계지출(家計支出: expenditure)

가계지출은 실질적으로 가계의 자산이 감소되는 지출로써, 소비지출과 비소비지출로 구성

<참고> 가계지출의 구성



○ 소비지출(所費支出: consumption)

생계 및 생활을 위해 소비하는 내구재, 비내구재, 준내구재 및 서비스의 구입에 대한 대가로 지출되는 비용

・ 비소비지출(非所費支出: non-consumption expenditure)
 조세. 공적연금, 사회보험 등으로 지출되는 비용

- 공적 비소비지출

조세, 공적연금, 사회보험 등

- 사적 비소비지출

가구간 이전, 비영리단체로의 이전

○ 기타지출

소비지출과 비소비지출 이외에 현금이 유출되는 지출로 적금, 재산구입대금(유가증권, 토지, 건물 등) 등과 같이 현금이 지출되어 재산의 형태가 변한 것 또는 빌린 돈 갚음과 같이 부채의 감소를 수반하는 지출

ㅇ 사회적 현물이전

정부 및 비영리단체가 가계에 현물이전의 형태로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로서 예를 들면, 정부가 가계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교육(초등학교 등)과 보건의료(보건소 진료) 등이 있음. 이는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 등과 같이 정부가 가계에 현금으로 지원하여 가계의 소비에 영향을 주는 경상이전지출과는 구별

1-2 적용 분류체계

[소득부문]

□ 항목분류 체계

중분류	세분류	세 부 항 목
	근로소득	급여소득, 상여금
	사업소득	자영업자의 영업이익, 기타 사업소득
소득	재산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개인(퇴직)연금소득, 주택 및 건물 임대소득, 기타재산소득
	이전소득	공적연금, 기초연금, 사회수혜금, 사회적 현물이전, 연 말정산 환급금, 사적 이전소득
기타비경상소득	1	경조소득, 기타비경상소득
	거사조 III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종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비소비지출	경상조세 	기타 경상세금
ᅵ미오미시골	연금기여금	국민연금 기여금, 공적연금 기여금
	사회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기타 비소비지	<u> </u>	비경상조세, 이자비용,
기다 미오미지: 	=	가구간 이전지출, 비영리단체로 이전지출

□ 항목분류 기준

○ 소득과 비소비지출: Canberra 그룹 권고안(Expert Group on Household Income Statistics, 2001)을 토대로 LIS(Luxembourg Income Study)의 소득 및 비소비지출 분류를 감안하여 구성(2009년 이후)

[지출부문]

□ 항목분류 체계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세 부 항 목							
								식료품 · 비주류음료	곡물, 곡물가공품, 빵 및 떡류, 육류, 육류가공품, 신선수산동물, 염건수산동물, 기타수산동물가공, 유제품 및 알, 유지류, 과일 및 과일가공품, 채소 및 채소가공품, 해조 및 해조가공품, 당류 및 과자류, 조미식품, 기타식품, 커피 및 차, 쥬스 및 기타음료	
		주류 · 담배	주류, 담배							
		의류·신발	직물 및 외의, 내의, 기타의복, 의복관련서비스, 신발, 신발서비스							
		주거· 수도·광열	실제주거비, 주택유지 및 수선, 상하수도 및 폐기물처리, 기타주거관련서비스, 연료비							
		가정용품 · 가사서비스	가구 및 조명, 실내장식, 가구·조명 및 장식서비스, 가정용 섬유제품, 가전 및 가정용기기, 가전관련서비스, 주방용품, 가정용공구 및 기타, 가사소모품, 가사서비스							
	소비지출	보건	의약품, 의료용 소모품, 보건의료용품 및 기구, 외래의료 서비스, 치과서비스, 기타의료서비스, 입원서비스							
가계지출									교통	자동차구입, 기타운송기구구입, 운송기구유지 및 수리, 운송기구 연료비, 기타개인교통서비스, 철도운송, 육상 운송, 기타운송, 기타교통관련 서비스
		통신	우편서비스, 통신장비, 통신서비스							
			오락·문화	영상음향기기, 사진광학장비, 기록매체 정보처리장치, 오락문화 내구재, 장난감 및 취미용품, 화훼관련용품, 운동 및 오락서비스, 문화서비스, 서적, 기타인쇄물, 문 구, 단체여행비						
								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학원 및 보습교육, 성인학원교육, 기타교육	
		음식·숙박	식사비, 숙박비							
		기타 상품· 서비스	이미용서비스, 이미용 기기, 위생 및 이미용용품, 시계 및 장신구, 기타개인용품, 복지시설, 보험, 기타 금융, 기타 서비스							
	비소비지출		경상조세, 비경상조세, 연금, 사회보험, 이자비용, 가구간 이전, 비영리단체로 이전							
기타지출			자산변동으로 인한 지출, 부채감소를 위한 지출, 자산 이전으로 인한 지출							

	71.4.4.5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본급, 각종수당, 성과급, 보너스 등
				영업잉여
		당상소득 재산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임대수입, 개인연금소득, 퇴직연금
가계소득	997 <u>-</u>			소득, 기타재산소득
		이전소득	공적	공적연금, 기초노령연금, 사회수혜금 등
		미선소득	사적	가구간 이전소득, 기타이전소득
	비경상소득	퇴직금, 경조금		조사 제외*
	사회적현물이전	현물이전		정부 및 비영리단체가 가계에 현물이전의 형태로 제공
	사외학연골이신			하는 재화와 서비스

□ 항목분류 기준

- 가계지출의 항목분류는 UN, OECD, ILO 등 국제기구에서 표준안으로 **목적별 소비지출** 분류(COICOP: Classification Of Individual Consumption by Purpose)를 권고
 - COICOP 분류는 소비지출에 대해 다양한 분석을 가능토록 함으로써 통계의 활용성을 제고하고, 국가간 비교가능성 확보
- 2009년 소비지출 항목분류를 국제기준인 COICOP 분류체계로 개편

1-3 조사표 구성

[소득부문]

□ 가구실태 조사표

						I. 7	나구원에	관한	사항					
	(1)가구족	주 관계			(4) 교육	정도	(5) 취업		(6) 산 업			(7)	직 업	(8) 종사성
	성명		(2) 성별	(3) 연령	학력	수학여부	여부	코드	사업체명	주된 활동	코드	일의 종	류 직명(2	
1														
(Z)														
3														
4														
6														
(B)														
0														
®														
1. 7		. 가구주의 바		미혼자녀	종사상 지 역 1. 상용근로		임시근로자	3.	일용근로자	П		고 있는 내	배우자와 미환	
1. 7 4. 7 6. 7		1우자 5 의 부모 7	1우자 3. i 5. 손자녀, 중손자녀 7. 조부모 9. 기타		1. 상용근로	자 2.	임시근로자 자영자		일용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	II 배우자 자 녀				혼자녀 기타(보육 등) 명 명
1. 7 4. 7 6. 7	I구주 2. I혼자녀 및 그 배 I구주나 배우자의 I구주의 미혼형제	1우자 5 의 부모 7 테, 자매 9	. 손자녀, 중손자니 7. 조부모	1 및 그 배우?	1. 상용근로 막 4. 고용주	자 2. 5.		6.		배우자		취임 명	학 업 명 명	기타(보육 등) 명
1. 7 4. 7 6. 7 8. 7	· 구주 2. · Î혼자녀 및 그 배 · I구주나 배우자의 · IT · 무경 · IT · 무경 · 무경 · 당적 연금	1우자 E 의 부모 7 네. 자매 9	5. 손자녀, 중손자녀, 조부모 9. 기타 주요 수입원 2. 공적 수혜금	1 및 그 배우?	1. 상용근로 막 4. 고용주	자 2. 5. IV.	자영자	6.		배우자 자 녀		타 업 명 명	학 업 명 명	기타(보육 등) 명
1. フ 4. フ 6. フ 8. フ 1. 丟 5. 0	나구주 2. I혼자녀 및 그 배 나구주나 배우자의 나구주의 미혼형저 Ⅲ. 무리 라적 보조 나자 및 배당금	대우자 5 의 부모 7 데, 자매 6	5. 손자녀, 중손자녀, 조부모 9. 기타 주요 수입원 2. 공적 수혜급 4. 임대 수입 6. 저금 찾음	1 및 그 배우?	1. 성용근로 1. 성용근로 1. 전독주택(다가구 3. 연립주택	자 2. 5. IV.	가영자 거처 구년 2. 아프 4. 다서	6. 분 바트 비대 주택	무급가족종사자	배우자 자 녀 위 발 경	유 : 유 :	타 업 명 명	학 업 명 명	기타(보육 등) 명 명 대 대
1. フ 4. フ 6. フ 8. フ 1. 丟 5. 0	다주 2. I혼자녀 및 그 배 I구주나 배우자의 IT주의 미혼형자 Ⅲ. 무경 당적 연금 IT 보조	대우자 5 의 부모 7 데, 자매 6	5. 손자녀, 중손자녀 7. 조부모 9. 기타 주요 수입원 2. 공적 수혜금 4. 임대 수임	1 및 그 배우?	1. 성용근로 다 4. 고용주 7.기타 1. 단독주택(다가구	자 2. 5. IV.	가영자 거처 구년 2. 아프 4. 다서	6. !	무급가족종사자	배우자 자 녀 위 발 경	R :	타 업 명 명	학 업 명 명	기타(보육 등) 명 명
1. フ 4. フ 6. フ 8. フ 1. 丟 3. 人 5. 0	나구주 2. I혼자녀 및 그 배 나구주나 배우자의 나구주의 미혼형저 Ⅲ. 무리 라적 보조 나자 및 배당금	대우자 5 의 부모 7 데, 자매 6	5. 손자녀, 중손자녀, 조부모 9. 기타 주요 수입원 2. 공적 수혜급 4. 임대 수입 6. 저금 찾음	1 및 그 배우?	1. 성용근로 1. 성용근로 1. 전독주택(다가구 3. 연립주택	자 2. 5. IV. 우택 포함)	가영자 거처 구년 2. 아프 4. 다서	6. 분 반트 배대 주택 변이외의 2	무급가족종사자	배우자 자 녀 위 발 경	유 : 유 :	타 업 명 명	학 업 명 명	기타(보육 등) 명 명 대 대
1. フ 4. フ 6. フ 8. フ 1. 丟 3. 人 5. 0	나구주 2. I혼자녀 및 그 배 나구주나 배우자의 나구주의 미혼형저 Ⅲ. 무리 라적 보조 나자 및 배당금	대우자 5 의 부모 7 데, 자매 6	5. 손자녀, 중손자녀, 조부모 9. 기타 주요 수입원 2. 공적 수혜급 4. 임대 수입 6. 저금 찾음	i 및 그 배우?	1. 성용근로 1. 성용근로 1. 전독주택(다가구 3. 연립주택	자 2. 5. IV. 우택 포함)	가영자 거처 구통 2. 아피 4. 다서 6. 주택	6. 분 내대 주택 태이외의 7 관 한 기	무급가족종사자 서차 나 항	배우자 자 녀 위 발 경	유 : 유 : G :	타 업 명 명	학업 명 명 명 차 보유	기타(보육 등) 명 명 대 대
1. フ 4. フ 6. フ 8. フ 1. 丟 3. 人 5. 0	나구주 2. I혼자녀 및 그 배 나구주나 배우자의 나구주의 미혼형저 Ⅲ. 무리 라적 보조 나자 및 배당금	[우자 5 의 부모 7 제, 자매 6	5. 손자녀, 종손자나, 7. 조부모 9. 기타 주요 수입원 2. 공적 수입금 4. 임대 수입금 6. 저금 찾음 8. 기타	i 및 그 배우?	1. 성용근로 4. 고용주 7.기타 1. 단독주택(다가구 3. 연립주택 5. 비거주용 건물	자 2. 5. IV. 우택 포함)	자영자 거처 구년 2. 아피 4. 다서 6. 주택 주 거 에	6. 분 내대 주택 태이외의 7 관 한 기	무급가족종사자 서차 나 항	배우자 자 녀 위 발 경 L P	유 : 유 : G :	위임 명 명 V. 자동 2	학업 명 명 명 차 보유	기타(보육 등) 명 명 대 대 대 단위 : 천원
1. フ 4. フ 6. フ 8. フ 1. 丟 3. 人 5. 0	다구주 2	부모 7 의 부모 7 에, 자매 6	5. 손자녀, 종손자나, 7. 조부모 9. 기타 주요 수입원 2. 공적 수입금 4. 임대 수입금 6. 저금 찾음 8. 기타	i 및 그 배우?	1. 성용근로 4. 고용주 7.기타 1. 단독주택(다가구 3. 연립주택 5. 비거주용 건물	자 2. 5. IV. 우택 포함)	자영자 거처 구년 2. 아피 4. 다서 6. 주택 주 거 에	6. 분 내대 주택 태이외의 7 관 한 기	무급가족종사자 서차 나 항	배우자 자 녀 위 발 경 L P	유 : 유 : G :	위임 명 명 V. 자동 2	학업 명 명 명 차 보유	기타(보육 등) 명 명 대 대 대 단위 : 천원
1. フ 4. フ 6. フ 1. 丟 3. 人 5. 0	다구주 2. 은자녀 및 그 배근자나 네무지막다주나 배우자의 다흔형자 내. 무 3명 연금 점점 받고 있다. 및 배당금 일본 등 생물 보고 있다. 및 배당금 일본 등 생물 보고 있다. 및 배당금 일본 등 생물 보고 있는데 당당 생물 생물 등 생물 생물 등 생물 생물 등 생물 생물 등 생물 등	역주자 김 부모 7 제, 자매 6 직가구의	5. 손자녀, 중손자나, . 조부모 9. 기타 주요 수입원 2. 공적 수혜공 4. 임대 수입 6. 저글 찾음 8. 기타 1. 자기집	i 및 그 배우?	1. 성용근로 4. 고용주 7.기타 1. 단독주택(다가구 3. 연립주택 5. 비거주용 건물	자 2. 5. IV. 우택 포함)	자영자 거처 구년 2. 아피 4. 다서 6. 주택 주 거 에	6. 분 내대 주택 태이외의 7 관 한 기	무급가족종사자 서차 나 항	배우자 자 녀 위 발 경 L P	유 : 유 : G :	위임 명 명 V. 자동 2	학업 명 명 명 차 보유	기타(보육 등) 명 명 다 다 다 단위 : 천원

□ 가계소득조사표('17년~'18년)

가계소득조시	표(31개 항목)
소득(17항목)	비소비지출(14항목)
■ 근로소득	1 경상조세
① 급여소득	① 근로소득세
② 상여금	② 사업소득세
2 사업소득	③ 종합소득세
① 자영업자의 영업이익	④ 재산세
② 기타 사업소득	⑤ 자동차세
3 재산소득	⑥ 기타 경상세금
① 이자소득	2 연금기여금
② 배당소득	① 국민연금 기여금
③ 개인(퇴직)연금소득	② 공적연금 기여금
④ 주택 및 건물 임대소득	3 사회보험료
⑤ 기타 재산소득	① 건강보험료
4 공적이전소득 (정부수혜금)	② 고용보험료
① 공적연금	4 기타 비소비지출
② 기초연금	① 비경상조세
③ 사회수혜금	② 이자비용
④ 연말정산 환급금	③ 가구간 이전지출
■ 사적 이전소득	④ 비영리단체로 이전지출
6 사회적 현물이전	
7 경조소득	
█ 기타비경상소득	

[지출부문]

- □ 조사방법 혼합(2종)
 - 가계부
 - 가구에서 지출하는 매일의 모든항목
 - 연간조사표
 - 지출주기가 길고 금액이 큰 69개항목

• 이용자	락 선정 기준 료 : 가계동향조사 '14년1월 ~ '15년12월, 월간자료 준 : (금액)품목별 건당평균지출금액, (빈도)가구당월평균지출건수
면접	<최근12개월> ①건당평균기입금액 20만원 이상 ②건당평균기입금액 3만원 이상~20만원 미만 + 가구당월평균기입건수 0.1 이하 ③건당평균기입금액 3만원 이상~20만원 미만 + 계절성O
면접 제외 (가계부)	①식료품비주류음료, 주류담배 ②면접 이외 품목 (*"기타이미용서비스"처럼 포함 항목이 매우 다양한 경우는 면접 조사 제외) ③정기지출(지출 행위가 있는 가구의 월별 평균기입건수 변동이 적은 경우)

연간조사표 구성

표지

: 조사대상가구의 주소, 관리번호, 조사담당자 정보를 기입

Ⅰ. 가구 일반사항

: (가구원) 가구원수, 함께 살고 있지 않은 가족, 가구원 인적 사항 및 경제활동상태 등 (주거 현황) 주택 종류, 점유 형태, 주거전용면적, 다른 주택소유 여부, 보유 자동차 대수, 월세평가액 조사

Ⅱ. 소비지출

: 지난 12개월 품목별 지출 금액

(품목) 1. 주거·광열, 2. 가구가정용품 3. 교통, 4. 숙박·여행, 5. 의료·복지, 6. 오락·문화, 7. 예식비용 및 수수료, 8 교육 등 조사

Ⅲ. 국외송금

₩. 소득

: 가구원 모두에 대해 전년도 연간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및 정부수혜금의 세금 공제 전 금액, 가구의 전년도 사적이전소득 조사

V. 가구주의 산업 및 직업

: 가구주가 종사하는 일의 산업 및 직업 조사

1-4 조사표 변경이력

통계기	개관		
1	통계 (승인박	-	- 가계동향조사 (제101006호, 1962. 12. 8.)
2	통계작/ (담당 ⁾		- 통계청 사회통계국 복지통계과 (전화: 042-481-2279, 인터넷: http://kostat.go.kr)
3	통계종류		- 지정・조사통계
4	작성연혁		- 1942. : 최초 작성 - 1951.~1962. : 한국은행에서 조사 - 1962.12. : 통계작성 승인(지정통계) - 1963.1. :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으로 이관, 전국 도시가계조사 실시(1,700가구 표본) - 2003. : 전국가계조사로 확대 - 2005. : 연동표본제 도입 - 2006. : 1인가구 조사, 전자가계부 도입 - 2009. : 소비지출의 항목분류를 국제기준인 COICOP 분류 체계로 개편 - 2016. : 소득부문과 지출부분 분리
통계	작성근거		
5	통계작성목적		 가구의 월간 수입과 지출 정도를 조사하여, 가계부문의 소득 및 소비수준 변화를 측정· 분석하여 제공 소비자물가지수 편제에 필요한 가중치 모집단 자료로 이용 국민계정 등 가계부문에 관련된 각종 경제· 사회통계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다양한 정책수립 및 집행, 학술연구 등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6	관련법 작성:		- 해당 없음
통계	작성방법	,	
7	작성대상 (성별 구분 여부) 목표 모집단 조사*		- 전국의 모든 일반가구 - 조사표(가구원) 성별구분
8			- 조사기간 동안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일반가구 - 소득부문*: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일반조사구 내 모든가구 - 지출부문: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구 내 일반가구

9	표본설계	- 표본체계: 다목적·연동표본(소득)/전용·순환표본(지출) - 표본추출: 이상추출법(소득)/층화2단집락추출(지출) - 지역층화: 25개 지역층(소득)/11개 지역층(지출) - 대체방법: 가구특성 동일가구로 대체(소득)/과대추출_ 조사구당 14~19가구(지출)
10	대상규모*	- 소득부문*: 월9,180가구 - 지출부문: 월1,000가구, 연간12,000가구 목표
11	작성항목*	 소득부문: 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정부수혜금 등), 비소비지출(경상조세,연금지출,사회보험료,기타 비소비지출) 지출부문: 매일의모든지출,월간기구소득,가구실태,최근 1년 지출(70여개 품목)및 전년소득
12	작성방법	- 면접조사(인터넷조사 병행)
13	자료수집체계	- 표본가구→지방통계청(사무소)→통계청
14	분류 및 기준	- 해당 없음
15	조사주기, 대상기간 및 조사기간	 작성주기: 분기(소득)/연간(지출) 대상기간: 가계부(조사당월)/연간조사표(조사전월 기준 최근1년, 단 소득은 전년 1월~12월) 작성(조사)기간: 매월 1일 ~ 말일
16	공표범위	- 지역: 전국 - 내용: 가구특성별*가구당 월평균 소득 및 가계 지출 등

[소득부문]

□ 2017년 이후 가계소득조사 변경내용

이후) 비고 통합 및 명칭변경
통합 및 명칭변경
 특하 미 면치변경
통합 및 명칭변경
항목통합
통합 및 명칭변경
통합 및 명칭변경
 트칭 미 명치버건
통합 및 명칭변경
통합 및 명칭변경

< 비경상소득의 통계청 조사기준 및 국제기준 >

- 조사기준: 경조소득 등 일시적이고 경상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수입
 - (예시) 다른 가구로부터 축의 및 조의 표시로 애경사에 제공받은 **경조소득**과 복권 당첨금, 도박에서 딴 돈 등과 같이 우발적인 이득이나 불로소득 등
 - ※ 국제적으로 비경상소득은 가구의 소득에서 제외되는 개념이나, 가계동향조사에서는 애경사에 발생하는 소비지출의 누락 방지를 위해 '90년부터 경조조득(비경상소득)을 조사하고 있음
- **국제기준**: 불로소득 이익 및 기타 비정기적, 일회성 소득은 소득 개념에서 제외
 - (예시) 복권 당첨금, 손해보험금, 불로소득 등
 - (출처) 가계 소득 및 지출통계(ILO, 2003), 캔버라 가구소득통계 핸드북(UN, 2011), 가계소득 통계를 위한 OECD 분석틀(OECD, 2013)

[지출부문]

- □ 2018년 연간조사표
 - (변경 항목) 경상조세 : 종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반영

- (변경 이유) 조사 정확성을 위해 가계부 의무성정기지출에서 연간조사표로 이동

신규, 변경, 추가 조사항목 내역

조사표	구분	2017년	2018년	비고		
	항목 삭제	○ 의무성정기지출 ○ 사회적현물이전	 의무성정기지출 ★ 종합소득세, 경상재산세, 지동차세, 이동전화기 → 연간조사표 사회적현물이전 	행정자료, 내검로직 개 발로 대체		
가계부	항목 신설	_	월간 가구 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정부수혜금사적이전소득	2019년 분기소득 작성 (표본규모 파악 등)을 위 한 분석항목(내부용)		
연간 조사표	항목 이동 (가계부 에서 이동)	_	기경상조세- 종합소득세- 경상재산세- 자동차세*** 연말정산- 환급받은 금액- 납부한 금액	지출 주기가 반기, 연간 으로 연간조사가 적당		
		_	이동전화기기	지출 주기가 연간으로 연간조사가 적당		

2. 모집단 및 표본틀

2-1 목표모집단과 조사모집단

[소득부문]

□ 표본설계 방향

- 가구에 대한 월간 수입 정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소득모집단의 대표성을 갖 는 표본추출
 - 신뢰성 높은 연간 통계 작성을 위한 표본규모 결정
 -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추출방법(층화, 분류지표) 적용
 - 조사 효율을 위하여 가구부문 경상조사를 진행하는 다목적 표본 활용
- 2017년 가계소득조사가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일부 연동그룹(3~8그룹)에서만 진행됨에 따라, 다목적 표본의 연동표본제 적용을 고려하여 표본설계 다원화

- 기존 표본규모의 조정(4~8그룹), 신규 가계조사 대상 표본추출(9,1~3그룹) 및 6차연동(4~6그룹) 등

□ 목표모집단(Target Population)

○ 조사기간 동안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일반 가구

□ 조사모집단(Survey Population)

-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조사구 내 적격가구*(기숙시설, 특수사회시설, 수용시설, 군대 등 집단 가구 제외)
 - * 적격가구: 가구 지출과 영업용 지출이 구분되지 않는 농어가, 음식점, 여관, 하숙업 겸업가구, 가구원 중 영업상 사용인이 2인 이상 동거하는 가구, 비혈연 가구원으로 구성된 가구, 외국인 가구 등을 제외한 가구

□ 모집단에 대한 포함률(coverage)

'18	가계소득조사	가계지출조사
조사구	98.6	99.8

- **(4차 4~6그룹 및 5차 7~8그룹)** 기존 소득조사 표본조사구 목록
 - 2017년 대비 표본규모가 축소(그룹당 111개 조사구 → 102개 조사구)됨에 따라 전 년도 소득조사 대상 조사구 중 일부를 표본으로 선정*
 - * 2017년 조사 중 자연 감소(조사구 교체 등)한 지역(울산, 충주)은 표본 추가(각 1개 조사구)
- (5차 9,1~3그룹) 5차 연동 경활 표본조사구 중에서 섬 및 농가 비율이 높은 조 사구를 제외한 조사구 목록
 - 5차 9,1~3그룹 경활 표본조사구 중에서 섬 및 농가 비율이 높은 조사구*를 제 외한 조사구 목록에서 소득조사 표본 추출
 - * 특·광역시 및 도지역 동부는 30%, 도지역 읍면부는 50%를 초과하는 조사구 제외
 - 포함률: 99.3%(가구 기준)
- (6차 4~6그룹) 6차 연동 경활 표본조사구 중에서 섬 및 농가 비율이 높은 조사 구를 제외한 조사구 목록
 - 6차 4~6그룹 경활 표본조사구 중에서 섬 및 농가 비율이 높은 조사구*를 제 외한 조사구 목록에서 소득조사 표본 추출
 - * 특광역시 및 도지역 동부는 30%, 도지역 읍면부는 50%를 초과하는 조사구 제외
 - 포함률: 99.7%(가구 기준)

- 5차 9, 1~3그룹 99.3%, 6차 4~6그룹 99.7%
 - 표본의 대표성(sample representativeness)은 가중 후 전국의 모든 가구를 대표

[지출부문]

□ 목표모집단과 조사모집단 정의

- (목표모집단) 전국의 모든 일반가구(농어가 포함)
- (조사모집단)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일반가구

□ 목표모집단과 조사모집단 차이

- (목표모집단) 조사기간 동안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일반 가구
- (조사모집단)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이하 인총) 전수조사구 내 일반 가구
 - 기숙시설, 특수사회시설 등 시설조사구 내 집단 가구 제외

<표> 조사모집단 내 조사구특성별 분포

2	조사구특성	조사구수	가구수	비중	인구수	비중
-	일반	682,414	19,518,410	100.0	49,441,085	100.0
	보통(1)	360,488	10,132,924	51.9	22,468,219	45.4
	섬(2)	1,619	43,070	0.2	89,823	0.2
	아파트(A)	320,307	9,342,416	47.9	26,883,043	54.4

2-2 표본추출틀(표본조사)

[소득부문]

□ 표본추출틀

- 조사모집단 내 일반조사구 중 조사구 특성이 보통(1), 아파트(2)인 조사구
 - 접근이 어려운 섬 조사구 제외

<표 1> 표본추출틀 내 조사구특성별 분포

2	조사구특성	조사구수	가구수	비중	인구수	비중
	일반	682,414	19,518,410	100.0	49,441,085	100.0
	보통(1)	360,488	10,132,924	51.9	22,468,219	45.4
	섬(2)	1,619	43,070	0.2	89,823	0.2
	아파트(A)	320,307	9,342,416	47.9	26,883,043	54.4

○ 가계소득조사(이하 소득조사)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이하 경활) 와 함께 실시되는 다목적 표본조사로써 경활 표본 중 일부를 소득조사 표본으로 추출

[지출부문]

□ 표본추출틀 명세

- 2015년 인총 전수조사구 내 섬을 제외한 일반 조사구(포함률* 99.8%)
 - * 조사모집단 대비 표본추출틀 내 가구(섬 조사구 제외) 비중
 - 조사모집단 내 보통 및 아파트 조사구

<표> 표본추출틀 현황

(단위: 개, 가구, %)

	되어/서괴초\		조사도	<u> </u> 집단		표본주줄들	117 7 7 7 7 5 7
	지역(설계층)			가구	조사구(1,A)	가구	포함률*
	전국		682,414	19,518,410	680,795	19,475,340	99.8
서울		동부	134,191	3,907,698	134,191	3,907,698	100.0
경인	인천/경기	동부	160,100	4,783,660	160,084	4,783,261	100.0
- O L'	다다/ 6/1	읍면부	26,906	809,265	26,696	802,361	99.1
동북	대구	동부	63,803	1,791,368	63,803	1,791,368	100.0
중독	강원/경북	읍면부	31,141	830,587	31,139	830,580	100.0
호남	광주/제주	동부	54,107	1,534,039	54,087	1,533,484	100.0
오금	전북/전남	읍면부	26,458	716,040	25,371	687,042	96.0
두나	부산	동부	88,314	2,464,189	88,299	2,463,846	100.0
동남	울산/경남	읍면부	21,995	592,800	21,784	588,478	99.3
ᄎ ᅯ	대전/세총	동부	47,859	1,336,216	47,859	1,336,216	100.0
충청	충북/충남	읍면부	27,540	752,548	27,482	751,006	99.8

^{*} 포함률 : 조사모집단 대비 표본추출틀 내 가구 비중

3. 표본설계 및 관리(표본조사)

3-1 표본설계 방법 및 결과

[소득부문]

□ 표본추출틀의 출처

○ 통계명: 「인구주택총조사」

○ 작성기관 : 통계청○ 작성년도 : 5년 마다

□ 표본추출틀 선정이유

- 5년마다 실시되는 인구주택총조사의 전수조사구는 우리나라의 농어가를 포함한 모든 일반가구에 대한 기본 가구정보, 가구원정보, 주택에 대한 특성이 자세히 제공되어 표 본추출틀로 사용하기에 적합
- 인구주택총조사는 각종 경제·사회 발전계획의 수립 및 평가와 각종 학술연구, 민간부

문의 경영계획수립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히 사회통계의 가구부문 표본조사의 표본추출틀로 사용하기에 적합함

□ 표본추출틀 갱신 과정

- 5년 주기의 인구주택총조사가 완료되어 전국의 일반가구에 대한 모집단 정보를 반영한 표본추출틀을 완성
- 총조사 이후 +3년차부터 최신의 모집단 정보를 반영한 표본추출들을 사용하여 표본추출

□ 가계소득조사 표본 설계 특징

- 다목적 표본 활용
 - 통계청에서는 매월 실시하는 가구부문 경상조사(경제활동인구조사, 집세조사, 가계소득조사)를 위하여 동일한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다목적 표본 운영
 - 경제활동인구조사(이하 경활)의 표본가구 중에서 가계소득조사 표본가구를 선정하고, 소비자물가지수를 작성하는 도시에서 집세조사를 실시
 - 조사별 조사시간을 달리하여 표본가구의 응답부담 경감
- 연동표본
 - 표본개편으로 인한 시계열 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2005년부터 연동 표본제를 도입하였고, 2018년에는 6차 연동 표본 적용 예정

	2차 연동 3차 연동 4차 역		4차 연동	5차 연동	6차 연동
연동도입시기	2007.09	2007.09 2010.09		2016.01	2018.01
	2005년	2005년	2010년	2010년	2015년
표본추출틀	인총+신축조사	인총+신축조사	인총+신축조사	인총+신축조사	2013년 인총조사구
	구(06년)	구(08년)	구(11년)	구(14년)	한동조사구
표본규모	1629개 조사구	1629개 조사구	1629개 조사구	1647개 조사구(경기9, 제주9 조사구 추가)	1737개 조사구 (세종54, 강원18, 전북18조사구 추가)

□ 표본설계 기본방향

- 최신 모집단 반영
 - 2015년 기준 행정자료 기반 등록자료와 인총 표본자료를 이용하여 모집단 작성
- 모집단 분할 방법의 적용
 - 시의성 있는 모집단 방영을 위하여 기준(개편)시점의 모집단을 동일한 속성의 부차 모집단(subpopulation)으로 구분한 후, 각 부차 모집단에서 매년 3개 그룹씩 추출

□ 표본설계

○ '17년 조사대상에서 표본규모를 확대(666→918조사구)하고, 표본체계를 전환(고정표본→ 연동표본)하여 실시

- (1~3, 9그룹) '18년 1월 표본의 일시 추가
- (4~8그룹) 현재('17년 12월) 대상에서 연동

<표1> 표본설계 주요 변경사항

	~2016년	2017년	2018년
조 사 명	가계동향조사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가계동향조사(가계소득조사)
조 사 방 법	가구실태: 면접조사	가구실태: 면접조사	
포사당답	가계부: 응답자 기입조사	조사표: 면접조사	
	가구실태: 가구원 및 주거에 관	한 사항	
조 사 항 목	가계소득	가계소득(근로·사업소득 등)	
		비소비지출(조세, 연금, 가구간이	I전 등)
모 집 단	조사기간 중 대한민국에 거주히	고 있는 모든 일반 가구	
- 4	'10년 인총 일반조사구 및 '14.	10까지의 신축아파트 조사구 내	'15년 인총 일반조사구 내 적격
조 사	적격 가구∗		가 구∗
모 집 단	* 농가, 비혈연, 외국인 가구 등 제외		* 농가, 비혈연, 외국인 가구 등 제외
표본체계	 다목적 표본(연동표본, 1/18)	다목적 표본(연동표본, 1/18)	
	1~9그룹 내 가계조사 대상 조	다목적 표본(고정표본) 3~8그룹 내 가계조사 대상 조	1~9그룹 내 가계조사 대상 조사
조사대상	사구 내 적격 가구	사구 내 적격 가구	구 내 적격 가구
표본규모	999조사구	666조사구	918조사구
五七十工	· 연간 약 8,600가구 완료	· 연간 약 4,300가구 완료	· 연간 약 7,800가구 완료 예상
	이상추출(층화 2단 집락추출)		
표 본 추 출	 · 1단: 25개 지역층별 경활 표본	! 조사구를 대상으로 계통추출	
방 법	· 2단: 추출된 일반조사구 내 표	본가구 단순임의 추출	
	(경활 표본가구 중 10가	. = = = /	
층화	25개 지역층: 16개 시도 및 행정	성구역(동부, 읍면부 기준)	4·5차연동: 25개 지역층(세종미포함)
0-1			6차연동: 27개 지역층(세종 포함)
내재층화		군집화), 관할 사무소, 주택유형(6	
	개 분류), 인구·가구 특성 등	1인가구, 농가여부 등 6차연동: 주택유형, 자가비율, 학령	
(분류지표)			기포함가구, 농가비율 등
목표오차	소비지출 RSE 기준 전국 2% ·	이내	소득 RSE 기준 전국 2.5% 이내
대 체 방 법	가구특성(가구원수, 가구주 종시	상지위)이 동일한 가구로 대체	

※ 보통 2~3마다 차수가 바뀜. 5년마다 실시되었던 인구주택총조사 등의 특성을 반영하거나 표본 프레임 변경시 차수가 변경됨. 가계동향조사는 36개월 응답하고 연동 표본으로 대략 한달에 1/36씩 바뀌게 되고 대략 3년만다 표본 구조의 변동이 있음.

□ 표본 규모

1) 표본 규모 및 배분

○ 모집단 변화 적시 반영, 기존 경활 표본으로부터의 재추출 등 제한된 상황 하에서 소득모집단에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표본규모 검토 ○ 이전 조사 표본규모(설계층별 추출률), 정상가구비율('17년 1~8월) 및 연동모형(9의 배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918개 조사구가 최적규모로 선정

<표 3> 표본규모 산정 방안

(단위: 조사구, 가구)

			\- \ \ \ \ \ \ \ \ \ \ \ \ \ \ \ \ \ \
방안	방법	표본규모**	예상 유효표본수*
방안1	기존추출률 반영	1,053	6,335
방안2	설계층별 1/2 추출	864	5,184
방안3	방안2+유효표본비율*적용	918	5,462

^{* 2017}년 기준 대상, 적격 및 정상가구비율의 월평균값을 적용한 수치임

<표 4> 유효표본비율 반영에 따른 표본규모

(단위: 조사구)

		유효표본	4·5차	연동	6차	연동
		비율*	경활표본**	소득표본	경활표본**	소득표본
전	국	-	1,647(1,629)	891	1,701	918
	울	0.636	207	132	207	132
	·산	0.516	108	56	108	56
	구	0.470	90	45	90	45
	천	0.485	99	50	99	50
	·주	0.528	81	43	81	43
다	전	0.538	81	44	81	44
울	·산	0.501	72	36	72	36
세종***	동	0.643	1	-	27	14
All 6***	읍면	0.636	-	-	27	14
경기	동	0.506	144(135)	73	171	87
78 71	읍면	0.507	63	32	36	18
 강원	동	0.529	45	24	45	24
~6°€	읍면	0.533	45	24	45	24
충북	동	0.516	45	23	54	28
8 4	읍면	0.556	45	25	36	20
충남	동	0.490	45	23	45	23
7 H	읍면	0.519	45	23	45	23
 전북	동	0.535	45	24	45	24
신국	읍면	0.611	36	22	36	22
전남	동	0.495	45	23	36	18
선급	읍면	0.519	45	23	54	28
경북	동	0.453	54	27	54	27
70年	읍면	0.472	54	27	54	27
경남	동	0.509	54	27	63	32
	읍면	0.538	45	24	36	19
	동	0.696	30(27)	21	36	25
제주	읍면	0.841	24(18)	20	18	15

^{*} 설계층별 유효표본비율('16년 가계동향조사 기준 정상가구 비율)을 적용한 추출률(하한 0.5 적용)

- 통계 작성 수준(전국), 기존 통계와의 시계열 유지 등을 고려하여 설계층별 기존 표본규모를 고려 배분 수행

<표 5> 설계층별 표본규모 및 배분

^{**} 전국 기준 표본규모이며, 연동표본제 적용을 위해 9의 배수로 조정된 수치임

^{** ()}는 4차 연동 경활표본이며, 6차 연동 경활표본에는 세종이 포함됨

^{*** 2016}년 전국 동/읍면 기준 유효표본비율을 적용함

(단위: 조사구, 가구)

		기존('16)	4·5차 연동(세종 미포함)	(전뒤. 6차 연동(/	<u>소사구, 가구)</u> 네종 포함)
		조사구	조사구	가구	조사구	가구
	국	999	918	9,180	918	9,180
서	울	126	126	1,260	126	1,260
부	·산	72	63	630	63	630
대	구	54	45	450	45	450
인	천	54	45	450	45	450
광	·주	54	45	450	45	450
대	전	54	45	450	45	450
울	·산	36	36	360	36	360
	동	_	-	_	18	180
세종	읍면	_	-	_	9	90
경기	동	72	72	720	72	720
6 71	읍면	36	27	270	27	270
강원	동	36	36	360	36	360
8면	읍면	27	18	180	18	180
충북	동	27	27	270	27	270
о́¬	읍면	27	18	180	18	180
충남	동	36	36	360	27	270
• • • • • • • • • • • • • • • • • • •	읍면	27	27	270	18	180
전북	동	36	36	360	36	360
	읍면	18	18	180	18	180
전남	동	36	36	360	27	270
	읍면	18	18	180	18	180
경북	동	36	36	360	36	360
	읍면	27	27	270	27	270
경남	동	36	36	360	36	360
0 0	읍면	27	18	180	18	180
제주	동	18	18	180	18	180
All I	읍면	9	9	90	9	90

○ 2017년 소득조사 비대상 그룹을 포함한 조사 수행 시, 통계작성 주기별 예상 표본 규모는 분기 약 6,000가구, 연간 7,800가구

<표 6> 통계 작성 주기별 예상 유효표본

(단위: 가구)

	연간	1/4	2/4	3/4	4/4
표본규모	12,240	9,690	9,180	9,690	10,200
예상 유효표본	(7,834)	(6,202)	(5,875)	(6,202)	(6,528)

()는 '16년 가계동향조사 대상·적격·정상가구 비율(전국)을 반영한 수치임

2) 목표 정도

○ 2017년 1/4분기 소득항목의 상대표준오차 기준, 소득 및 경상소득 2.5%, 근로 및 사업소득 4% 이하 수준

<표 7> 표본규모별 예상 상대표준오차

(단위: 가구, %)

			(한뒤: 기구, 70)
	'17.1/4	기존추출률	유효표본비율
표본가구	6,660	1,053	918
유효가구*	4,145	6,404	5,882
소득	2.6	2.1	2.3
경상소득	2.7	2.2	2.4
근로소득	3.6	2.9	3.1
사업소득	4.4	3.6	3.8

^{* 2017}년 기준 대상, 적격 및 정상가구비율의 월평균값(1~8월)을 적용한 수치임

○ 지역별 표본규모

<표2> 지역별 표본규모 및 배분

		2016년	2017년	2018년
	전국	999	666	918
	서울	126	84	126
부산		72	48	63
대구		54	36	45
인천		54	36	45
광주		54	36	45
대전		54	36	45
울산		36	24	36
세종	동	_	_	18
/II ⊙	읍면	_	_	9
경기	동	72	48	72
つ 	읍면	36	24	27
강원	동	36	24	36
0 4	읍면	27	18	18
충북	동	27	18	27
о́ ¬́	읍면	27	18	18
충남	동	36	24	27
<u> </u>	읍면	27	18	18
전북	동	36	24	36
<u>~</u>	읍면	18	12	18
전남	동	36	24	27
~ ~ ~ ~ ~ ~ ~ ~ ~ ~ ~ ~ ~ ~ ~ ~ ~ ~ ~	읍면	18	12	18
경북	동	36	24	36
O ÷	읍면	27	18	27
경남	동	36	24	36
O D	읍면	27	18	18
제주	동	18	12	18
∧ıı +	읍면	9	6	9

□ 사후층화 가중값

○ 설계 당시에 고려하지 못한 모집단의 분포를 보정하고 최신의 모집단 규모를 반영 하기 위해 사후층화를 통해 가중값 조정

○ 사후층 구성

- 설계층(25)×주택유형(2)×가구원수(4)로 196개 사후 가중층(weighting class) 구성
 - * 제주 읍면지역은 아파트 표본이 없으므로 제외
- 사후층별 응답 가구수와 가중값의 분포를 고려하여 최종 165개층으로 병합

<표 46> 사후층(165개, 2015년부터 적용)

지역	거처유형		가구	원수		지역	거처유형		가구	원수		지역	거처유형		가구	원수	
시탁	기へπで	1인	2인	3인	4인+	시탁	ノハボな	1인	2인	3인	4인+	시탁	/ Ι^Ιπδ	1인	2인	3인	4인+
서울	아파트외					경기 동부	아파트외					경기	아파트외				
시골	아파트					동부	아파트					읍면부	아파트				
부산	아파트외					강원 동부	아파트외					강원 읍면부	아파트외				
구건	아파트					동부	아파트					읍면부	아파트				
대구	아파트외					충북 동부	아파트외					충북	아파트외				
	아파트					동부	아파트					읍면부	아파트				
인천	아파트외					충남 동부	아파트외					충남 읍면부	아파트외				
인선	아파트					동부	아파트					읍면부	아파트				
광주	아파트외					전북	아파트외					전북	아파트외				
하구	아파트					전북 동부	아파트					전북 읍면부	아파트				
대전	아파트외					전남 동부	아파트외					전남 읍면부	아파트외				
네인	아파트					동부	아파트					읍면부	아파트				
울산	아파트외					경북 동부	아파트외					경북 읍면부	아파트외				
굴인	아파트					동부	아파트					읍면부	아파트				
						경남 동부	아파트외					경남 읍면부	아파트외				
						동부	아파트					읍면부	아파트				
						제주 동부	아파트외					제주	아파트외				
						동부	아파트					읍면부	아파트				

[지출부문]

□ 표본추출 주요 내용

	2017년	2018년
모집단	전국의 일반 가구(농가 포함)	전국의 일반 가구(농가 포함)
표본추출틀	2015년 인총 표본조사구 내 일반 조사구 (포함률* 94.9%) * 조사모집단 대비 표본추출틀 내 가구 (표본조사구 추출률 반영) 비중	2015년 인총 전수조사구 내 섬을 제외한 일반 조사구(포함률* 99.8%) * 조사모집단 대비 표본추출틀 내 가구 (섬 조사구 제외) 비중
표본체계	전용 표본(순환 표본, 1/12)	전용 표본(순환 표본, 1/12)
표본규모	월 1,000가구, 연간 12,000가구 목표	월 1,000가구, 연간 12,000가구 목표
표본추출방법	층화 2단 집락추출	층화 2단 집락추출
층화 	11개 지역층	11개 지역층

□ 표본추출틀의 출처

○ 통계명 : 「인구주택총조사」

○ 작성기관 : 통계청

○ 작성년도 : 5년 마다

□ 표본추출틀 선정이유

- 5년마다 실시되는 인구주택총조사의 전수조사구는 우리나라의 농어가를 포함한 모든 일반가구에 대한 기본 가구정보, 가구원정보, 주택에 대한 특성이 자세히 제공되어 표 본추출틀로 사용하기에 적합
- 인구주택총조사는 각종 경제·사회 발전계획의 수립 및 평가와 각종 학술연구, 민간부 문의 경영계획수립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히 사회통계의 가구부문 표본조사의 표본추출틀로 사용하기에 적합함

□ 표본추출틀 갱신 과정

- 5년 주기의 인구주택총조사가 완료되어 전국의 일반가구에 대한 모집단 정보를 반영한 표본추출틀을 완성
- 총조사 이후 +3년차부터 최신의 모집단 정보를 반영한 표본추출틀을 사용하여 표본추 출

□ 표본추출틀의 최신화

- 표본추출 이후 변화된 모집단의 가구 및 인구분포를 반영하기 위해 가중치 부여단계에 서 사후가중값을 반영하여 최신화
- (사후가중값) 설계 당시에 고려하지 못한 모집단의 분포를 보정하고 최신의 모집단 규 모를 반영하기 위해 추계가구 및 인구 분포를 활용한 캘리브레이션 추정방법 이용
 - 성, 연령대별 추계인구분포 및 설계층, 주택유형 및 가구원수별 추계가구분포를 이용 한 캘리브레이션 추정방법 검토
- (인구분포) 2017년 기준 성(2)*연령대(6)별 추계인구분포 이용

<표 5> 추계인구층(12개)

	<20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남성						
여성						

- (가구분포) 설계층(11)*주택유형(2)*가구원수(4)별 가구분포 작성
- * 사후층별 응답가구수가 10가구 미만인 경우 주택유형을 병합
- 2015년 전수 기준 표본추출틀 내 가구분포를 이용하여, 2017년 기준 추계가구분포 작 성

<표 6> 추계가구층(68개)

서게ᄎ	기치이허		가구	원수	
설계층	거처유형	1인	2인	3인	4인+
서울 동부	아파트				
시호 6구	아파트외				
경인 동부	아파트				
000	아파트외				
경인 읍면부	아파트				
정신 답인구	아파트외				
동북 동부	아파트				
	아파트외				
동북 읍면부	아파트				
중독 답긴ㅜ 	아파트외				
호남 동부	아파트				
모	아파트외				
호남 읍면부	아파트				
_ 오리 답인구 	아파트외				
동남 동부	아파트				
	아파트외				
동남 읍면부	아파트				
	아파트외				
충청 동부	아파트				
800	아파트외				
충청 읍면부	아파트				
60 표근ㅜ	아파트외				

가. 모집단 및 표본추출틀

3) 목표모집단

ㅇ 조사기간 동안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일반 가구

4) 조사모집단

-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이하 인총) 전수조사구 내 일반 가구
 - 기숙시설, 특수사회시설 등 시설조사구 내 집단 가구 제외

<표 1> 조사모집단 내 조사구특성별 분포

=	조사구특성	조사구수	가구수	비중	인구수	비중
	일반	682,414	19,518,410	100.0	49,441,085	100.0
	보통(1)	360,488	10,132,924	51.9	22,468,219	45.4
	섬(2)	1,619	43,070	0.2	89,823	0.2
	아파트(A)	320,307	9,342,416	47.9	26,883,043	54.4

5) 표본추출틀

- 조사모집단 내 일반조사구 중 조사구 특성이 보통(1), 아파트(A)인 조사구
 - 접근이 어려운 섬 조사구 제외

6) 포함률

○ 조사모집단 대비 표본추출틀의 포함률은 99.8%

<표 2> 표본추출틀 현황

(단위 : 개, 가구, %)

	지역(설계층)		조사5	조사모집단		표본추출틀		
	시작(설계능)		조사구(1,2,A)	가구	조사구(1,A)	가구	포함 률 *	
	전국		682,414	19,518,410	680,795	19,475,340	99.8	
 서울		동부	134,191	3,907,698	134,191	3,907,698	100.0	
경인	인천/경기	동부	160,100	4,783,660	160,084	4,783,261	100.0	
9 L	라면/6기	읍면부	26,906	809,265	26,696	802,361	99.1	
동북	대구	동부	63,803	1,791,368	63,803	1,791,368	100.0	
古书	강원/경북	읍면부	31,141	830,587	31,139	830,580	100.0	
동나	광주/제주	동부	54,107	1,534,039	54,087	1,533,484	100.0	
호남	전북/전남	읍면부	26,458	716,040	25,371	687,042	96.0	
Ę.I.Ł	부산	동부	88,314	2,464,189	88,299	2,463,846	100.0	
중입	동남 울산/경 남	읍면부	21,995	592,800	21,784	588,478	99.3	
	대전/세종	동부	47,859	1,336,216	47,859	1,336,216	100.0	
충청 	충북/충남	읍면부	27,540	752,548	27,482	751,006	99.8	

* 포함률 : 조사모집단 대비 표본추출틀 내 가구 비중

나. 층화 및 분류지표

1) 충화

- 11개 지역으로 충화
 - 서울, 경인(동부/읍면부), 동북(동부/읍면부), 호남(동부/읍면부), 동남 (동부/읍면부), 충청(동부/읍면부)으로 층화 <표 2>
 - 공표수준(전국, 동부 및 읍·면부)과 표본규모 등을 고려하여 2017년 가 계지출조사와 동일한 설계층 적용
 - 11개 설계층별 가계지출조사 표본가구의 소비지출 및 비소비지출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함('17년 상반기 조사내용(설계가중값 적용) 분석 결과)

2) 분류지표

- 분류지표 선정 및 활용
 - 2017년 상반기 가계지출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소비지출, 비소비지출, 소득 금액과 연관성이 높은 분류지표 선정
 - 층화 후 조사항목과 연관성이 높은 조사구 특성 변수(분류지표)에 따라 조사구를 정렬하고 계통추출하면 **내재적 충화효과**를 얻을 수 있음

○ 행정구역(시도)

- 설계층 내 복수의 시도가 포함됨에 따라, 행정구역(시도)에 따른 지출·소 득 수준의 차이 반영 필요

○ 권역 설정

- 전국 주택공시가격자료('15년)를 이용하여 전국의 읍면동 군집화(부록4 참조)
 - * 서울 등 동부 지역은 4~5개 권역. 읍면부 지역은 3개 권역으로 군집화(세종지역 제외)
- 설계층 및 권역별로 표본가구의 소비지출과 비소비지출 분포 검토

○ 주택유형 구분

- 단독주택과 아파트를 주택유형과 전용면적을 이용하여 세분화
 - * 서울 등 동부 지역은 8개 범주, 읍면부 지역은 5개 범주로 구분
- 지출금액과의 연관성 분석결과, 주택유형은 모든 층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 <표 3> 주택유형

		설계	계층
	주택유형	서울, 경인, 동북,	경인, 동북, 호남,
		호남, 동남, 충청의 동부	동남, 충청의 읍면부
 단독	일반	① 일반 단독주택	
근속	다가구, 영업겸용	② 다가구, 영업겸용 단독주	택
	전용면적 60m² 이하	③ 소형	③ 소형
	60m² 초과 ~ 85m² 이하	④ 중형1	
아파트	85m² 초과 ~ 102m² 이하	⑤ 중형2	
	102m² 초과 ~ 135m² 이하	⑥ 대형1	④ 중대형
	135㎡ 초과	⑦ 대형2	
기타	연립, 다세대, 기타	⑧ 기타	

○ 인구 및 가구 특성과의 연관성 검토

- 2015년 인구총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조사구 특성변수를 생성하고 2017 년 상반기 가계지출조사 결과와 연계하여 분석
- **인구 특성** : 평균 연령, 미취학 아동 비율, 초중고 학생 비율, 3·40대 인구 비율, 65세 이상 인구 비율, 대졸 이상 비율, 3·40대 대졸 이상 비율
- 가구 특성 : 평균 가구원수, 1인 가구 비율, 고령(65세 이상) 가구 비율, 노인가구 비율, 농가 비율, 자가 비율, 미취학 아동 포함 가구 비율, 충고 학생 포함 가구 비율

○ 변수 선정

- 설계층별 가계소득, 소비지출 및 비소비지출 금액에 대해 권역, 주택유 형과 조사구의 인구, 가구특성별 비율을 설명변수로 하는 다변량 분산 분석 수행(Type II)
- 연령 및 학력과 관련된 속성은 인구 비율 보다 가구 비율 변수의 설명 력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설계충별 4~6개의 특성변 수 선정

○ 정렬순서 결정

- 선정된 특성변수를 이용하여 다변량 분산분석(Type I)을 수행하고, 유 의확률과 평균제곱합(MS)의 크기 순서로 **정렬순서 결정**

<표 4> 설계층별 정렬순서

설기	계층	분류지표 및 정렬순서
	울	● 권역(5)● 주택유형(8)● 대졸이상 비율● 평균 연령● 미취학 아동(만5세 이하) 포함 가구 비율
경인	동부	❶ 행정구역(2) ❷ 권역(5) ❸ 주택유형(8) ❹ 노인가구 비율 ⑤ 초중고 학생 가구원(만6~18세) 포함 가구 비율 ⑤ 평균 가구원수
6 L	읍면부	❶ 행정구역(2) ❷ 권역(3) ❷ 주택유형(5) ❹ 농림어가 비율 ⑤ 1인가구 비율 ⑤ 자가 비율
동북	동부	❶ 행정구역(3) ❷ 권역(5) ❷ 1인가구 비율 ❹ 초중고 학생 가구원 포함 가구 비율 ⑤ 노인가구 비율 ⑥ 대졸 이상자 비율
중독	읍면부	❶ 행정구역(3) ❷ 권역(3) ❸ 농림어가 비율 ❹ 평균 가구원수 ⑤ 주택유형(5) ❻ 미취학 아동 포함 가구 비율
호남	동부	❶ 행정구역(4) ❷ 권역(5) ❸ 노인가구 비율 ④ 평균 가구원수 ⑤ 주택유형(8) ⑤ 3·40대 대졸 이상자 비율
오금	읍면부	❶ 행정구역(4) ❷ 권역(3) ❸ 3·40대 대졸 이상자 비율 ④ 주택유형(5) ⑤ 초중고 학생 가구원 포함 가구 비율
동남	동부	❶ 행정구역(3) ❷ 권역(5) ❷ 주택유형(8) ④ 평균 연령 ⑤ 초중고 학생 가구원 포함 가구 비율 ⑤ 대졸 이상자 비율
66	읍면부	❶ 행정구역(3) ❷ 권역(3) ❷ 3·40대 인구 비율 ❹ 주택유형(5) ❸ 대졸 이상자 비율 ❻ 평균 연령
추 ᅯ	동부	❶ 행정구역(4) ❷ 권역(5) ❷ 미취학 아동 포함 가구 비율 ❹ 평균 연령 ⑤ 주택유형(8) ⑥ 3·40대 인구 비율
충청	읍면부	❶ 행정구역(4) ❷ 권역(3) ❷ 주택유형(5) ❹ 초중고 학생 가구원 포함 가구 비율 ⑤ 3·40대 대졸 이상자 비율 ⑤ 자가 비율

○ 최종 분류지표

- 2015년 등록 기반 인구·가구 표본추출틀에서 인구·가구 특성변수를 범 주화한 최종 분류지표를 작성하여 충별 추출

다. 표본 규모

1) 표본 규모

- 연간통계의 공표수준을 고려하여 연간 1,200개 조사구로 결정
 - 월별 100개, 분기 300개 조사구 추출

2) 표본 가구 수

○ 최적 가구 수 분석

- 조사구 내 표본 가구 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주요 지출 품목별 분석 수행
- 분기별 분산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품목별 최적 가구 수 산출
- 품목별 집락효과(Deff), 급내상관계수 (R_a^2) 를 산출하고 조사구당 조사비용 (C_{psu}) 과 조사구 내 가구당 조사비용 (C_{esu}) 의 상대적인 비용을 가정하여 산정
 - * 가계지출조사의 조사비용의 비율을 '16년 기준 도급조사원 인건비(51,880원)와 '16년 예비조사의 업무량(1인당 2개 조사구, 2개월 담당) 및 조사필수품 비용를 반영하여 산정하면, 조사구당 조사비용(C_{nsn})은 약 103만원, 가구당 조사비용(C_{ssn})은 7만원이고 조사비용의 비율은 14:1 수준

○ 최적 가구 수

- 가계지출과 소비지출, 비소비지출 등 주요 품목별 최적 가구 수의 중앙 값은 조사비용의 비율에 따라 6~11가구로 시현
- 기존 가계동향조사의 조사구당 표본 가구 수인 10가구 완료 목표

<표 5> 층별 조사구당 최적 가구 수

(단위 : 가구)

설계층		1 C C	R_a^2		조사비용	의 비율($C_{\!\scriptscriptstyle p}$	$_{su}:C_{ssu})$ 별	기구 수	
2	/11궁	deff	R_a	4:1	6:1	8:1	10:1	12:1	14:1
П	경 균	1.85	0.153	6	7	8	9	10	11
서울	동부	1.85	0.177	6	7	8	9	10	11
경인	동부	1.79	0.137	6	8	9	10	11	11
7 L	읍면부	1.80	0.140	6	8	9	10	11	12
C H	동부	1.91	0.156	6	7	8	9	10	11
동북	읍면부	1.92	0.162	6	7	8	9	10	11
=11	동부	1.91	0.166	6	7	8	9	10	10
호남	읍면부	1.39	0.077	7	9	11	12	13	14
Ę I I	동부	1.91	0.165	6	7	8	9	10	10
동남	읍면부	2.04	0.191	5	6	7	8	9	10
충청	동부	1.79	0.137	6	8	9	10	11	11
	읍면부	1.98	0.179	5	7	8	8	9	10

○ 적격가구 비율 및 응답률 분석

- 조사구당 10가구 조사 완료를 위해서는 과대 표집(over sampling) 필
- 2017년 상반기 가계지출조사의 적격가구 비율과 응답률 분석

○ 표본 가구 수 결정

- 가계지출조사는 농림어가를 포함하므로, 빈집 등 부적격 가구 제외
- 적격가구 비율과 응답률*을 이용하여 표본 가구 수를 산출한 결과 10 가구 조사 완료를 위해 최소 15가구에서 최대 21가구 조사 필요
 - * 접촉에 성공한 모든 적격가구 중 응답 완료된 가구수 비율

3) 표본 배분

- 표본 배분을 위한 검토
 - 모집단의 가구 분포를 고려하여 비례배분 및 제곱근 비례배분 방법 검 토
 - 설계층별 2017년 상반기 소비지출 항목의 상대표준오차(RSE) 검토
- 가구 분포 검토
 -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설계층 내 행정구역 구성을 고려한 비수 도권 비율 상향 조정
 - 계절성과 분기별 대표성을 고려하여 층별 표본 조사구 수를 4의 배수로 조정

<표 7> 표본 배분

(단위 : 천 가구, %)

TIG	지역 시도		조사모집단	가구 수*	표본배분(연간)		표본크기(조정)	
~\¬	시エ	구분	가구	비중	비례	제곱근	연간	분기
		합계	19,518	100.0	1,200	1,200	1,200	300
	전국	동부	15,817	81.0	972	826	872	218
		읍면부	3,701	19.0	228	374	328	82
	서울	동부	3,908	20.0	240	172	168	42
경인	인천/경기	동부	4,784	24.5	294	191	172	43
70 L	간인/경기	읍면부	809	4.1	50	78	52	13
동북	대구	동부	1,791	9.2	110	117	128	32
승독	강원/경북	읍면부	831	4.3	51	79	76	19
호남	광주/제주	동부	1,534	7.9	94	108	124	31
오금	전북/전남	읍면부	716	3.7	44	74	76	19
동남	부산	동부	2,464	12.6	151	137	148	37
승급	울산/경남	읍면부	593	3.0	36	67	48	12
ᄎ ᅯ	대전/세종	동부	1,336	6.8	82	101	132	33
	충북/충남	읍면부	753	3.9	46	76	76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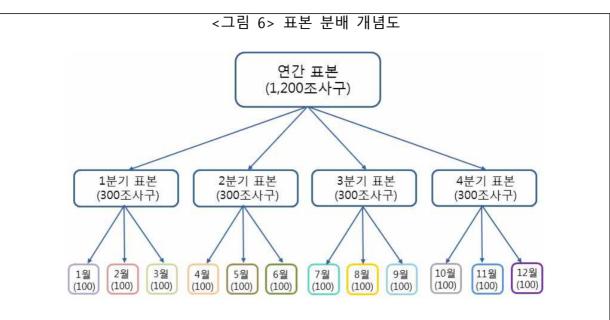
* '15년 인총 일반 조사구(1,2,A) 내 모든 가구

○ 상대표준오차 검토

- 「소비지출」 항목의 연간 상대표준오차(RSE) 기준, 전국 1.5%, 동부 2% 및 읍면부 3% 이내가 되도록 표본규모 재조정

라. 표본 추출

- **표본추출방법** : 층화 2단 집락추출(Two-stage Cluster Sampling)
- 표본 조사구
- 연간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도록 전체 표본 조사구 추출
- 1,200개 조사구를 지역층별로 확률비례계통추출한 후, 분기별 표본 분배



- 분기별 표본 조사구의 주요 특성이 모집단 및 연간 표본과 유사하도록 표본 분할

○ 표본 가구

- 추출된 표본 조사구 내 시작가구 단순임의추출
- 시작가구를 포함한 연속된 15~21가구를 표본 가구로 선정

3-2 표본관리

[소득부문]

1) 충화

- 17개 시도 및 행정구역(동부, 읍면부) 기준, 27개 층으로 충화*
 - * 6차 연동 기준이며, 5차 연동은 16개 시도 및 행정구역 기준 25개 층으로 층화

2) 분류지표

- 경활 광역조사구 추출 정렬기준
 - (4차 연동) 15~29세 비율, 30~49세 비율, 60세 이상 인구 비율, 30세 이상 대졸자 비율, 대졸자 비율, 농림어가 비율, 1인 가구 비율, 자가비율, 전월세 가구 비율, 주택유형, 농림어업 취업자 비율, 광제조업 취업자 비율, 서비스업 취업자 비율 적용
 - ※ 4차 연동표본 설계 보고서 참조

- (5차 연동) 주택유형, 15~29세 비율, 30~49세 비율, 60세 이상 인구 비율, 농림어가 비율, 1인 가구 비율, 농림어업 취업자 비율, 광제조업 취업자 비율, 서비스업 취업자 비율 적용
- 특·광역시 및 제주 : 권역* 변수를 1차 분류지표로 적용
- 8개 도지역 : 관할 사무소 변수를 1차 분류지표로 적용
 - * 지역 내 시군구를 군집분석을 통해 2~4개 지역으로 묶은 단위이며, 추계인구, 인구증가 율, 고용률 등을 고려하여 특성이 유사한 시군구를 동일 권역으로 설정
 - ※ 5차 연동표본 설계 보고서 참조

○ 경활 일반조사구 추출 정렬기준

- (6차 연동) 주택유형, 30~49세 비율, 초졸 및 대졸인구 비율, 65세 이상 인구 비율, 노인가구 비율, 30대 이상 대졸인구 비율, 대졸자 비율, 농림어업 취업자 비율, 광 제조업 취업자 비율, 서비스업 취업자 비율 적용
- 광역시 및 제주 : 권역 변수를 1차 분류지표로 적용
- 서울 및 8개 도지역 : 관할 사무소 변수를 1차 분류지표로 적용
 - ※ 6차 연동표본 설계 보고서 참조

<표 2> 권역 구분 수

								(난위: 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제주
4·5차연동	4	3	2	3	2	2	2	3
6차연동	2	2	2	2	2	2	2	2

○ 소득 일반조사구 추출 정렬기준

- 일상 표본 추출 시 적용한 분류지표와 소득조사 주요 항목과의 연관성이 높으므로, 경활 표본조사구 추출 시 활용된 분류지표는 중복 적용하지 않음
- (4·5차 연동) 주택유형, 점유형태, 1인가구 및 농가여부 등(경활 가구명부 정보)
- (6차 연동) 주택유형, 자가비율, 학령기포함가구 및 농가비율 등(추출틀 정보)

○ 분류지표 선정 및 활용

- 층화 후 조사항목과 연관성이 높은 조사구 특성 변수(분류지표)에 따라 조 사구를 정렬하고 계통추출하면 **내재적 충화효과**를 얻을 수 있음

□ 조사구 확인

○ (현장확인) 담당 조사구 요도와 가구 명부를 수령하여 본조사 수행 전 현장을 확인하

며 조사구 교체가 필요한지, 조사대상 제외 가구가 있는지 등 확인

- 조사구 교체가 필요한 경우 지체없이 신청 (메모보고)

□ 가구설득 (조사전월 1일~말일)

- (가구방문·설득) 조사원은 설득 기간 동안 표본가구를 방문하여 조사에 참여하도록 설득
- 조사구당 15~21가구를 대상으로 10가구 조사(조사구별 표본가구수 확인)
- 불응 가구에 대해서는 팀장이나 경험이 많은 조사원이 동행하여 설득 지원
- (가구명부 작성) 모든 방문 가구에 대해 가구명부 조사 항목을 빠짐없이 기입토록 노력
- 부적격가구인 경우 가구명부 및 시스템에 입력

□ 표본가구 대체 (조사전월 1일~말일)

- (가구명부 요청) 빈집(폐가, 철거 포함), 가구가 아닌 거처 등 비대상 가구가 많아 10가 구 조사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가구명부 및 시스템에 입력하고 시스템에서 추가 가구 명부 요청
- (대체가구 확정) 추가된 가구의 적격가구 여부를 현지 확인한 후 조사 개시
- □ 조사대상가구의 생멸, 전입, 전출 등 표본 내 변동이 발생한 경우 수정·보완 방법
 - 가계동향조사는 한달의 조사기간동안 적격가구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매달 다음 표 본으로 이동하여 새로운 표본을 조사하는 체계임
 - 조사월 1일 기준으로 조사대상 가구의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조사 가능한 가구에 대해 조사 개시
 - 조사월 도중에 가구의 전출이나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 사고처리하고, 결과 집계시 무응답조정승수를 사용한 처리와 사후 가중치 조정*을 통해 사고가구에 대한 대표치 를 보정함

[지출부문]

□ 조사구 확인

- (현장확인) 담당 조사구 요도와 가구 명부를 수령하여 본조사 수행 전 현장을 확인하며 조사구 교체가 필요한지, 조사대상 제외 가구가 있는지 등 확인
- 조사구 교체가 필요한 경우 지체없이 신청 (메모보고)

□ 가구설득 (조사전월 1일~말일)

○ (가구방문·설득) 조사원은 설득 기간 동안 표본가구를 방문하여 조사에 참여하도록 설득

- 조사구당 15~21가구를 대상으로 10가구 조사(조사구별 표본가구수 확인)
- 불응 가구에 대해서는 팀장이나 경험이 많은 조사원이 동행하여 설득 지원
- (가구명부 작성) 모든 방문 가구에 대해 가구명부 조사 항목을 빠짐없이 기입토록 노력
- 부적격가구인 경우 가구명부 및 시스템에 입력

□ 표본가구 대체 (조사전월 1일~말일)

- (가구명부 요청) 빈집(폐가, 철거 포함), 가구가 아닌 거처 등 비대상 가구가 많아 10가 구 조사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가구명부 및 시스템에 입력하고 시스템에서 추가 가구 명부 요청
- (대체가구 확정) 추가된 가구의 적격가구 여부를 현지 확인한 후 조사 개시

□ 조사대상가구의 생멸, 전입, 전출 등 표본 내 변동이 발생한 경우 수정·보완 방법

- 가계동향조사는 한달의 조사기간동안 적격가구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매달 다음 표 본으로 이동하여 새로운 표본을 조사하는 체계임
 - 조사월 1일 기준으로 조사대상 가구의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조사 가능한 가구에 대해 조사 개시
 - 조사월 도중에 가구의 전출이나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 사고처리하고, 결과 집계시 무응답조정승수를 사용한 처리와 사후 가중치 조정을 통해 사고가구에 대한 대표치를 보정함

Ⅳ. 자료수집

1. 조사방법

[소득부문]

- □ **가구실태 조사표**: 조사담당자 「면접조사」
- □ 가계소득조사표: 조사담당자 「면접조사」 방법이 원칙이나, 조사표 작성이 가능한 가구원*의 부재 등으로 면접조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응답자 기입」방법을 병행
 - * 가구주 또는 배우자 등 가구원의 소득현황을 가장 잘 아는 가구원

□ 조사과정

- 1. 조사표 면접조사 및 배부
 - (시기) 매월 말
 - (내용) 금월 조사표 면접조사 및 부재가구 조사표 배부
- 2. 조사표 면접 조사 및 회수
 - (시기) 매월 초
 - (내용) 전월 조사표 면접조사 및 조사표 회수 전월 전·출입 가구 및 가구원 등 / 가구실태 변동내역 처리
- 3. 조사대상 가구 변동 처리
 - (시기) 매월 초
 - (내용) 금월 가계부적합 조사구 확인 및 대체 요청금월 구역조정 등 조사대상 가구 변동처리
 - (표본과) 금월 가계부적합 조사구 확인 및 대체 금월 조사구 대체 ㅂ 및 구역조정 현황 검토
- 3. 조사표 입력 및 내용 검토
 - (시기) 매월 중순
 - (내용) 조사표 입력 및 내용검토
 - 전월 가구부문통합관리시스템(HIMS) 입력
 - 전월 내용검토 후 착오내역에 대한 재확인 (전화 등) 및 보완

- 전월 가구가구원별 수준분석(전월, 전년동월 등)

4. 조사완료

- (본청전산내검, *조사익월 15일까지 수행) 복지통계과 내검 요청 내역 확인 및 처리
- (조사표 정리, *조사익월 15일까지 수행) 완료된 조사표에 대해 최종 정리 및 편철·보관
- ※ (본청종합내검, *조사익월 15일~ 수행) 입력, 마감된 기구실태 사항, 소득 및 비소비지출 내검

업무명	담당	추진일정	업무내용
가구관리 및	지방청(사무소)	전월 경활	- 대상가구 방문(설득) 및 변동사항 파악 - 가구명부 작성 및 보완 - 조사표류 배부(비밀보호용 봉투 이용) * 신규가구는 조사표배부시 안내문을 공지
조사표 배부	조사 담당자	본조사 기간	
대상가구	표본과	금월	- 구역조정 등 표본대상가구 변동처리
변동처리		1일~10일	* 가구표본 관리지침서 준수
기입지도 및 점검	지방청(사무소)	금월	- 수시방문 및 전화 등을 통한 조사표 기입
	조사 담당자	1일~말일	지도
조사표 회수	지방청(사무소) 조사 담당자	익월 1일~5일	- 가계소득조사 조사표 회수 - 가구실태 조사표 변경내역 확인 - 가구원 전출입 변동처리 - 응답완료 가구 필수품 지급 * 조사필수품 지급 관리 규정 준수
자료입력 및	지방청(사무소)	익월	- 가구부문통합관리시스템(HIMS) 입력 - 내용검토 후 착오내역에 대한 재확인 (전화 등) 및 보완 - 가구 가구원별 수준분석(전월, 전년동월등)
내용검토	조사 담당자	6일~18일경	
자료집계 및 결과분석	복지통계과	매월 분기별	- 적격 부적격가구 등 가구현황 및 조사대 상 가구 가구원 변동처리 내검 - 가계소득 및 비소비지출 가구별 내검 - 가구 특성별 자료 집계 및 결과표 작성 - 관련 참고자료 수집·작성
결과공표	복지통계과	분기별	- 가계소득조사 공표

[지출부문]

□ 조사방법 혼합(2종)

- 조사원이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가구주 또는 가구의 경제상황을 가장 잘 아는 가구 원을 대상으로 면접조사
- 맞벌이가구, 1인 가구 증가로 응답자 면접이 용이하지 않고, 응답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전자가계부 조사 병행
- 연간조사표
 - 지출주기가 길고 금액이 큰 69개항목
- 가계부
 - 가구에서 지출하는 매일의 모든항목

□ 조사과정

- 1. 협조공문 발송 (조사전전월 25일)
 - (발송일) 조사전전월 25일
 - (대상) 표본대상가구 및 표본조사구(APT관리사무소)
 - (내용) 협조공문, 인사장, 홍보리플렛
 - (방법) 복지통계과에서 일괄 우편 발송 (조사구당 15~21가구)
 - 대체가구 및 대체조사구 방문시 혹은 별도 필요시에는 조사담당자가 직접 전달
- 2. 조사구 확인 (조사전월 1일~2일)
 - (현장확인) 담당 조사구 요도*와 가구 명부를 수령하여 본조사 수행 전 현장을 확인
 하며 조사구 교체가 필요한지, 조사대상 제외 가구가 있는지 등 확인
 - 조사구 교체가 필요한 경우 지체없이 신청 (메모보고)
 - 추가 가구명부가 필요한 경우 시스템으로 신청
 - * 조사구 내 주택 및 건축물에 거처와 건물번호를 표시한 지도
- 3. 가구설득 (조사전월 1일~말일)
 - (가구방문·설득) 조사원은 설득 기간 동안 표본가구를 방문하여 조사에 참여하도록 설득
 - 조사구당 15~21가구를 대상으로 10가구 조사
 - 불응 가구에 대해서는 팀장이나 경험이 많은 조사원이 동행하여 설득 지원
 - 모든 방문 가구에 대해 가구명부 조사 항목*을 빠짐없이 기입토록 노력 *거처구분, 가구구분, 전화번호, 주소, 가구원수, 가구주 성명, 성별, 나이, 가구방문 일시 및 응답상태
 - 빈집(폐가, 철거 포함) 등 비대상가구가 많아 10가구 조사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가구명부 및 시스템에 입력하고 시스템에서 추가 가구명부 요청

- (가계부 배부) 가계부 기입 표본가구에 가계부(상/하반기)를 배부하고, 익월 1일부터 말일까지 가구의 모든 지출을 누락없이 작성토록 요청
 - 상반기가계부에서 "사전점검목록 I·Ⅱ(8~9페이지)"를 조사하고, 하반기가계부의 "월간 가구 소득"에 대해 사전 설명
 - 이후 가계부 기입지도 및 회수 등을 위한 추가적인 방문이 예정되어 있음을 표본가 구에 충분히 설명
 - 담당자 란을 기입 후 가계부를 배부하여 추후 가구가 문의사항을 묻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
- (전자가계부 작성 가구) 전자가계부 매뉴얼을 배포하고 전자가계부 사용 방법 설명
 - 가계부의 조사원 조사항목인 "사전점검목록 I·Ⅱ(8~9페이지)"를 조사하고, 하반기 가계부의 "월간 가구 소득" 조사에 대해 사전 설명
 - 가구원이 전자가계부로 참여할 경우, 전자가계부 주소 접속 및 사용법, 메뉴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 입력에 애로가 없도록 함
 - 이후 연간조사표 회수 등을 위한 추가적인 방문이 예정되어 있음을 표본가구에 알림

4. 본조사 (조사월 1일 ~ 조사익월 15일)

- (연간조사표 작성, *조사월 10일까지 수행) 조사 당월에 직접 가구를 방문하여 연간 조사표를 작성하면서 가계부 기입 지도 병행
 - 농어가처럼 영업겸용 가구의 경우 사업비용 지출이 해당 가구의 지출로 기록되지 않도록 지도
 - 연간조사표 작성 시 혹은 이후에라도 연간조사표 응답 항목에 대한 기입 대상기간 이 최근 1년(12개월전 ~ 조사 전월)임을 유의하여 설명
- (연간조사표 입력, *조사월 15일까지 수행) 연간조사표 결과 입력
- (상반기가계부 회수·입력, *조사월 말일까지 수행) 가계부 회수시 상반기 필수 기입 항목 등 기본사항을 확인하고, 가구의 특성과 연관된 지출 품목들의 누락여부, 기입 오류, 부적절한 금액 기입 확인 등 상세내검은 하반기 가계부 내검 시 실시
 - 연간조사표 내검 결과 의심되는 사항들은 가구에 확인하여 수정·보완한 후 입력
 - 연간조사표에 응답한 지출과 소득에 대해 상한금액* 이상 기입항목은 영수증 등 증 빙서류를 통해 확인
 - 하반기가계부 기입시 상반기가계부 회수에 따른 중복·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 (하반기가계부 회수·입력·내검, *조사익월 15일까지 수행) 하반기가계부 회수시 "월간 가구 소득"을 면접조사
 - 가구 특성과 연관된 지출 품목의 누락여부, "사전점검목록 I · Ⅱ(8~9페이지)"에 조

사된 품목들의 누락여부를 확인하여 가계부 품질 검토 실시

- 상/하반기가계부 통합 검토, 연간조사표와 연계 검토한 후 확인이 필요한 사항들은 가구 확인 후 수정·보완하여 입력하고 전산내검 사항 완료
- 5. 조사완료 (조사익월 11일 ~ 조사익월 15일)
 - (본청전산내검, *조사익월 15일까지 수행) 복지통계과 내검 요청 내역 확인 및 처리
 - (조사표 정리, *조사익월 15일까지 수행) 완료된 조사표에 대해 최종 정리 및 편철· 보관
 - ※ (본청종합내검, *조사익월 15일~ 수행) 입력, 마감된 연간조사표 가구실태 사항, 전 년 연간소득, 가계부 지출내역에 대해 종합내검 실시

3. 조사 실시

3-1 조사업무 흐름도

[소득부문]

추진일정	담당	업무명	업무내용
매월 상	지방청(사무소) 조사 담당자	·조사표 면접조사 및 회수	- 전월 조사표 면접조사 및 조사표 회수 - 전월 전·출입 가구 및 가구원 등 가구실태 변동내역 처리
		·조사 대상가구 변동처리	- 금월 가계부적합 조사구 확인 및 대체 요청 - 금월 구역조정 등 조사대상가구 변동처리 *가구관리지침서 준수
	표본과	·대상가구 변동처리	- 금월 가계부적합 조사구 대체 - 금월 조사구 대체 및 구역조정 현황 검토
	복지통계과	·적격·부적격 가구 현황 검토	- 금월 조사구 대체 및 구역조정 현황 검토 - 금월 적격·부적격 가구 현황 검토
중	지방청(사무소) 조사 담당자	·조사표 입력 및 내용검토	- 전월 가구부문통합관리시스템(HIMS) 입력 - 전월 내용검토 후 착오내역에 대한 재확인 (전화 등) 및 보완 - 전월 기구·기구원별 수준분석(전월, 전년동월 등)
		·변동된 대상가구 설득	- 금월 조사구 및 구역조정으로 변동된 대상가구 설득(안내장, 리플렛 배부) *가구실태 작성
	복지통계과	·입력자료 기본내검 및 입력마감	- 전월 내검사유 내용검토 - 전월 가구 명부 및 가구원 명부 내검 - 전월 조사표 회수율 검토 등 입력마감
하	지 방청(사무소) 조사 담당자	·조사표 면접조사 및 배부	- 금월 조사표 면접조사 및 부재가구 조사표 배부
	복지통계과	·자료집계 및 결과분석	- 전월·전분기·전년대비 증감 가구별 내검 - 전월 가구 특성별 자료 집계 및 수준분석 - 분기별 결과표 작성 수준분석 - 분기별 참고자료 수집 및 결과표 증감사유 검토·작성
분기별	"	·결과공표	- 가계소득조사 공표

[지출부문]

□ 조사업무 흐름도

조사구 확인	전월 1일	·협조공문 발송(조사 전전월 25일)	·조사구 적격여부 확인 및 대체 ·조사대상가구 확인
설득 및 가계부(상) 배부	전월 1일~말일	·현장 조사 지원 ·조사구 대체 및 가구명부 추가 승인 ·조사대상 관련 질의 응답	·대상가구의 조사 참여 설득 ·가구명부 작성 ·가계부, 비밀보호용 봉투 등 배부 ·전자가계부 사용법 설명
연간조사표 조사	당월 1일~10일		·연간조사표 조사 ·상반기가계부 기입지도
연간조사표 입력, 가계부(하) 배부	당월 11일~15일	·연간조사 진척률 파악	·연간조사표 입력 및 기본 내검
가계부(상) 회수	당월 16일~말일	·상반기가계부 조사 진척률 파악	·상반기가계부 회수입력 ·하반기가계부 기입지도
가계부(하) 회수 및 종합내검	익월 1일~15일	·최종 조사 진척률 파악	·하반기가계부 회수입력 ·모든 조사표에 대한 연계종합내검

3-2 조사준비 및 준비조사

[소득부문]

- □ (준비조사)
 - 대상가구 방문 및 전출입 등 변동사항 파악 *가구관리명부 보완 등 (표본과「가구표본 관리지침서」참조)
 - 가구실태 작성 및 보완(가구원 변동사항 파악)
 - 조사구 대체 및 구역변경 등으로 인한 신규 대상가구 설득 *안내문 및 리플렛 제공



조사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귀 가정이 통계청에서 조사하는 「**가계소득조사」의 표본** 가구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계소득조사는 가구의 소득동향을 파악하여 국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 기초자료로 사용됩니다. 귀 가정에서 제공하여 주신 자료는 통계법 제 33조에 의해 그 비밀이 철저히 보호되며,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통계작성 업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귀 가정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실한 응답을 부탁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2018년 1월

통계



<가계소득조사 리플렛>





□ (조사명부 보완)

- 표본가구 관리명부
 - 준비조사 기간 중 표본가구 관리명부 사항을 보완: 조사대상 가구의 전출/입 및 변동내역
 - 내검 및 입력마감: 매월 18~19일(조사표 입력마감일과 동일)
- 조사구역 조정 요청
 - 가계소득조사 표본 조사구 중 조사개시 6개월이 지나도 회수율 50% 이하인 조사구
 - 적격 6가구 미만인 조사구: 보고기일(매월 20일까지 공문시행)
- 조사구역 조정승인

- 표본과에서 검토 후 조사구역 조정 결과를 매월 25일까지 통보: 가구통합관리시스템 등록 및 공문시행
- 조사 준비 및 개시
 - 조정구역에서 익월부터 조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유대강화 및 조사표 지도 등을 실시 후 익월조사부터 조사시작(조정승인 통보 시 명시)
- 가계 가구 대체 요청
 - 가계소득조사를 2개월 이상 불응할 경우 경활조사 가구 중 유사 가구를 지정하여 대체승인요청: 보고기일(매월 25일 18시까지 가구통합시스템으로 보고)
- 가계가구 대체 승인
 - 표본과에서 검토 후 조사개시월을 명시하여 매월 말일까지 통보

[지출부문]

(조사홍보) 설득기간은 전월 1일~말일까지이며, 설득된 가구의 중도포기 시 익
월 6일까지 오픈된 가구 중 교체할 수 있음
(응답자 사전 통지) 조사전전월에 가구에 조사안내문 등 우편발송
(조사구 확인) 담당 조사구 요도와 가구 명부를 수령하여 본조사 수행 전 현장
을 확인하며 조사구 교체가 필요한지, 조사대상 제외 가구가 있는지 등 확인
(조사명부 보완) 조사구 교체가 필요한 경우 지체없이 신청

3-3 조사항목별 조사 방법

[소득부문]

- □ 일반적 작성방법
- 조사대상가구를 방문하기 전 조사에 필요한 자료가 모두 준비되었는지를 확인
 - 신분증, 가구명부, 가계소득조사표, 필기도구, 비밀보호용 봉투 등
- 의복은 단정하고 부드러운 인상을 주는 것을 입음
- 방문시간은 이른 새벽이나 늦은 오후를 피하고 낮 시간 중 방문하되, 응답자와 낮에 만 날 수 없을 때는 사전에 방문시간을 예약하고 약속된 시간에 방문
- 방문한 가구가 가구명부에 기입된 내용과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변동이 있을 때는 가구명부 내용을 정정
- 해당 가구의 소득 현황을 가장 잘 아는 가구원(가구주 및 배우자)에게 면접조사
 - 단, 조사표 작성이 가능한 가구원의 부재 등으로 면접조사가 어려울 경우에는 조사 표를 배부
- 조사표 배부시 대상기간, 조사대상 가구원, 금액단위, 소득 및 비소비지출 개념 등을 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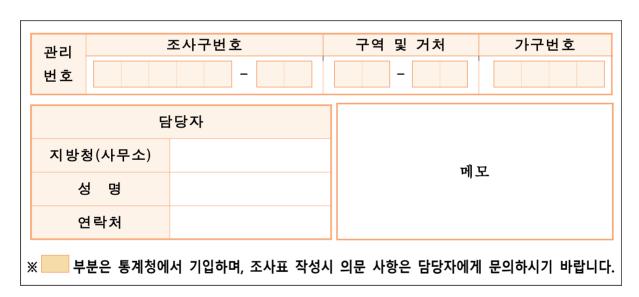
답자가 알기 쉽게 설명

- 조사표를 배부하기 전에 조사담당자가 조사표에 미리 기입해야 할 사항을 확인
 - 조사표 표지 : 조사년월, 조사구번호, 구역 및 거처번호, 가구번호 조사담당 직원의 소속, 성명과 전화번호
- 조사표 작성이 가능한 가구원의 부재 등으로 배부한 조사표는 지정된 조사기간이 끝나면 조사표를 조속히 회수
 - 조사표 회수가 늦어지면 조사표 분실의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누락항목에 대한 보충조사가 어렵게 되기 때문
- 조사표를 회수할 때 조사대상가구에서 조사표에 기입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잘못된 것은 즉시 응답자에게 확인하여 보완

□ 조사항목별 작성요령

. 조사항목별 작성요령(조사표)

ㅇ 표지



- 조사구번호: 표본과에서 지정한 해당 조사구의 번호를 기입
- ㅇ 구역 및 거처번호: 해당 조사구의 가구명부를 보고 지정된 구역 및 거처번호를 기입
- 가구번호: 해당 조사구의 가구명부를 보고 조사대상가구의 고유번호를 기입
- 담당자: 지방청 또는 사무소명과 조사담당자의 성명, 전화번호를 기입

○ 소득 및 비소비지출 작성 유의사항

○ 천원단위로 작성(천원 미만인 경우 반올림하여 작성)

- ㅇ 가구소득 정의를 참고하여 누락되는 소득이 없도록 작성
- <u>모든 소득은 세금 및 각종 부담금 공제전 금액</u>으로 작성해야 하며, 공제금액^{*}은 비 소비지출에 항목별로 기입
- * 공제되는 금액이 누락되거나 다른 가구원 지출로 작성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 회사로부터 현물을 받았거나, 자가생산 상품을 소비하였거나, 임대료·이자 등의 명목 으로 현금 대신 현물을 받은 경우에도 시장가격으로 환산 후 가구소득으로 합산하 여 기입
 - ① 근무처에서 상품을 받거나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 근로소득 예시) 회사에서 제공하는 식권, 통근버스 등
 - ② 자가생산 상품을 소비한 경우 ⇒ 사업소득예시) 직접 운영하는 학원에서 자녀 수강, 텃밭 채소 소비 등
 - ③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나 임대료 대신 상품을 받은 경우 ⇒ 재산소득 예시) 토지를 임대해주고 받은 쌀 등

[지출부문]

□ 일반적 작성방법

- 1일부터 15일까지는 상반기 가계부에, 16일부터 말일까지는 하반기 가계부에 기입
- 같이 살고 있는 모든 가구원(연간조사표 가구원 기준 : 조사월 1일 기준)의 실 제 지출을 원단위로 기입
- 지출품목이 많아 한 페이지를 넘을 때는 가계부 뒤편의 여분지를 사용하고, 지 출이 전혀 없는 날에는 "없음"이라고 기입
- 가구주가 밖에 나가서 쓴 돈이나 가구원에게 준 용돈이 있으면, 어디에 썼는가 를 품목별로 파악하여 기입
- 다음과 같은 지출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세분하여 구체적인 품목명을 기입
 - 선물용 물건구입은 용도를 구분하여 기입
 - 예) 된장(×) → 딸에게 선물한 된장(○)
 - 치킨이나 피자 등은 배달음식과 마트구입을 구분하여 기입
 - 예) 치킨(\times) \rightarrow 치킨배달(\bigcirc), 피자(\times) \rightarrow 마트에서 피자 구입(\bigcirc)
 - 의복류는 성별 또는 연령별로 구분하여 기입
 - 예) 교복(×) → 중학생아들 교복(○)
- 영업상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한 품목이나 가내 부업을 하기 위하여 지출한 원재료비, 비품비 등은 기입하지 마시고,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내역만 기입

- 영수증이 있는 경우 해당 일자의 "영수증 붙이는 곳"에 붙이시고, 영수증이 없는 지출 내역만 가계부에 기록
- ㅇ 자동이체 되고 있는 지출도 빠짐없이 해당 일자에 기입
- 관리비, 전기요금, 생명보험 등 자동이체 지출항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기입
- 급여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는 조세(근로소득세, 건강보험료 등)가 누락되지 않도 록 세분하여 기입
- 정수기, 안마기 등 렌털비용도 기입
- 현물(상품 및 서비스)로 받아 가구에서 소비한 경우에는 품목명과 지급주체*를 상세하게 기입하며, 지출금액은 시장가격(소비자가격)으로 평가하여 기입하고 현물란에 ✓표시

<지급주체 기입 예시>

- ① 근무처에서 근로의 대가로 상품을 받거나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 ② 자가 생산 또는 판매하는 상품 및 서비스를 가구용으로 소비한 경우
- ③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나 임대료 대신 상품을 받은 경우
- ④ 정부, 비영리단체로부터 사회적 현물(상품 및 서비스)을 받은 경우
- ※ 다른 가구로부터 대가없이 현물(선물)을 받거나 상품·서비스 요금을 다른 가구가 대신 납부한 경우는 조사 제외
- 다른 가구의 소비를 위한 선물 또는 다른 가구에서 소비하고 있는 상품・서비
 스 요금을 대신 납부한 경우 선물란에 ✔표시
- 가구의 월중 양곡소비량과 매일의 외식·결식·접대 횟수를 기입해주십시오.

□ 항목별 작성방법

1 소비지출

- 소비지출은 가구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는 데 지출하는 비용으로 식료품·비주류 음료부터 기타 상품 및 서비스까지 12개의 하위분류로 구성됨
- 01. 식료품 · 비주류음료(Food and non-alcoholic beverages)

- 구입한 가구에서 조리과정을 거치거나 조리과정 없이 먹을 수 있는 음식물에 대한 지출
 - 제외되는 상품 및 서비스
 - · 직접 섭취될 수 있는 음식물로 호텔, 레스토랑, 카페, 바, 술집, 노상음식점 등 음식점에서 만들어 서비스되는 음식(배달, 테이크아웃 포함) ⇒ 외식비 (7515)
 - · 동물용 먹이 ⇒ 애완동물관련용품(5270)
 - · 식재료 가공에 포함되는 비용 ⇒ 식품관련 서비스(3910)
 - 식료품·비주류음료는 가공여부, 가공정도 및 혼합정도(다른 품목과 결합여부)에 따라 달리 분류
 - · 벼와 정미한 멥쌀 ⇒ 멥쌀(1010)
 - · 단순 가공된 쌀가루 ⇒ 기타곡물가공품(1080)
 - · 다양한 품목이 혼합·조리되어 바로 섭취가 가능하도록 조리된 김밥, 초밥 등 ⇒ 즉석·동결식품(1690)
 - · 여러 상품이 혼합되어 복합적으로 가공되고 주성분이 하나의 중분류에 귀속되지 않은 제품 ⇒ 기타미분류식품(1695)으로 분류

※ 가공정도 및 혼합정도의 의미

- 찜, 구움, 삶음, 절임, 말림, 볶음 등의 단순과정을 거쳐 원래의 상태가 다소 변형된 제품
- · 다른 원료를 섞지 않거나, 소량만 포함하여 상품의 대부분 성분이 가공전 상품으로 구성된 제품
 - 예) 곡물가공품, 채소가공품, 육류가공품, 과일가공품, 수산동물가공품, 알가공품, 해조가공품 등
 - 조리과정이 유사하여 동일한 명칭이더라도 쓰임새가 전혀 다른 경우 별도로 구분
 - 반찬으로 사용되는 젓갈 ⇒ 반찬류(1685)
 - \cdot 조미용과 반찬으로 모두 사용될 수 있는 젓갈 \Rightarrow 젓갈(1192)
 - 쥬스 및 기타음료의 구분
 - 과일 및 야채쥬스 : 과일 및 야채를 일부 함유한 비주류음료(1720)
 - 생수 : 암반층 안의 지하수 또는 용천수 등 수질의 안정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물리적 처리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샘물. 판매수도물 포함(1725)

- · 기타음료수 : 쥬스 및 생수 이외의 음료수. 피로회복, 숙취예방 및 해소 등을 위한 기능성 음료수 및 캔음료, 병음료, 나무수액, 분말주스, 음료베이스, 혼합음료 등도 포함(1740)
- 02. 주류·담배(Alcoholic beverages and tobacco)
- 03. 의류·신발(Clothing and footwear)
- 의류·신발을 구입 또는 제작하기 위한 재료인 상품구입에 대한 지출과 이와 관련 상품을 제작, 유지, 수선 등을 위한 서비스에 대한 지출
- 내의, 교복, 운동복 이외의 의복(외의)은 남성, 여성, 아동 구분에 따라 남성용 외의(2012), 여성용외의(2014), 아동용외의(2060)로 각각 분류
- 아동은 상품의 구분을 위한 편의상 분류로 만12세 미만의 아동이 성인용 신 발이나 의복을 구입한 경우 성인의 상품소비에 분류
 - 스키화, (인라인, 롤러 등)스케이트, 골프화, 등산화 등 징이나 바퀴 등이 부 착되어 용도가 제한된 특수신발 ⇒ 운동용품(5240)
 - 모든 운동복은 운동복(2055)에 포함되나 학교지정 운동복 ⇒ 교복(2080)
- 04. 주거·수도·광열(Housing, water, electricity, gas and fuels)
 - 주거하는 주택과 세놓는 주택에 대한 수선을 구분하지 않음
 - · 벽지, 장판 등 수선재료를 구입하면 수선재료(2725)로 분류
 - · 주택 수리 등의 서비스에 대한 지출 또는 수리서비스와 관련재료 비용을 포함하여 수리업자와 계약한 경우는 설비·수리서비스(2770)
 - 설비·수리서비스와 부동산 구입의 구분
 - · 설비·수리서비스 : 주택, 정원, 담장, 상하수도, 난방 등의 유지 및 수선을 위한 교체, 신규, 수리서비스에 지불하는 비용(2770)
 - · 부동산 구입 : 주거면적을 확장하거나, 벽, 보, 기둥 등을 변경하는 등 주거 형태를 현저하게 바꾸는 대수선을 하는 경우(9560)

- 동일한 상품을 구입하더라도 목적에 따라 다르게 분류
- · 난방용 경우 ⇒ 경유 및 기타연료비(2995 주거 및 수도·광열)
- · 자동차 연료 ⇒ 차량용 경유(4720 교통)
- 05. 가정용품·가사서비스(Furnishings, household equipment and routine maintenance of the house)
- 일반가구 및 가사(취사, 냉·난방, 세탁, 청소, 재봉 등)에 필요한 상품 또는 관련 서비스에 대한 지출
 - 범용으로 이용하는 상품은 별도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용도가 특정된 상품은 주된 품목에 포함
 - · 범용건전지 ⇒ 건전지(3730)
 - · 이동전화기용 건전지 구입 ⇒ 이동전화기기 등(4930)

06. 보건(Health)

- 모발용, 구강용, 피부용 양약과 화장품
- · 탈모치료제, 무좀크림 ⇒ 판매양약(4020)
- 염색약, 파마약 ⇒ 기타이미용용품(8090)
- 질병예방 및 단순위생용 소모품과 기타이미용용품
- · 기저귀(생리대 포함), 영아용품 등 주로 질병예방용 \Rightarrow 보건의료 소모품 (4060)
- · 면봉, 구강세정제 등 단순위생용 ⇒ 기타이미용용품(8090)
- 교정용 안경과 장식용 썬글라스 등 기타장신구
- · 시력교정용, 보호용 안경 ⇒ 안경 및 콘택트(4070)
- · 썬글라스 ⇒ 기타 개인용품(8190)
- · 운동용 특수안경, 고글, 수영안경 ⇒ 운동용품(5240)
- · 귀금속으로 장식되어 안경테의 가치가 높은 안경 ⇒ 귀금속 구입(9570)

07. 교통(Transport)

- 자동차 구입
- · 신차구입(4510)과 중고차구입(4599)을 구분
- PMP, DMB 및 네비게이터가 결합된 네비게이터 상품의 경우 주된 기능인 차량부품 및 관련용품(4705)에 분류
- 버스를 시내버스와 시외버스로 구분
- · 시내버스를 이용하여 시·도 경계를 넘어가는 경우 \Rightarrow 시내버스(4830)로 분류
- 버스, 광역버스 및 지하철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교통카드로 이용한 경우
 ⇒ 교통카드 이용(4870)으로 분류
- 교통카드 이용
- ·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등을 복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선지불하거나, 이용 후 일시에 청구되어 각 교통편으로 분리되지 않은 금액

08. 통신(Communication)

- 이동전화기기 구입금액
- · 일시불 구매시 구입당시에 단말기 실제구입 총금액*을 이동전화기기 등 (4930)으로 분류
- · 할부 구매시 구입당시에 단말기 실제구입 총금액을 이동전화기기 등(4930)으로 분류하고, 매월 납부하는 단말기 할부금은 핸드폰 할부금(9620)으로 분류 * 실제구입 총금액: 단말기 (할부)지원금을 제외한 단말기 실제구입 총금액
- 핸드폰 위약금은 이동전화기기 등(가구원별 4930)으로 분류
- 아이패드, 갤럭시탭 등에 핸드폰 및 태블릿pc 기능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 기기는 정보처리기기(5040)로 분류하고, 이용요금은 인터넷이용료(4970)로 분류
- 인터넷 이용료는 인터넷(케이블, 전용선, 광, 무선 등)서비스 등 망 서비스에 대한 이용요금
- · PC방에서 사용한 컴퓨터이용요금 ⇒ PC방 이용(5315)
- · 이동전화 인터넷서비스 이용 ⇒ 이동전화요금(4960)

09. 오락 · 문화(Recreation and culture)

※ 오락·문화와 교육의 구분

- ▶ 오락·문화 부분의 문화강습(5350)
- 여가시간 활용, 취미 등을 위해 학원 및 학교이외에서 받는 개인(그룹)레슨
- 자치센터, 백화점 등이 운영하는 문화센터 참가료 포함
- ▶ 교육 부분의 운동 및 교양교육(6630)
- · 오락문화의 문화강습에 비해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이며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학원중** 심의 교육
 - 학원 등의 교재비
 - · 중고생의 학원, 방송교육 등의 교재비 ⇒ 학원비에 포함되어 분리가 불가 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참고서 및 학습교재(5407)에 분류
 - 기타문구류의 구분
 - · 실습을 위한 다양한 학습준비물 ⇒ 각각 해당 항목에 분류
 - · 일괄 구입하여 구분하기 곤란한 학습준비물 ⇒ 기타문구류(5455)에 분류

10. 교육(Education)

- 교육부문에서 「학생」은 유치원, 초·중·고의 재학생 및 상급학교 진학을 준비하는 재수생을 포함한 개념
 - 기타 상품 · 서비스의 보육료와 구분
 - 수행기관을 기준으로 어린이집(보육, 8230)과 유치원(교육, 6010)을 구분
 - · 단, 어린이집에서 수행하더라도 음악, 외국어 등 별도로 구분된 교육을 위한 활동에 대한 지출 ⇒ 기타학원교육비(6455)
 - 교육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학생이 아닌 자가 학원수강을 한 경우 성인 학원교육으로 분류
 - 학생이 학원에서 수강한 경우는 학원 및 보습교육(6105-6505)에 분류
 - 학생이 학교에서 받은 방과후 교육은 학교보충교육비(6710)에 분류
 - 성인이 학원에서 수강한 경우는 성인학원교육(6610-6630)에 분류
 - 단, 자동차 운전교습비는 지출주체가 학생, 성인 구분없이 교통의 운전교습

비(4755)로 분류

11. 음식·숙박(Restaurants and hotels)

- 별도의 가공을 거치지 않고 즉시 섭취할 수 있는 상태의 음식과 식사공간 등 에 대해 지불하는 식사비용과 숙박시설제공 등의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
 - 일반식당, 이동식음식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식사를 제공(테이크아웃 포함) 받는데 지출하는 비용 또는 배달된 음식에 대해 지출하는 비용 ⇒ 외식비 (7515)
 - 숙박은 전문숙박시설인 호텔, 여관, 콘도(7710)와 민박, 펜션 등 기타숙박시설(7720), 고시원 등 기타주거시설(7730)로 구분
 - 숙박과 식사가 모두 제공되어 분리되지 않는 경우 ⇒ 주된 비용인 숙박비에 분류

12. 기타 상품·서비스(Miscellaneous goods and services)

- 보험료는 보험가입의 주목적이 보장성보험이면 종신보험(8310) 또는 건강관련보험(8350), 목돈마련이나 노후자금 대비이면 저축성보험(8330), 손실보상을 위한 보험 중 화재손실을 위한 것은 화재보험(8320), 운송 및 기타 손실보상을 위한 것은 운송관련보험·기타보험(8340)으로 분류
- 자산변동으로 인한 지출의 귀금속 구입과 소비지출의 장신구
- 귀금속 구입(9570) : 세월이 지나도 가치가 하락하지 않는 경우
- · 장신구(8130) : 금속이나 보석의 가치보다는 세공비용 등에 의해 그 가격이 결정되는 상품으로 세월이 지나면서 가치가 하락하는 경우
- 상품인 혼례 및 장제례용품(8160)과 서비스인 혼례 및 장제례비(8710)를 별도 항목으로 분리
- 하나의 항목으로 포함되어 조사될 수 있는 항목은 해당항목에 구분
- · 드레스 및 상복 등 대여료 ⇒ 기타의복관련서비스(2240)

- · 돌, 회갑 등을 위한 각종 실내장식비용 ⇒ 기타실내장식품(3120)
- 결혼(피로연), 장례, 폐백, 제상, 돌상 등을 위해 지출한 음식비
 ⇒ 혼례 및 장제례비(8710)
- · 관, 비석, 망주, 납골단지 등 구입 ⇒ 혼례 및 장제례용품(8160)
- · 묘지관리비용, 이장비용, 벌초비용, 족보제작, 납골당비용 등을 위해 종중 등에 공동부담금 납부 ⇒ 단체회비(9430)
- · 묘지구입 ⇒ 부동산 구입(9560) · 예단비 ⇒ 자산 이전(9990)

2 비소비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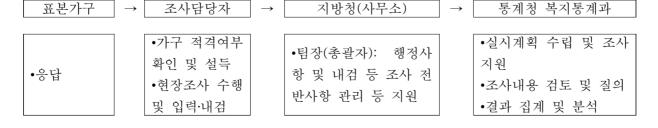
- 소비지출과 달리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지 않고, 대가와 직접관련 없이 이전하는 지출로써 의무적 지출인지 또는 자발적인 지출인지 구분하지 않음 ※ 비소비지출과 자산변동으로 인한 지출의 구분
 - · 비소비지출 : 조세, 공적연금, 사회보험 등 공적 비소비지출 및 가구간 이전, 비영리단체로의 이전 등의 사적비소비지출
 - · 자산변동으로 인한 지출 : 다른 제도단위 등으로의 이전이 아닌 가구의 자산증가나 부채를 감소시키는 지출로써 현금의 지출을 수반한 거래를 인식 (예) 저축 및 적금 등의 불입

[소득부문]

- □ 현장조사 관리체계
 - 조사담당자 → 사무소 총괄자 → 지방청 총괄자 → 본청 가계조사담당
 - 조사관리자 : 해당사항 없음

□ 현장조사 관리체계 흐름도

○ 통계청(복지통계과) ↔ 지방청·사무소 ↔ 조사담당자 ↔ 가구



[지출부문]

□ 현장조사 관리체계

- 조사담당자 → 사무소 총괄자 → 지방청 총괄자 → 본청 가계조사담당
- 조사관리자 : 해당사항 없음

4. 응답자 및 무응답 대처

4-1 응답자

[소득부문]

□ 면접조사 요령

- 현장조사 운영지침 제5조(면접조사 시 유의사항) 준수
 - 면접을 위한 사전준비 철저
 - 처음 조사 시에 협조공문 제시
 - 가능한 응답자가 희망하는 시간에 조사
 - 불필요한 질문이나 행동 금지
 - 기타 응답자가 부담을 느낄 수 있는 행동 금지
- 현장조사 운영지침 제4조(조사방법) 준수
 - 현장조사 직원은 면접조사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
 - 면접조사를 목적으로 조사대상처를 방문하여 조사 및 관리해야 함
 - ☞ 면접조사 조사대상처 방문횟수는 월 2회 이상

□ 조사대상 가구의 소득현황을 잘 아는 가구원을 응답자로 선정

- 가구주, 가구주의 배우자 등
 - 단, 조사표 작성이 가능한 가구원의 부재 등으로 면접조사가 어려울 경우에는 조 사표를 배부

[지출부문]

□ 가구의 경제적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가구원*이 응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가구원이 부재시 다른 가구원도 응답하는 것이 가능함

* 가구주란, 귀 댁에 거주하면서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며, **사실상 생계** 유지를 위한 비용(예. 의식주 지출)을 주로 조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함

4-2 기억응답

[소득부문]

□ 기억응답과 관련된 검토결과 없음

[지출부문]

- □ 연간조사표 조사방법
 - 조사월 기준 최근 1년의(t-12월 ~ t-1월) 지출품목(69개 항목) 조사
 - 필요한 경우 영수증을 첨부하여 지출 확인

4-3 무응답 대처

- □ 조사불응 및 장기부재 등에 대한 대응방법
 - 현장조사 운영지침 제17조(조사불응·불능에 대처)에 따라 불응대상처 관리
 - 가구원 불응(단, 외국인 가구원이 불응하는 경우에는 제외) 및 문항 불응은 인정 하지 않음
 - 응답가구 부재로 인해 해당 월에 조사가 어려울 경우에도 전화조사 등을 이용하 여 최대한 조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
 - 3개월 이상 부재이거나 3개월 이상 부재가 예상될 경우 장기부재로 간주하여 전 출처리
 - 불응의 유형파악: 바쁜 업무로 인하여 지금 당장 조사에 응할 수 없거나, 응답자의 신상문제로 인하여 응답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조사기관 및 국가기관에 대한 불신 등이 불응하는 가장 대표적인이유임
 - 불응에 대한 대응방법: 거절을 당하더라도 단번에 물러나지 말고 계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설득시간을 가져야 하며, 거절하는 요점을 파악하여 응답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득

[소득부문]

- □ 항목 무응답 표본대체 요건
 - 가계동향조사에서는 가구 단위 조사에서 응답하지 않은 항목을 지출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

□ 가구단위 무응답 표본대체 요건

○ 해당없음: 현장조사에서 가구가 부적격, 부재, 불능 시 표본 대체가 가능하며 불응 (무응답)은 대체 불가임

[지출부문]

□ 항목 무응답 표본대체 요건

○ 해당없음: 가계동향조사에서는 가구 단위 조사에서 응답하지 않은 항목을 지출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

□ 가구단위 무응답 표본대체 요건

○ 해당없음: 현장조사에서 가구가 부적격, 부재, 불능 시 표본 대체가 가능하며 불응 (무응답)은 대체 불가임

Ⅴ. 행정자료 활용(행정자료 활용통계)

1. 행정자료 활용 목적 및 내용

[소득부문]

- □ 활용 목적
- 조사자료 정확성 검증 및 대체용
- □ 활용 내용
 - 분기별로 공표되는 가계소득조사의 특성상 행정자료 활용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 다만, 일부 월단위로 제공되는 행정자료*의 경우 검증 및 보완자료로 유용하게 할용될 수 있을 것임.
 - 기초연금의 월별 기초연금 수령액을 입수해서 공적연금(기초연금) 검증 및 보완

[지출부문]

- □ 활용 목적
 - 조사자료 정확성 검증 및 대체용

□ 활용 내용

- 기초연금의 월별 기초연금 수령액을 입수해서 공적연금(기초연금) 검증 및 보완
- 이동전화요금의 이동전화가입비, 유심비, 단말기구입비 등을 입수해서 통신장비, 통신서비스, 문화서비스 지출금액 검증 및 보완
- 2017년 가계동향조사(지출) 결과에 통신비 항목을 보완하여 발표

2. 활용 행정자료의 특성 및 입수체계

[소득부문]

□ 행정자료 원래 수집 목적에 대한 기술

- (기초연금) 기초연금 제도는 현 세대 노인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14년 7월 도입됨.
 - 제도 도입 당시 기준연금액을 20만 원으로 설정한 후, **매년 4월 전년도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
 - * '14.7월 20만원 → '15.4월 20만2600원 → '16.4월 20만4010원 → '17.4월 20만6050원

□ 기초연금을 입수하여 활용

입수기관	자료명	최초입수	입수 항목	활용구분	활용 내역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기초연금 ¹⁾ (분기단위)	2015년	월별 기초연금 수령액	조사자료 검증 및 보완	공적연금(기초연금) 검증 및 보완

* 기초연금 자료는 주민등록 기반을 통해 입수되는 행정 자료로, 실제 가계동향조사 자료와 는 불일치 할 수 있어. 공적연금 항목에 대한 검증 및 보완 자료로 활용됨

[지출부문]

□ 수집 목적

○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가계지출조사 자료 정확성 검증 및 대체용으로 활용

□ 이용 제약

- (시간적 한계) 가계동향조사는 분기 또는 연간의 동향통계 성격을 가지나, 행정자료 의 대부분은 수집 및 이용 가능기간이 연간 주기 통계로 생산되므로 가계동향조사 통계 활용을 위한 적시성이 떨어짐
- (시계열 측면) 기존 조사자료와 행정자료로 보완한 자료는 시계열 단층이 발생하여 추이 설명이 곤라
- (정합성 측면) 소득과 비소비지출만 행정자료로 보완할 시, 소비지출 측면은 입수자 료 부족으로 행정자료 보완이 어려운 사정으로 소득, 비소비지출과 소비지출액과의 정합성 문제 발생

□ 입수 방법 및 경로

	기초연금	통신비
입수 주기	분기 1회	분기 2회
입수 경로	보건복지부에 입수 명부 송부/회신	이동통신 3사 직접 방문
매칭 자료	이름, 생년월일, 성별, 행정기관코드 (행정동)	이름, 생년월일, 성별, 시군구코드
매칭율	70%대 초반	72.6%('17년 기준)
입수자료 이용	조사자료 검증 및 대체	조사자료 검증 및 대체
급구/A표 이용	(조사표에서)	(나라통계시스템에서)

□ 기초연금, 이동전화요금, 전기요금을 입수하여 활용

입수기관	자료명	최초 입수	입수 항목	활용구분	활용 내역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기초연금 ¹⁾ (분기단위)	2015년	월별 기초연금 수령액	조사자료 대체	공적연금(기초연금) 검증 및 보완
이동통신사 (SK, KT, LG)	이동전화요금 ¹⁾	2014년	이동전화기입비, 유심비, 단말 가구입비, 통신서비스 이용료, 단말기할부금, 컨텐츠구입비	조사자료 대체	통신장비(이동전화기기), 통 신서비스(이동전화요금), 문화 서비스(컨텐츠) 지출금액 검 증 및 보완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자료 ²⁾	2015년	월별 가구별 전기요금자료	조사자료 대체	전기료 검증 및 보완

- 1) 2017년부터는 가계지출조사 명부 추가, 지방청 재확인을 통한 자료 대체
- 2) 2017년부터 중지(순환조사 체계로 요금고지 고객번호 수집상 애로 및 고객번호단위와 가계지출 단위 불일치 경우가 많음)

□ 법적 근거

ㅇ 통계법 (제24조 행정자료의 제공)

제24조 행정자료의 제공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에는 국가기밀, 개인과 기업의 중대한 비밀의 침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Ⅵ. 자료처리

4. 무응답

4-1 주요 항목무응답 실태

[소득부문] [지출부문]

□ 항목무응답을 인정하지 않음

4-2 항목무응답 대체

[소득부문] [지출부문]

□ 항목무응답을 인정하지 않음

4-3 단위무응답 실태

[소득부문]

○ 가계동향조사(소득) 응답률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전국	76.5	75.6	75.4	72.5	76.6

- 주) 1. 2018년은 7월까지 자료임
 - 2. 응답률(%)=(조사완료가구수)/(적격가구수)×100

□ 무응답 보정

- (단위무응답 보정) 응답률 83.5% 이하& 2개월이상 불응이면 가구대체 실시
 - 응답률 6개월이상 50% 미만이면 구역조정 및 조사구 대체

□ 무응답추정 방법

- a) 지역·가구원수·종사상지위·아파트여부의 50개 층을 구분하여 표본조사구 연동시 파악된 정보로 <u>무응답 보정</u>, b) 지역·기구원수·아파트여부의 200개 층으로 분류하여 가계추계 자료로 <u>사후</u> 보정하여 가중치를 구함
- 추가로, 가계 표본 조사구별의 취업자 가구 불응 경향을 경활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보정*
 * a)무응답 보정→a')취업자 가구 불응 경향 보정→b) 사후 보정 순
- 응답여부에 따른 가구 특성에 차이가 있는 경우, 무응답 보정을 통하여 무응답에 의한 편향 축소 가능

※단위무응답은 표본 가구가 무응답 인 것을 말하며, 항목 무응답은 일부 항목에서 missing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함.

[지출부문]

○ 가계동향조사(지출) 응답률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전국	=	=	=	72.8

주) 1. 응답률(%)=(조사완료가구수)/(적격가구수)×100

- (무응답 보정) 응답여부에 따른 가구 특성에 차이가 있는 경우, 무응답 보정 을 통하여 무응답에 의한 편향 축소 가능
- **(가구정보)** 가계지출조사 표본은 인총 20%표본을 표본추출틀로 사용함에 따라, 추출틀 내 가구 정보 연계*
 - * 거처 기준으로 연계하며, 시차에 따른 변화는 고려하지 않음
- **(응답특성)** 접촉가구 중 적격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명부 및 추출틀 정보를 이용 한 차이 분석 진행
 - 응답가구와 무응답가구 특성 분포 확인 결과, 가구원수, 평균연령, 공시지가, 자가 여부, 미취학아동 포함 여부 등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
 - ※ 인총조사로 가구특성 정보를 파악한 모집단을 구축, 표본추출틀을 작성해서 표 본을 추출함
 - * 소득과 소비의 모집단 참값은 알 수 없기에 차이 분석을 진행할 수 없음
 - 1인가구는 30~40대, 65세이상 1인가구로 세분
 - 부재, 불응, 불능, 기타 등 무응답 종류별로 가구특성 차이를 검정한 결과, 응답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가구특성에서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시현
- 무응답은 부재, 불응, 불능, 기타로 구분되나, 불능 및 기타 무응답 가구 비중이 전체 접촉 가구 중 16.8%로 낮아 무응답 보정방법 탐색에서 제외*
 - * 3·4분기 자료를 포함한 최종 추정방법 산출 시기에 해당 부분 재검토 예정

4-4 오차 검증

[소득부문]

□ 무응답층별 가중값 보정

무응답 보정계수
$$w_{g,\,hij}^{\,r} = rac{n_{g,R} + \, n_{g,N\!R}}{n_{g,R}}$$

 \cdot $w_{q,\,hij}^{\,r}$: g번째 무응답층 내 h층 i조사구 j가구의 무응답 보정계수

· g : 무응답층 (g = 1, ..., 50)

 \cdot $n_{q,\,R}$: g번째 무응답층의 응답 가구수

 \cdot $n_{q,\,NR}$: g번째 무응답층의 무응답 가구수

○ 무응답층 구성 방법

- 의사결정나무 분석결과(CHAID 알고리즘)를 이용하여 무응답층 구성

- 설계층, 가구 구분(가구주 직업), 가구원수, 거처유형으로 구분하되,

- 무응답층별 매월 50~250가구, 무응답 보정계수 2미만, 상대표준오차 1내외가 되도록 셀을 병합하여 최종 50개 무응답층 구성('16년 가계동향조사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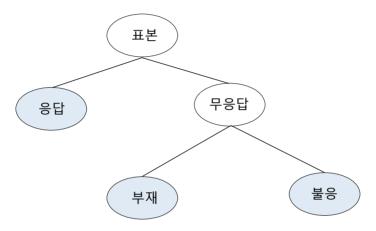
<표> 무응답층(50개)

층	지역	가구구분	가구원수	거처유형	충	지역	가구구분	가구원수	거처유형	
1			3인 이하		26	대전/울산/	자영자	4인 이상		
2		사무직	4인 이상		27	경기 동부	무직	전체		
3		101171	2인 이하		28			2인 이하		
4	서울	생산직	3인 이상		29		사무직	3인		
5		TICHTI	3인 이하		30			4인 이상		
6		자영자	4인 이상		31			2인 이하	아파트	
7		무직	전체		32			2인 이야	아파트외	
8			2인 이하		33		생산직	3인		
9		사무직	3인		34	도지역 동부		4인 이상	아파트	
10			4인 이상		35	(경기제외)		40 96	아파트외	
11				2인 이하	아파트	36			2인 이하	
12		생산직	20 99	아파트외	37		자영자	3인		
13	부산/대구/	017	3인 이상	아파트	38			4인 이상		
14	인천/광주			아파트외	39			1인		
15			2인 이하		40		무직	2인		
16		자영자	3인		41			3인 이상		
17			4인 이상		42		사무직	3인 이하		
18		무직	전체	아파트	43		<u> </u>	4인 이상		
19		Τ¬	_ "	아파트외	44			2인 이하		
20		사무직	3인 이하		45		생산직	3인		
21		71 - 7	4인 이상		46	도지역 군부		4인 이상		
22	대전/울산/		2인 이하		47		자영자	2인 이하		
23	경기 동부	생산직	3인 이상	아파트	48		시아시	3인 이상		
24			2 L 4 Q	아파트외	49		무직	1인		
25		자영자	3인 이하		50			2인 이상		

[지출부문]

- (무응답가중값) 응답 여부 및 무응답 종류(부재, 불응)에 따른 가구특성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최종 응답 결과를 응답, 부재 및 불응으로 구분*한 후 무응답가중값 작성
 - * Fannie Cobben(2009), 'New Developments in Nonresponse Adjustment Methods', Statistics Netherlands.
 - · 설계층별 설계가중치에 무응답승수을 곱하여 무응답가중값을 작성

<그림 1> 가계지출조사 무응답 보정을 위한 표본 조사결과(응답 형태)



-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을 이용하여 가구 특성 별 응답확률의 역수로 무응답 보정계수 산출
 - · 종속변수 : 응답 형태(응답, 부재, 불응)
 - · 독립변수 : 지역, 가구원수, 가구원 평균연령, 공시지가, 자가여부, 미취학아동 포함여부, 3·40대, 65세이상 1인가구 여부

무응답가중값
$$w_{hij}^r = w_{hij}^b imes pr_j^{-1}$$

 $:w_{hii}^{\;b}:h$ 층 i조사구 j가구의 설계가중값

· pr : 응답성향점수(응답확률)

· $h=1,2,\cdots,11$: 설계층(지역), $i=1,2,\cdots,n_h$: 조사구, $j=1,2,\cdots,15(21)$: 가구

Ⅷ. 통계추정 및 분석

1. 통계추정

1-1 가중치 조정

[소득부문]

- □ 설계가중값
 - 표본설계방법에 따라 설계층 내의 모든 표본가구는 근사적으로 동일한 설계가중값 을 가짐
 - 조사구 추출
 - · (4·5차 연동) 25개 설계층별 단순임의추출 및 계통추출(조사구 내 가구수 동일)
 - · (6차 연동) 27개 설계층별 확률비례계통추출(조사구의 가구수 비례)
 - 가구 추출 : 조사구 내에서 10가구 추출
 - · 4·5차 연동 및 6차 연동 4그룹은 경활 표본구역 중 일부를 선택
 - · 구역 내 표본가구(5가구)는 확률추출에 의해 선정된 가구이며, 구역별 가구 특성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단순임의추출된 것으로 가정

설계 가중값(base weight)
$$w_{hij}^b = \frac{M_h}{n_{h,\,ea}\,M_{hi}} \times \frac{n_{h,\,ea}}{n_h} \times \frac{M_{hi}}{m_{hi}}$$

$$\stackrel{\uparrow}{\underset{\substack{\Delta \in \mathbb{Z} \\ \exists \dot{\mathbb{Z}} \\ \exists \dot{\mathbb{Z}} \\ \exists \dot{\mathbb{Z}} \\ \exists \dot{\mathbb{Z}} \\ \dot{\mathbb{Z}} \\ \exists \dot{\mathbb{Z}} \\ \dot{\mathbb{$$

 $w_{hij}^{\ b}$: h층 i조사구 j가구의 설계가중값

 $\cdot h$: 지역층(16개 시도 및 동부·읍면부, $h=1, \dots, 25$)

· i : 일반조사구

· *j* : 가구

 \cdot M_h : h층의 가구 수

 M_{hi} : h층 i일반조사구의 가구 수

 \cdot $n_{h,ea}$: h층의 경제활동인구조사 표본 조사구 수

 \cdot n_h : h층의 가계소득조사 표본 조사구 수

 \cdot m_{hi} : 조사구 내 표본 가구 수 $(m_{hi}=10)$

□ 무응답 보정

○ 무응답층별 가중값 보정

무응답 보정계수 $w_{g,\,hij}^{\,r} = rac{n_{g,R} + \, n_{g,N\!R}}{n_{g,R}}$

 $: w^{r}_{g,\,hij}: g$ 번째 무응답층 내 h층 i조사구 j가구의 무응답 보정계수

· g : 무응답층 $(g=1\ ,\ \dots\ ,50)$

 \cdot $n_{q,R}$: g번째 무응답층의 응답 가구수

 $n_{q,NR}$: q번째 무응답층의 무응답 가구수

○ 무응답층 구성 방법

- 의사결정나무 분석결과(CHAID 알고리즘)를 이용하여 무응답층 구성
- 설계층, 가구 구분(가구주 직업), 가구원수, 거처유형으로 구분하되,
- 무응답층별 매월 50~250가구, 무응답 보정계수 2미만, 상대표준오차 1내외가 되 도록 셀을 병합하여 최종 50개 무응답층 구성('16년 가계동향조사 기준)

<표> 무응답층(50개)

층	지역	가구구분	가구원수	거처유형	층	지역	가구구분	가구원수	거처유형							
1		사무직	3인 이하		26	대전/울산/	자영자	4인 이상								
2		<u> </u>	4인 이상		27	경기 동부	무직	전체								
3		생산직	2인 이하		28			2인 이하								
4	서울	017	3인 이상		29		사무직	3인								
5		자영자	3인 이하		30			4인 이상								
6		71 071	4인 이상		31			2인 이하	아파트							
7		무직	전체		32			20 99	아파트외							
8			2인 이하		33		생산직	3인								
9		사무직	3인		34	도지역 동부		4인 이상	아파트							
10			4인 이상		35	(경기제외)		40 96	아파트외							
11		생산직 -								2인 이하	아파트	36			2인 이하	
12			2년 에에	아파트외	37		자영자	3인								
13	부산/대구/		3인 이상	아파트	38			4인 이상								
14	인천/광주		25 40	아파트외	39			1인								
15			2인 이하		40		무직	2인								
16		자영자	3인		41			3인 이상								
17			4인 이상		42		사무직	3인 이하								
18		무직	전체	아파트	43			4인 이상								
19		Τ¬	근세	아파트외	44			2인 이하								
20		사무직	3인 이하		45		생산직	3인								
21		\\T\=	4인 이상		46	도지역 군부		4인 이상								
22	대전/울산/		2인 이하		47		자영자	2인 이하								
23	경기 동부	생산직	3인 이상	아파트	48		\\ \O \\(\)	3인 이상								
24		067	5년 시 경	아파트외	49		무직	1인								
25		자영자	3인 이하		50		TH	2인 이상								

□ 사후층화 가중값

○ 설계 당시에 고려하지 못한 모집단의 분포를 보정하고 최신의 모집단 규모를 반 영하기 위해 사후층화를 통해 가중값 조정

○ 사후층 구성

- 설계층(25)×주택유형(2)×가구원수(4)로 196개 사후 가중층(weighting class) 구성
 - * 제주 읍면지역은 아파트 표본이 없으므로 제외
- 사후층별 응답 가구수와 가중값의 분포를 고려하여 최종 165개층으로 병합

<표 80> 사후층(165개, 2015년부터 적용)

지역	기치이처		가구	원수		지역	기뉘이처		가구	원수		지역	기뉘이처		가구	원수	
시역	거처유형	1인	2인	3인	4인+	시역	거처유형	1인	2인	3인	4인+	시역	거처유형	1인	2인	3인	4인+
서울	아파트외					경기 동부	아파트외					경기	아파트외				
시크	아파트					동부	아파트					읍면부	아파트				
부산	아파트외					강원 동부	아파트외					강원 읍면부	아파트외				
구인	아파트					동부	아파트					읍면부	아파트				
-II	아파트외					충북	아파트외					충북	아파트외				
대구	아파트					충북 동부	아파트					충북 읍면부	아파트				
인천	아파트외					충남	아파트외					충남	아파트외				
인선	아파트					충남 동부	아파트					충남 읍면부	아파트				
71.5	아파트외					전북	아파트외					전북	아파트외				
광주	아파트					전북 동부	아파트					전북 읍면부	아파트				
CII TA	아파트외					전남	아파트외					전남	아파트외				
대전	아파트					전남 동부	아파트					전남 읍면부	아파트				
011	아파트외					경북	아파트외					경북	아파트외				
울산	아파트					경북 동부	아파트					경북 읍면부	아파트				
						경남	아파트외					경남	아파트외				
						경남 동부	아파트					경남 읍면부	아파트				
						제주	아파트외					제주	아파트외				
						제주 동부	아파트					제주 읍면부	아파트				

○ 벤치마크 모집단 가구수

- 전체 가구수
 - ·시도 및 가구원수별 가구수 : 장래추계가구 활용
 - ·동/읍면부, 주택유형별 가구수 : 등록센서스 비율 활용(전년 11.1 기준)
- 농가수
 - ·설계층 및 가구원수별 농가수 : 등록센서스 비율 활용(전년 11.1 기준)
- 가계동향 모집단 가구수(비농가) = 전체 가구수 농가수

○ 사후층별 가중값 조정

사후층화 조정계수
$$w_{c,\,hij}^{\,p}=rac{N_c}{\hat{n_c}}$$

 \cdot $w_{c,hii}^{\,p}$: c번째 사후층 내 h층 i조사구 j가구의 사후층화 조정계수

· c : 사후층 ($c=1, \dots, 165$)

 \cdot N_c : c번째 사후층의 모집단 가구수

 \cdot $\hat{n_c}$: c번째 사후층의 무응답 보정계수의 합 (= $\sum_{hij \in c} w_{hij}^r$)

□ 최종가중값

○ 무응답 보정계수에 사후층화 조정계수를 곱하여 작성

○ 분기 가중값

- 최종가중값이 월별로 부여되어 있으므로, 분기별로 모집단 가구수를 보정하기 위하여 3(개월)으로 나눔

$$q$$
분기 최종가중값 $w_{q,\,hij}=rac{w_{hij}^{\,r} imes w_{hij}^{\,p}}{3}$ (가구별 작성)

 \cdot $w_{q,\,hij}$: q분기의 최종가중값

 \cdot $w^{\,r}_{\,hij}$: 무응답 보정계수

 w_{hij}^{p} : 사후층화 조정계수

○ 연간 가중값

- 연간 추정을 위해 분기별 최종값을 4(분기)로 나눔

연간 최종가중값
$$w_{hij} = rac{1}{4} \sum_{q=1}^4 w_{q,hij} \,$$
(가구별 작성)

 \cdot w_{hij} : 연간 최종가중값

· $w_{q,\,hij}$: q분기의 최종가중값

[지출부문]

- □ (무응답가중값) 응답 여부 및 무응답 종류(부재, 불응)에 따른 가구특성에 유의 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최종 응답 결과를 응답, 부재 및 불 응으로 구분*한 후 무응답가중값 작성
 -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을 이용하여 가구 특성별 응 답확률의 역수로 무응답 보정계수 산출
 - 종속변수 : 응답 형태(응답, 부재, 불응)
 - 독립변수 : 지역, 가구원수, 가구원 평균연령, 공시지가, 자가여부, 미취학아동포함여 부, 3·40대, 65세이상 1인가구 여부

□ (사후가중값)

- 설계 당시에 고려하지 못한 모집단의 분포를 보정하고 최신의 모집단 규모를 반 영하기 위해 추계가구 및 인구 분포를 활용한 캘리브레이션 추정방법 이용
 - 성, 연령대별 추계인구분포 및 설계층, 주택유형 및 가구원수별 추계가구분 포를 이용한 캘리브레이션 추정방법 검토
- (인구분포) 2017년 기준 성(2)*연령대(6)별 추계인구분포 이용

<표 5> 추계인구층(12개)

	<20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남성						
여성						

- **(가구분포)** 설계층(11)*주택유형(2)*가구원수(4)별 가구분포 작성
- * 사후층별 응답가구수가 10가구 미만인 경우 주택유형을 병합
 - 2015년 전수 기준 표본추출틀 내 가구분포를 이용하여, 2017년 기준 추계가 구분포 작성

<표 6> 추계가구층(68개)

설계층	거처유형		가구	원수	
걸세궁	기시ㅠ♡	1인	2인	3인	4인+
서울 동부	아파트				
시호 6구	아파트외				
경인 동부	아파트				
70 5T	아파트외				
경인 읍면부	아파트				
경인 답인구	아파트외				
동북 동부	아파트				
0 1 OT	아파트외				
동북 읍면부	아파트				
중독 답긴구	아파트외				
호남 동부	아파트				
エロ 0丁	아파트외				
호남 읍면부	아파트				
조미 미단구	아파트외				
동남 동부	아파트				
00 07	아파트외				
동남 읍면부	아파트				
00 827	아파트외				
충청 동부	아파트				
00 OT	아파트외				
충청 읍면부	아파트				
00 827	아파트외				

- □ (최종가중값) 설계 당시에 고려하지 못한 모집단의 분포를 보정하고 최신의 모집단 규모를 반영하기 위해 추계가구 및 인구 분포를 활용한 캘리브레이션 추정방법 이용
 - 성, 연령대별 추계인구분포 및 설계층, 주택유형 및 가구원수별 추계가구분포 를 이용한 캘리브레이션 추정방법 검토

1-2 이상치 식별 및 처리

[소득부문]

□ 이상치 처리방안

(1) 배경

- ㅇ 이상치는 자료 값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관측치를 의미
- 표본조사에서 이상치를 포함한 경우 추정값의 왜곡발생
 - 표본조사는 가중치를 가지므로 하나의 값이 여러 가구를 대표

(2) 처리방법

○ 이상치는 합리적인 이상치(representative outlier)와 비합리적 이상치(non-representative outlier)로 구분

- 비합리적 이상치는 조사 및 코딩에 의해 발생
- 합리적 이상치는 정확하게 조사되었으나 편향발생 및 정도에 영향
- 비합리적 이상치는 추적조사(follow-up) 및 대체법(imputation)으로 처리
- 합리적 이상치는 이상치를 제거(trim), 다른 값으로 대체시키는 원저화(winsorization) 방법, 가중치를 조정하는 방법(weight reduction), 로버스트 기법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음

(3) 합리적 이상치 처리

- ㅇ 이상치 제거방법
 - 이상치로 판단되는 관측값을 제거
 - 추정치의 분산은 감소하나 실제값 보다 과소(또는 과대) 추정하여 편향발생가능
 - 조사된 값으로 제거하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결과 발생

ㅇ 워저화방법

- 이상치를 제외한 나머지 값 중 최소값(또는 최대값)에 가까운 값으로 이상치를 대체
- 캐나다 이상치 처리로 사용(http://www.statcan.gc.ca/imdb-bmdi/document/ 3226_D40_T9_V1-eng.pdf)

ㅇ 가중치조정법

- 이상치를 제거하거나 대체하는 방법 대신 가중치를 조정하는 방법
- 표본조사에 적합하며 미국, 캐나다 등 국제적으로 많이 활용

ㅇ 로버스트 추정방법

- M-estimation 등의 기법 활용(관심변수와 상관이 높은 보조변수 선택)
- 비추정 및 회귀추정에 사용

(4) 이상치 정의 및 탐색

- ㅇ 허용범위(tolerance interval)에 의한 방법
 - 정렬된 관측치 $y_1, y_2, ..., y_n$ 가 허용범위 [$m-c_1s$, $m+c_u$ 회를 벗어난 경우 m은 위치 추정치, s는 척도 추정치, c_i , c_u 은 절사점(cut-off value) ※ c_i , c_u 는 보통 3을 사용함
- o MAD(Median Absolute Deviation)의한 방법
 - $MAD = median_i(|y_i median_i(y_i)|)$ 으로 중앙값으로 떨어진 정도를 살핌
- o Tukey(1977)는 Box-plot의 상한(하한) 바깥쪽 울타리(outer fences)를 벗어나는 관측

- 즉, $[q_{0.25}-3\,IQ,\ q_{0.75}+3\,IQ]$ 를 벗어난 관측치($:IQ=q_{0.75}-q_{0.25}$)
- 가계동향조사는 Tukey 방법을 검토
- □ 이상치 처리 여부
 - 현재 가계소득조사에서는 이상치 처리를 하지 않음

[지출부문]

- □ 이상치 기준
 - 이상치는 자료 값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관측치를 의미
 - 모든 지출항목 중 Cut-off 이상
 - Tukey 방법과 오차 허용범위 방법으로 구한 상한치를 평균하여 이상치 산정
- □ 이상치 식별 및 처리방법
 - Turkey 방법과 오차 허용범위 방법을 혼합하여 이상치 상한 Cut-off값 산정
 - 이상치를 제외한 최대값으로 대체하는 「윈저화 방법」* 사용하거나 항목변경
 - * 이상치가 추정값 및 분산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 Masking 효과를 고려한 「원저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보임

1-3 통계추정 산식 및 내용

[소득부문]

- □ 평균 추정
 - H-T(Horvitz-Thompson) 추정량

$$\hat{\overline{Y}} = \left(\sum_{h=1}^{H} \sum_{i=1}^{n_h} \sum_{j=1}^{m_{hi}} w_{hij} y_{hij}\right) / w_{...}$$

- · y_{hij} : h층 i조사구 j가구의 관측값(분기, 연간)
- $w_{hij}:h$ 층 i조사구 j가구의 최종가중값(분기, 연간)

$$\cdot \ w_{...} \ = \ \sum_{h \, = \, 1}^{H} \sum_{i \, = \, 1}^{n_h} \sum_{j \, = \, 1}^{m_{hi}} w_{hij}$$

2. 표집오차 추정 방법 및 결과

- □ 분산 추정
 - 잭나이프(Jackknife) 분산추정량

$$\widehat{Var}_{J\!\!K}(\widehat{\overline{Y}}) \; = \sum_{h=1}^{H} \; \frac{n_h-1}{n_h} \sum_{i'=1}^{n_h} \Bigl(\widehat{\overline{Y}}_{(hi')} \; - \; \widehat{\overline{Y}}_{(h.)} \,\Bigr)^2$$

 $\dot{Y}_{(hi')}$: h층의 i'조사구를 제외했을 때의 유사값(pseudo value)

$$\begin{split} \widehat{\widehat{Y}}_{(hi')} &= \frac{\sum_{h} \sum_{i'} \sum_{j} w_{k(hi')} y_{hi'j}}{\sum_{h} \sum_{i'} \sum_{j} w_{k(hi')}} \\ &= \frac{\left(\sum_{h} \sum_{i} \sum_{j} w_{hij} y_{hij} - \sum_{i \in h} \sum_{j} w_{hij} y_{hij}\right) + \frac{n_{h}}{n_{h} - 1} \left(\sum_{i \in h} \sum_{j} w_{hij} y_{hij} - \sum_{j \in i'} w_{hi'j} y_{hi'j}\right)}{\left(\sum_{h} \sum_{i} \sum_{j} w_{hij} - \sum_{i \in h} \sum_{j} w_{hij}\right) + \frac{n_{h}}{n_{h} - 1} \left(\sum_{i \in h} \sum_{j} w_{hij} - \sum_{j \in i'} w_{hi'j}\right)} \end{split}$$

- + $\hat{\overline{Y}}_{(h.)} = rac{1}{n_h} \sum_{i^{\prime}} \hat{\overline{Y}}_{(hi^{\prime})}$: 유사값의 h층 평균
- $w_{k(hi^{\prime})}$: 잭나이프 가중값

$$\cdot \ w_{j(hi')} \ = \ \begin{cases} \frac{w_j}{n_h} & , \ j \not \in h \\ \\ \frac{n_h}{n_h-1} w_j & , \ j \in h, \ j \not \in i' \\ 0 & , \ j \in (hi') \end{cases} , \ (w_j = w_{hij})$$

○ 표준오차(SE) 및 상대표준오차(RSE)

$$\widehat{SE}(\widehat{\overline{Y}}) = \sqrt{\widehat{Var}_{J\!K}(\widehat{\overline{Y}})}$$

$$\widehat{RSE}(\overline{Y}) = \frac{\widehat{SE}(\widehat{\overline{Y}})}{\widehat{\overline{Y}}} \times 100 \, (\%)$$

□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표본오차(cv) (전국 2인이상)

			2018	3 2/4		
 가계수지항목별		전체가구		근로자가구		근로자외가구
	표준오차	상대표준 오차	표준오차	상대표준 오차	표준오차	상대표준 오차
소득	82,583	1.8	101,328	2.0	104,608	2.8
경상소득	82,110	1.8	100,834	2.0	103,436	2.8
근로소득	66,886	2.2	94,499	2.1	39,549	4.5
사업소득	43,858	4.7	24,672	11.8	93,489	4.7
재산소득	3,217	13.8	2,913	18.2	6,158	18.1
이전소득	17,334	3.4	15,310	4.5	33,177	4.3
비경상소득	7,665	20.4	9,313	31.2	13,235	26.9
비소비지출	26,152	2.8	33,025	3.0	26,218	3.7
경상조세	7,933	5.1	12,862	5.6	2,718	5.9
비경상조세	1,610	26.1	2,632	31.5	745	25.4
연금	3,677	2.5	4,911	2.7	3,648	4.2
사회보험	3,947	2.5	4,795	2.7	5,063	4.0
이자비용	5,814	5.6	7,204	6.3	7,475	8.7
가구간이전지출	9,713	3.8	10,399	3.9	14,684	6.1

□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표본오차(cv) (도시 2인이상)

			20	18 2/4		
 가계수지항목별	전체가구		근로자가구		근로자외가구	
	표준오차	상대표준 오차	표준오차	상대표준 오차	표준오차	상대표준 오차
소득	92,635	2.0	112,965	2.2	118,745	3.1
경상소득	92,195	2.0	112,387	2.2	117,686	3.1
근로소득	74,056	2.4	104,253	2.3	43,143	4.8
사업소득	49,510	5.3	27,845	12.3	106,216	5.3
재산소득	3,704	14.4	3,333	18.9	7,125	18.9
이전소득	19,447	3.7	17,006	5.1	37,480	4.7
비소비지출	29,162	3.1	36,593	3.3	29,428	4.2
경상조세	8,918	5.6	14,456	6.1	2,876	6.2
비경상조세	1,858	26.5	3,024	31.8	864	26.4
연금	4,029	2.7	5,347	2.8	3,986	4.5
사회보험	4,412	2.8	5,287	3.0	5,794	4.4
이자비용	5,719	5.6	7,677	6.6	6,749	8.1
기구간이전지출	11,006	4.3	11,593	4.3	16,752	7.0

□ 상대표준오차 활용 방법

- A. 캐나다 표본조사 기준
- 0% ~ 4% : 매우 우수(Excellent)
- 4% ~ 8% : 좋음(Good)
- 8% ~ 16% : 허용 가능(Acceptable)
- 16% : 주의사항과 함께 사용가능(Use with caution)
- ※ 통계표 셀내에 값이 25개이상 권고
- B. Kish 기준
- 10%이하 : 우수(Sufficiently good)
- 20%이하 : 허용 가능(tolerable)
- * 출처 : Kish(1965), Survey Sampling, p218
- C. 호주 표본조사 기준
- 상대표준오차 25%이하 : 대부분 목적에 그대로 사용
- 상대표준오차 25~50% : *표시를 하여 주의하여 이용(Use with caution)
- 50%이상 : **을 표시하여 신뢰가 부족하니 이용 시 주의바람(Too unreliable for general use)
- 가계소득조사의 오차 활용 방법
 - 2018년 2/4분기 전체가구의 비경상조세*의 경우, 표준오차가 26.5%로 해당 수치는 해석 시 유의가 필요하며, 관련 내용을 보도자료에도 수록함.
 - * 비경상조세의 경우 부동산 상속세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일부 가구의 금액으로 인하여 전체 평균 값이 전년 동분기 대비 1000% 이상 차이 날 수가 있음.

[지출부문]

- □ 통계추정 산식
 - O (소분류(항목별) 추정액) 가계부와 연간조사표 항목별 집계
 - 연간조사표 조사 항목은 연간조사 자료, 가계부 조사 항목은 가계부 조사 자료만으로 추정

h는 층, i는 조사구, j는 가구, d는 가계부

 \cdot n_{mh} : m월별 h층의 표본 조사구 수

 \cdot c_{mhi} : m월별 조사구 내 표본 가구수

 $\cdot \; y_{mhij}$: 각 가구마다 가계부의 월별 자료값

 $\cdot \; w_{hij}$: 가구마다 설계가중치, 무응답 보정, 캘리브레이션을 사용하여 보정된 가중치

$$\hat{T}_d = \sum_{m=1}^{12} \hat{T}_{dm}$$

$$\hat{T}_{q} = \frac{\sum_{h=1}^{H} \sum_{i=1}^{n_{h}} \sum_{j=1}^{c_{hi}} w_{hij} x_{hij}}{\sum_{h=1}^{H} \sum_{i=1}^{n_{h}} \sum_{j=1}^{c_{hi}} w_{hij}}$$

 x_{hii} : 공표시점에서의 연간자료값, q는 연간조사표

 $n_h = \sum_{m=1}^{12} n_{mh}$: 모든 표본에 대한 연간자료값(12개월 값)

(소분류) $\hat{\overline{\theta}}_e = \frac{\hat{\theta}_e}{12} \ \text{, } (\ \hat{\theta_e} = \hat{T}_d \ \text{or} \ \hat{T}_q \)$ 연평균추정량

2. 표집오차 추정 방법 및 결과

□ 분산추정량

• 잭나이프(Jackknife) 분산추정 방법 활용

$$Var_{JK}(\widehat{\overline{Y}}) = \sum_{h}^{H} \frac{n_h - 1}{n_h} \sum_{j=1}^{n_h} (\widehat{\overline{Y}}_{(hj)} - \widehat{\overline{Y}}_h)^2$$

• $\hat{\overline{Y}}_{(hj)}$: h시도의 j조사구를 제외했을 때의 추정치

$$\begin{split} \widehat{\widehat{Y}_{(hj)}} &= \frac{\sum_{h} \sum_{j} \sum_{i} w_{i(hj)} y_{hji}}{\sum_{h} \sum_{j} \sum_{i} w_{i(hj)}} \\ &= \frac{(\sum_{h} \sum_{j} \sum_{i} w_{hji} y_{hji} - \sum_{j} \sum_{i} w_{hji} y_{hji}) + \frac{n_{h}}{(n_{h} - 1)} (\sum_{j} \sum_{i} w_{hji} y_{hji} - \sum_{i} w_{hji} y_{hji})}{(\sum_{h} \sum_{j} \sum_{i} w_{hji} - \sum_{j} \sum_{i} w_{hji}) + \frac{n_{h}}{(n_{h} - 1)} (\sum_{j} \sum_{i} w_{hji} - \sum_{i} w_{hji})} \end{split}$$

• $w_{i(hj)}$: 잭나이프 가중값

$$w_{i(hj)} \; = \; \begin{cases} \frac{w_i}{n_h} & , \; i \not \in h \\ \\ \frac{n_h}{n_h-1} w_i & , \; i \in h, \; i \not \in j \\ \\ 0 & , \; i \in (hj) \end{cases}$$

- □ 표준오차(SE) 및 상대표준오차(CV)
 - 표준오차 : 잭나이프 추정방법을 이용한 항목별 평균 추정치 분산의 제곱근

$$\widehat{SE}(\widehat{\overline{Y}}) = \sqrt{\widehat{Var}(\widehat{\overline{Y}})}$$

○ 상대표준오차 : 추정량(평균)의 표준편차로서 측정값의 표준편차를 표본수의 제곱근 으로 나누어준 수치로 '변동계수'라고도 함

$$\widehat{CV} = \frac{\widehat{SE}(\widehat{\overline{Y}})}{\widehat{\overline{Y}}} \times 100$$

- 상대표준오차 활용 방법
- A. 캐나다 표본조사 기준
- 0% ~ 4% : 매우 우수(Excellent)
- 4% ~ 8% : 좋음(Good)
- 8% ~ 16% : 허용 가능(Acceptable)
- 16% : 주의사항과 함께 사용가능(Use with caution)
- ※ 통계표 셀내에 값이 25개이상 권고
- B. Kish 기준
- 10%이하 : 우수(Sufficiently good)
- 20%이하 : 허용 가능(tolerable)
- * 출처 : Kish(1965), Survey Sampling, p218

C. 호주 표본조사 기준

- 상대표준오차 25%이하 : 대부분 목적에 그대로 사용
- 상대표준오차 25~50% : *표시를 하여 주의하여 이용(Use with caution)
- 50%이상 : **을 표시하여 신뢰가 부족하니 이용 시 주의바람(Too unreliable for general use)

○ 가계지출조사의 오차 활용 방법

- 신뢰구간 : 2017년 KOSIS 발표 자료는 95% 신뢰구간을 기준으로 추정치의 표본오 차가 큰 경우에는 추정치에 모두 표시
- 25%이상 '*', 50%이상 '**' 로 표시하여 이용 시 유의
- ※ 신뢰구간 : 점추정(point estimation) 위주로 공표되나 신뢰구간을 고려하여 통계 표의 구간추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 표본오차(cv) (전국 1인이상)

가계지출항목별 -	Y2017	Y2017		
	전체가구	근로자가구	근로자외가구	
D 가계지출	1.48	1.53	2.02	
F 소비지출	1.39	1.46	1.92	
H 01.식료품 · 비주류음료	1.47	1.67	1.88	
H1 곡물	2.77	3.50	3.67	
H2 곡물가공품	1.55	1.83	2.26	
H3 빵및떡류	1.97	2.28	2.88	
H4 육류	2.64	2.86	3.24	
H5 육류가공품	2.86	3.53	3.51	
H6 신선수산동물	2.71	3.50	3.55	
H7 염건수산동물	3.29	4.61	3.95	
H8 기타수산동물가공	3.40	3.64	4.97	
H9 유제품및알	1.66	1.96	2.12	
l1 유지류	4.09	4.45	5.69	
l2 과일및과일가공품	2.09	2.37	2.79	
l3 채소및채소가공품	2.07	2.49	2.49	
l4 해조및해조가공품	3.43	3.96	4.67	
I5 당류및과자류	1.77	2.00	2.77	
16 조미식품	4.83	5.65	5.93	
17 기타식품	2.34	2.54	3.83	
I8 커피및차	2.48	3.05	3.58	
19 쥬스및기타음료	1.89	2.14	3.10	

J 02.주류 · 담배	2.18	2.57	3.31
J1 주류	2.41	3.14	3.81
J2 담배	3.08	3.61	4.43
K 03.의류 · 신발	2.50	2.91	3.38
K1 직물및외의	2.76	3.31	3.69
K2 내의	3.64	4.59	5.47
K3 기타의복	4.51	5.97	5.80
K4 의복관련서비스	6.17	6.52	10.31
K5 신발	3.13	3.77	4.75
K6 신발서비스	10.33	14.18	14.82
L 04.주거 · 수도 · 광열	1.83	2.27	2.24
L1 실제주거비	3.98	5.11	4.79
L3 주택유지및수선	5.85	7.87	8.06
L4 상하수도및폐기물처리	1.99	1.97	2.67
L5 기타주거관련서비스	3.24	2.91	4.40
L6 연료비	2.88	3.13	2.97
M 05.가정용품 · 가사서비스	2.61	3.22	3.29
M0 가구및조명	4.66	5.67	6.18
M1 실내장식	10.02	14.93	12.52
M2 가구·조명및장식서비스	25.67	27.35	37.78
M3 가정용섬유	5.51	6.93	8.01
M4 가전및가정용기기	3.27	4.17	3.96
M5 가전관련서비스	4.09	4.50	6.57
M6 가사용품	4.21	5.03	6.98
M7 가정용공구및기타	5.79	6.87	7.83
M8 가사소모품	1.98	2.40	2.92
M9 가사서비스	10.80	14.90	15.54
N 06.보건	2.43	3.55	3.04
N1 의약품	2.44	3.46	2.83
N2 의료용소모품	3.74	4.36	5.89
N3 보건의료용품및기구	5.46	7.42	7.87
N4 외래의료서비스	2.68	3.72	3.77
N5 치과서비스	5.77	7.96	7.96
N6 기타의료서비스	16.46	21.08	23.20
N7 입원서비스	8.78	13.63	10.71
O 07.교통	2.73	3.12	4.47
O1 자동차구입	5.18	6.18	8.36
O2 기타운송기구구입	11.71	14.30	21.08
O3 운송기구유지및수리	4.39	5.45	6.57
O4 운송기구연료비	2.00	1.92	2.97
O5 기타개인교통서비스	4.92	5.55	8.13
O6 철도운송	5.43	7.05	9.58
O7 육상운송	2.35	2.71	3.32

O8 기타운송	3.30	3.80	4.84
O9 기타교통관련서비스	6.29	7.66	9.90
P 08.통신	1.25	1.32	1.77
P1 우편서비스	11.48	17.64	14.80
P2 통신장비	2.62	3.16	3.92
P3 통신서비스	1.16	1.20	1.69
Q 09.오락 · 문화	2.17	2.12	3.39
Q0 영상음향기기	5.22	6.83	8.90
Q1 사진광학장비	15.63	17.79	30.02
Q2 정보처리장치	4.69	5.69	7.28
Q3 기록매체	25.18	35.18	23.04
Q4 영상음향및정보기기수리	13.55	19.99	18.56
Q5 오락문화내구재	10.34	13.20	16.89
Q6 악기기구	12.36	14.06	19.56
Q7 오락문화내구재유지및수리	21.50	24.89	34.79
Q8 장난감및취미용품	5.07	5.92	8.48
Q9 캠핑및운동관련용품	8.07	8.75	15.13
R0 화훼관련용품	5.86	7.40	7.63
R1 애완동물관련물품	5.64	8.00	7.45
R2 화훼및애완동물서비스	9.91	12.47	16.69
R3 운동및오락서비스	4.68	5.75	6.38
R4 문화서비스	2.69	2.97	4.12
R5 복권	7.26	8.65	14.97
R6 서적	4.30	5.39	6.39
R7 기타인쇄물	8.53	14.47	9.58
R8 문구	4.41	5.01	7.15
R9 단체여행비	3.68	3.80	5.27
S 10.교육	3.12	3.40	4.81
S2 초등교육	7.27	8.14	14.34
S3 중등교육	5.01	6.69	8.43
S4 고등교육	4.83	5.92	7.63
S5 학원및보습교육	3.84	4.09	6.11
S6 학생학원교육	4.03	4.27	6.58
S7 성인학원교육	6.95	6.69	10.82
S8 기타교육	7.67	9.27	15.02
T 11.음식 · 숙박	1.42	1.42	2.08
T1 식사비	1.43	1.44	2.07
T5 숙박비	5.49	5.61	10.70
U 12.기타상품 · 서비스	2.00	2.33	3.15
UO 이미용서비스	2.40	3.11	3.19
U1 이미용기기	15.16	19.98	15.58
U2 위생및이미용용품	2.20	2.67	3.16
U3 시계및장신구	9.21	11.94	12.12

U4 기타개인용품	5.00	6.41	9.40
U5 복지시설	7.67	7.72	15.38
U6 보험	1.82	1.97	2.91
U7 기타금융	12.99	15.58	13.82
U9 기타서비스	7.05	8.04	10.48
W 비소비지출	2.10	2.17	2.90
W1 경상조세	2.91	2.92	4.63
W2 비경상조세	14.77	17.30	25.72
W3 연금	1.98	1.76	3.78
W4 사회보험	1.81	1.72	3.15
W6 이자비용	3.56	3.75	5.44
W7 가구간이전지출	3.44	4.03	4.13
W8 비영리단체로이전	2.50	3.23	3.49

□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 표본오차(cv) (도시 1인이상)

기계되ᄎ하모병	Y2017			
│ 가계지출항목별 │	전체가구	근로자가구	근로자외가구	
D 가계지출	1.64	1.68	2.35	
F 소비지출	1.54	1.60	2.24	
H 01.식료품 · 비주류음료	1.66	1.82	2.24	
H1 곡물	3.00	3.85	4.09	
H2 곡물가공품	1.78	2.01	2.73	
H3 빵및떡류	2.19	2.49	3.28	
H4 육류	3.04	3.16	3.93	
H5 육류가공품	3.24	3.91	4.07	
H6 신선수산동물	3.16	3.83	4.41	
H7 염건수산동물	3.86	5.17	4.64	
H8 기타수산동물가공	3.73	4.11	5.50	
H9 유제품및알	1.85	2.12	2.48	
l1 유지류	4.71	4.82	6.78	
l2 과일및과일가공품	2.33	2.56	3.23	
13 채소및채소가공품	2.34	2.68	2.99	
l4 해조및해조가공품	3.99	4.39	5.68	
l5 당류및과자류	1.95	2.16	3.26	
l6 조미식품	4.99	5.66	6.82	
17 기타식품	2.58	2.75	4.37	
18 커피및차	2.81	3.36	4.23	
19 쥬스및기타음료	2.05	2.34	3.45	
J 02.주류 · 담배	2.52	2.88	4.09	
J1 주류	2.79	3.50	4.64	
J2 담배	3.61	4.08	5.53	
K 03.의류 · 신발	2.80	3.21	3.91	

K1 직물및외의	3.08	3.66	4.24
K2 내의	4.08	5.05	6.35
K3 기타의복	5.14	6.69	6.74
K4 의복관련서비스	6.83	7.16	11.42
K5 신발	3.48	4.08	5.53
K6 신발서비스	11.04	15.17	15.79
L 04.주거 · 수도 · 광열	2.03	2.48	2.59
L1 실제주거비	4.26	5.45	5.27
L3 주택유지및수선	6.85	8.48	10.61
L4 상하수도및폐기물처리	2.17	2.10	2.95
L5 기타주거관련서비스	3.40	3.08	4.56
L6 연료비	3.47	3.55	3.80
M 05.가정용품 · 가사서비스	2.98	3.53	3.99
M0 가구및조명	5.14	6.11	6.97
M1 실내장식	9.25	12.07	14.69
M2 가구·조명및장식서비스	29.35	31.54	41.06
M3 가정용섬유	6.19	7.66	9.18
M4 가전및가정용기기	3.71	4.56	4.67
M5 가전관련서비스	4.61	4.91	7.78
M6 가사용품	4.80	5.57	8.32
M7 가정용공구및기타	6.92	7.81	9.85
M8 가사소모품	2.24	2.66	3.53
M9 가사서비스	12.82	15.96	20.77
N 06.보건	2.75	3.86	3.58
N1 의약품	2.85	3.80	3.51
N2 의료용소모품	4.01	4.66	6.48
N3 보건의료용품및기구	6.00	8.27	8.86
N4 외래의료서비스	3.08	4.08	4.63
N5 치과서비스	6.64	8.45	9.72
N6 기타의료서비스	18.20	23.21	25.99
N7 입원서비스	10.48	15.23	13.52
O 07.교통	3.08	3.48	5.28
O1 자동차구입	5.75	6.83	9.41
O2 기타운송기구구입	13.31	15.64	25.32
O3 운송기구유지및수리	5.20	6.19	8.23
O4 운송기구연료비	2.34	2.17	3.65
O5 기타개인교통서비스	5.36	5.85	9.59
O6 철도운송	5.84	7.54	10.53
O7 육상운송	2.54	2.80	3.90
O8 기타운송	3.40	3.88	5.00
O9 기타교통관련서비스	6.59	7.85	11.43
P 08.통신	1.37	1.44	2.04
P1 우편서비스	13.41	20.39	17.13

P2 통신장비	2.84	3.41	4.42
P3 통신서비스	1.29	1.30	1.97
Q 09.오락 · 문화	2.36	2.28	3.80
Q0 영상음향기기	5.67	7.16	10.53
Q1 사진광학장비	16.73	18.99	32.60
Q2 정보처리장치	5.12	6.22	7.97
Q3 기록매체	26.86	36.59	25.28
Q4 영상음향및정보기기수리	14.53	21.76	19.83
Q5 오락문화내구재	10.94	14.14	18.66
Q6 악기기구	13.34	14.45	22.77
Q7 오락문화내구재유지및수리	22.93	26.72	36.87
Q8 장난감믳취미용품	5.60	6.43	9.44
Q9 캠핑및운동관련용품	8.97	9.45	17.52
R0 화훼관련용품	7.11	8.54	9.53
R1 애완동물관련물품	6.74	9.27	9.58
R2 화훼및애완동물서비스	11.08	14.07	18.63
R3 운동및오락서비스	4.97	6.13	6.88
R4 문화서비스	2.96	3.15	4.76
R5 복권	7.76	8.67	17.28
R6 서적	4.60	5.70	6.96
R7 기타인쇄물	9.27	15.33	10.70
R8 문구	4.81	5.29	8.12
R9 단체여행비	3.98	4.01	5.89
S 10.교육	3.31	3.60	5.15
S2 초등교육	7.73	8.64	15.42
S3 중등교육	5.35	7.13	9.34
S4 고등교육	5.27	6.25	8.67
S5 학원및보습교육	4.10	4.38	6.60
S6 학생학원교육	4.30	4.57	7.11
S7 성인학원교육	7.40	7.00	11.86
S8 기타교육	8.28	10.02	16.75
T 11.음식 · 숙박	1.55	1.54	2.31
T1 식사비	1.57	1.57	2.32
T5 숙박비	5.86	6.02	11.39
U 12.기타상품 · 서비스	2.19	2.50	3.68
UO 이미용서비스	2.65	3.31	3.77
U1 이미용기기	16.06	20.80	16.92
U2 위생및이미용용품	2.40	2.90	3.48
U3 시계및장신구	10.02	12.86	13.38
U4 기타개인용품	5.33	6.86	10.56
U5 복지시설	8.13	7.92	17.90
U6 보험	2.00	2.13	3.39

U9 기타서비스	8.00	8.76	12.43
W 비소비지출	2.35	2.37	3.34
W1 경상조세	3.12	3.08	5.18
W2 비경상조세	17.20	19.57	30.39
W3 연금	2.12	1.86	4.29
W4 사회보험	1.98	1.87	3.51
W6 이자비용	3.84	4.00	6.01
W7 가구간이전지출	3.94	4.43	4.62
W8 비영리단체로이전	2.85	3.57	4.19

Ⅷ. 통계공표, 관리 및 이용자서비스

3-3 국가간 비교성

[소득부문]

- □ 외국의 동일목적 통계
 - 미국 :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부가조사(CPS ASEC : Annual Social and Economics Supplements to the Current Population Survey)
 - 미국의 가구단위 소득통계로는 ① CPS ASEC(Annual Social and Economics Supplements to the Current Population Survey)외에도 ② ACS (American Community Survey), ③ SIPP (Survey of Income and Program Participation), ④ Census 2000 long form 및 ⑤ SAIPE (Small Area Income and Poverty Estimates program) 등이 있음
 - 프랑스 : Household budget survey(5년 주기, 20,000가구), 소득, 지출
 - 조사항목은 소비, 지출, 소득 및 재정상태에 대한 의견, 인구통계적 특성 비소비지출을 포함한 모든 지출이 해당되며, 세금 및 기부금, 보험료, 주택수선비, 가구내 이전, 중고품 구입, 대출상환 등임

일인당 지출 뿐 아니라, 비화폐소비에 관한 정보를 수집

• 자가소비목적 음식생산 및 귀속임료 등

가구의 재원을 포함하며, 개인소득과 가구 전체가 받은 수입 등을 조사함

- 일본 : 가구지출조사는 5년 주기의 '전국가계조사(National Survey of Family Income and Expenditure)'와 월간 '가계조사(Family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로 이원화되어 있음
 - 전국가계조사는 5년마다 약 57,000가구를 대상으로 가계의 소득과 지출, 주요 내구재의 상태, 주택특성 및 토지소유 여부를 조사함
 - 가계조사는 매월마다 약 9,000가구를 대상으로 전국 수준의 평균적인 가계의 소득과 지출 의 움직임을 파악
- 뉴질랜드 :full HES : Household Economic Survey
 - 조사기간(T1) 1년, 조사주기(T2) 3년, 조사1회당 응답기간(T3) 2주임
 - (T1, T2, T3) = (1년, 3년, 2주) / 표본가구의 응답회수는 1회임
 - 가구경제조사(HES)는 소득 및 지출, 개인 및 가구특성과 관련한 종합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함

- 이 조사는 개인과 가구 수준에서 모든 원천별 연간 소득을 보여줌
- 소득에 대해 주(week) 기준이 아닌 연간(year) 척도는 생활수준에 대해 보다 나은 지표를 제공할 수 있으며, 연간 척도가 소득에 대해 보다 장기적 관점을 제공하기 때문임
- HES는 매우 상세하게 개별 가구의 소득원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가구소득에 기여하는 각 원천의 비중을 보여줌

OECD 회원국의 소득 분배지표 관련 작성통계

	OECD 소득분배지표 (Gini계수 산출지표)	
국가명	통계명	형태
호주	Survey of Income and Housing	소득
오스트리아	From 2004 on, the data source is the EU Survey of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EU SILC)	EU-SILC
벨기에	From 2004 on, the data source is the EU Survey of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EU SILC)	EU-SILC
캐나다	Survey of Labour and Income Dynamics	소득
칠레	From 2006, the data source is the CASEN survey	소득
체코공화국	Data for 1992, 1996 and 2002 are from micro census. From2004on,thedatasourceistheEUSurveyofIncomeandLivingConditions(EUSILC)	EU-SILC
덴마크	Danish Law Model System	행정자료
에스토니아	EU Survey of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EU SILC)	EU-SILC
핀란드	For 1986, 1995 and 2000, the data source is the Income distribution Survey. From2004on,thedatasourceistheEUSurveyofIncomeandLivingConditions(EUSILC)	EU-SILC
_프랑스	From 1996 on, the data source is the Fiscal and Social Income Survey	소득
독일	From 1995 on, the data source is the German Socio Economic Panel (all Länder).	_
그리스	From 2004 on, the data source is the EU Survey of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EU SILC)	EU-SILC
헝가리	Hungarian Household Panel/Household Monitor Survey	소득
_ 아이슬란드	EU Survey of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EU-SILC
아일랜드	From 2004 on, the data source is the EU Survey of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EU SILC)	EU-SILC
이스라엘	CBS household expenditure survey	소득/지출
이탈리아	From 2008 on, the data source is the EU Survey of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EU SILC)	EU-SILC
일본	data are from the Comprehensive Survey of Living Condition of the People on Health and Welfare.	소득/자산
대한민국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combined with Farm Household Economy Survey)	소득/지출
룩셈부르크	For 1986, 1996, 2001 and 2004, the data source is the Income distribution Survey. From 2005 on, the data source is the EUSurvey of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EUSILC)	EU-SILC
멕시코	Survey of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소득/지출
네덜란드	Income Panel Survey	소득
뉴질랜드	Household Economic Survey	소득/지출
	From 2008 on, the data source is the Income Statistics for Household	행정자료
폴란드 	From 2004 on, the data source is the EU Survey of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EU SILC)	EU-SILC
포르투갈	From 2004 on, the data source is the EU Survey of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EU SILC)	EU-SILC
슬로바키아	EU Survey of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EU SILC)	EU-SILC
슬로베니아_	EU Survey of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EU SILC)	EU-SILC
스페인	From 2004 on, the data source is the EU Survey of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EU SILC)	EU-SILC
_스웨덴	Income Distribution Survey	소득
스위스	For 2009, the data source is the EU Survey of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EU SILC)	EU-SILC
터키	Data for 2004 are from the Household Income and Consumption Survey. From 2007 on, the datasource is the Household Income and Living Condition Survey.	소득/지출
<u>영국</u>	From 1999 on, the data source is the Family Resources Survey	소득
미국	Annual Social and Economic Supplement to the Current Population Survey.	소득

^{*} 출처 : OECD database의 국가별 GINI계수의 meta-data.

주) 통계형태 중 '소득'은 가구소득조사, '소득/지출'은 소득과 지출에 대한 통합조사, 소득/자산은 소득과 자산에 대한 통합조사를 의미하며 유럽연합의 EU SILC에 의한 현행 형태는 소득조사에 가까우나 향후 소득, 지출 및 자산에 대한 통합조사의 과도기적 형태이므로 별도로 'EU-SILC'라 표기함.

- 캐나다 : Survey of Household Spending : 면접 19,541가구,
 - 면접 응답자 대상 가계부(2주) (※ 월별 1,500가구), 소득, 주택형태, 지출, 고용형태, 컴퓨터 등 보유
 - 홈페이지: http://www.statcan.ca
- 영국 : Living costs and Food Survey : 11,484가구, 가계부(2주, 지출) 조사표-소득 (혹은 소득구간별), 주소득원, 정부보조, 개인연금수혜, 소득세, 해외이전지출, 이자소 득, 주식배당
 - 홈페이지: http://www.dwp.gov.uk/asd/frs)
- 호주 : Household Expenditure Survey : 9,774가구(6년 주기), SIH의 Sub-sample, 가 구의 15세이상 개인 가계부(2주)
 - 홈페이지: http://www.abs.gov.au
- 프랑스: Household budget survey(5년 주기, 20,000가구), 소득, 지출
 - 홈페이지: http://www.insee.fr

[지출부문]

- □ 외국의 동일목적 통계
 - 미국 : Consumer Expenditure Interview Survey : 면접조사(매분기)
 - 7,500가구*4회, 가계부(2주) 13,000가구*2주 (※ 주별 500가구), 소득(혹은 소득구간), 지출, 주택담보대출
 - 홈페이지: http://www.bls.gov/cex/
 - 캐나다 : Survey of Household Spending : 면접 19,541가구,
 - 면접 응답자 대상 가계부(2주) (※ 월별 1,500가구), 소득, 주택형태, 지출, 고용형태, 컴퓨터 등 보유
 - 홈페이지 : http://www.statcan.ca
 - 영국 : Living costs and Food Survey : 11,484가구, 가계부(2주, 지출) 조사표-소득 (혹은 소득구간별), 주소득원, 정부보조, 개인연금수혜, 소득세, 해외이전지출, 이자소 득, 주식배당
 - 홈페이지: http://www.dwp.gov.uk/asd/frs)
 - 호주 : Household Expenditure Survey : 9,774가구(6년 주기), SIH의 Sub-sample, 가 구의 15세이상 개인 가계부(2주)
 - 홈페이지 : http://www.abs.gov.au
 - 프랑스: Household budget survey(5년 주기, 20,000가구), 소득, 지출
 - 홈페이지: http://www.insee.fr

□ 외국통계청 홈페이지 주소

말레이시아 통계청 www.statistics.gov.my
일본 통계청 web-japan.org/stat
일본 내각부 www.cao.go.jp
뉴질랜드 통계청 www.stats.govt.nz
호주 통계청 www.abs.gov.au

- EU통계청 europa.eu.int/comm/eurostat

- 영국 통계청 www.statistics.gov.uk/

- 독일 통계청 www.destatis.de

- 스위스 통계청 www.statistik.admin.ch

- 그리스 통계청www.statistics.gr- 핀란드 통계청tilastokeskus.fi- 프랑스 통계청www.ined.fr- 아이슬랜드 통계청www.statice.is- 이태리 통계청www.istat.it- 노르웨이 통계청www.ssb.no- 스웨덴 통계청www.scb.se

- 스페인 통계청 www.ine.es

- 덴마크 통계청 www.dst.dk

- 캐나다 통계청 www.statcan.ca/start.html

- 미국 연방 통계청 www.fedstats.gov

<주요국 가계동향조사의 특징>

- □ 각국의 가구단위지출조사통계는 면접조사와 가계부조사 방식을 혼용하고 있으며, 면접조사는 가구특성에 대한 정보와 더불어 지출규모가 크고 빈번하지 않은 지출에 대해 조사하고, 가계부조사는 규모가 작고 빈번한 지출에 대해 2주가 자기기입식으로 조사하는 경향이 있음
 - 호주와 프랑스는 면접조사와 2주간의 가계부조사 혼용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조사주기 가 각각 6년과 5년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장기임
 - ㅇ 이스라엘은 가구가계부 외에 가구원 가계부를 조사함
 - 뉴질랜드는 가구워 가계부 외에 가구워 소득설문까지 조사함
 - 덴마크는 전자가계부를 도입하였으며, 한 해 표본규모는 대략 860가구 수준이어서 3개년 의 조사결과를 평균하여 1개년의 자료로 이용하고 있음 (따라서, 조사주기를 3년으로 평 가함)
- □ 그러나 우리나라, 일본, 캐나다, 미국의 가계동향조사는 다음과 같이 다른 나라와는 매우 다른 독특한 특징을 가짐

- "모든 표본"에 대해, "매월"마다, "가계부조사"방식으로, "소득·지출"을 모두 조사하는 통계를 생산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함
- 일본은 5년 주기의 '전국가계조사(National Survey of Family Income and Expenditure)' 를 통해 전국 가구의 소비지출구조를 파악하고, 전국가계조사가 실시되지 않는 기간 동안, 매월 주기의 '가계조사(Family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를 통해 소비구조의 변화를 파악함
 - 전국가계조사가 전수조사는 아니지만, '전국가계조사'와 '가계조사'는 '인구센서스'와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관계와 같이, 전수조사와 표본조사의 관계를 가짐
- ㅇ 캐나다의 가계동향조사는 소득을 대해 직접 조사하지 않고 행정자료를 통해 수집함
- 미국은 (분기) 연동표본이며, 면접조사와 가계부조사방식을 혼용하는 점은 다른 나라와 동일하나, 면접조사표본과 가계부조사표본이 동일하지 않은 독립적인 2개 표본을 갖는다는 점이 특징임. 한편 분기단위로 면접표본 및 가계부표본 각각에서 조사된 내용을 통합하여 제공하며, 연단위로만 공표하되, 마이크로데이터에서는 월단위로 변환된 소득과 지출을 제공함

3-4 동일영역 통계와 일관성

[소득부문]

□ 가계금융복지조사와의 비교

	가계소득조사	가계금융· 복지조사	
조사연혁	1963 도시가계조사 최초실시2003 읍면지역 조사 확대	 2010 가계금융조사 최초 실시 2012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 조사부문 확대 및 표본 개편 	
조사목적	• 가구의 수입과 비소비지출 파악	 자산, 부채, 소득 등의 규모 및 분포, 재무건전성 파악 가계 생활수준 등의 변화, 지속기간 파악 	
조사주기	∘ 매월조사, 분기공표	∘ 매년조사	
조사단위	• 가구	• 가구(일시적으로 떨어진 가구원 포함)	
표본규모	。 8,700가구(2,800가구)*	• 약 20,000가구	
조사방법	· 면접조사원 기입	• 매년 조사원 면접조사(one-shot 조사), 패널조사로 운영	

□ OECD 자료 제공

- **(가계동향조사) 가구의 월간 수입과 지출** 정도를 조사하여 가계부문의 소득 및 소비수준 변화를 측정
 - 현재 **각종 법령**(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및 복지시설 입소자 선정 등)에서 가계동향조사 소득 자료를 주요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OECD 등 국제기구에도 공식 소득통계로 제공*
 - * 다만, 가계동향조사를 활용하여 2016년까지 소득분배지표를 작성하고, 관련 자료를 OECD에 제공하였으나, 가계동향조사 개편 등으로 인하여, 현재('18.10) 통계청의 소득분배지표 통계는 연간자료인 가계금융복지조사로 이관된 상태임.
- ('17년 이전 OECD 요청현황) OECD는 회원국의 소득분배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매년 자료를 요청하고 있음

- 요청자료 :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 빈곤율, 빈곤갭 등 800여개 항목

- 요청주기 : 매년

<붙임> 연도별 OECD 제공 및 활용현황

연도 ¹⁾	(<u>제 공 현 황</u>)	(<u>활용현황</u>) OECD 발간 보고서 및 가이드라인
2008	·2006년 자료 제공	· Growing unequal?
2009		OECD Factbook 2009 Society at a Glance 2009 Pensions at a Glance 2009
2010	·2006년, 2008년 자료 제공 (연간가중치 작성방법 변경)	OECD Factbook 2010Divided we stand : why inequality keeps rising?
2011		·Society at a Glance 2011 ·Pensions at a Glance 2011
2012	·2006~2011년 자료 제공	· OECD Factbook 2012
2013	·2012년 자료 제공	 OECD Factbook 2013 Pensions at a Glance 2013 OECD Framework for Statistics on the Distribution of Household Income, Consumption and Wealth²⁾ OECD Gudidelines for Micro Statistics on Household Wealth**
2014	※ Wave7 반영여부 검토	OECD Factbook 2014 Society at a Glance 2014
2015	· 2013년(1월), 2014년(12월)	· In it together · Pensions at a Glance 2015

□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 제공방법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데이터를 새롭게 집계 가공하지 않고, 마이크로데 이터(원시자료) 형식으로 제공
 - 집계자료 제공 기준
- 1982년 이후 자료부터 제공 가능함
- 마이크로데이터자료 이용시 유의사항
 - 이용자가 지켜야할 사항
 - 모든 원시자료는 기본 조사목적(보고서 및 조사지침서 참조)에 알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안 됨
 - 연구 발표 및 공표 : 통계청 발표 범위 내에서 연구 발표 및 공표
 - 자료이용시 유의사항
 - 조사항목이 동일하여도 조사연도에 따라 개념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음
- □ 요구방법 :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시스템(http://mdis.kostat.go.kr)에서 요구
 - MDIS 접속, 로그인
 - 추출, 다운로드 → 조사영역 선택 → 항목 선택 → 추출 실행 → 다운로드
- □ 소요 시간: 10분 이내
- □ 제공자료 포맷
 - TEXT 파일
 - * 단, SAS 및 SPSS로 변환코딩 제공
- □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시스템(http://mdis.kostat.go.kr)에서 서비스 이용
 -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

인가용 마이크로데이터(승인용, 특수목적용) 제공절차 및 제공기일 안내

제공절차 및 소요기일 이용 신청 (이용자) 이용 신청 (이용자) 이용 신청 (이용자) 이용자료 생성 (기일) 전구계획서 검토* 이용자료 생성 (기일) 전기계획서 검토* (기일) 결과물 검토 (기일) 결과물 제공

이용신청: MDIS에 로그인하여 보안서약서 연구계획서 요약 통계자로 이용방법을 작성하여 신청,분석결과를 반출 승인요청 소요기일: 일반적인 신청 검토 자료생성 결과를 반출승인 기간(분석기간은 제외)은 5일 이내이며, 제공기준이나 제공범위를 벗어나는 자료를 신청한 경우 이의 검토기간이 최소 2일, 최대 15일이 소요됨

- **원격접근서비스(RAS)**: 장기 시계열자료, 자료 간의 연계, 인출의 모집단을 활용한 표본추출, 시간·장소와 관계없이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최소2일, 최대15일
- 이용센터서비스(RDC): 여러 종의 통계와 이용자의 보유통계 간의 연계, 장기 시계열 자료를 활용한 새로운 모집단·분석통·모현개발 통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최소 7일, 최대 15일
- 주문형서 비스 : 개인, 사업체 등 민감 식별정보를 활용하여 자료 간의 연계가 필요한 경우 제공부서 작업기간 최소 1일, 최대 64일

* 연구계획서 검토: 연구가치, 응답자 자료보호 여부, 요청자료의 이용필요성 등

< 공공용 MD 추출·다운로드 프로세스>

추출·다유로드 안내

♠ 홈 > 데이터이용 > 추출·다운로드 > 추출·다운로드 안내

□ 추출·다운로드란?

• 이용자가 원하는 공공용 마이크로데이터를 개인PC에 직접 다운로드 받아 분석·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 추출·다유로드 이용 프로세스



01 추출 다운로드는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02 조사부문, 항목을 선택합니다. 선택한 항목의 순서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03 데이터다운로드를 실행합니다. 주기적으로 사용하는 항목이라면 자주쓰는 항목으로 저장하여 재미용 시 편리하게 미용하실 수 있습니다.

< RAS 이용 프로세스>

원격접근서비스 안내

♠ 홈 > 데이터이용 > 원격접근서비스 > 원격접근서비스 안내

원격접근서비스란?

이용자가 집, 사무실 등에서 직접 인터넷을 통해 승인용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승인용 마이크로데이터는 개인 PC에 다운로드 되지 않고, 가상의 서버에서 분석한 뒤 분석 결과표만 통계청의 반출승인을 받아 개인PC에 다운로 드 할 수 있습니다.

◘ 원격접근서비스 이용 프로세스



- 01 원격접근서비스는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 02 원격접근서비스신청서(연구계획서 포함)를 작성합니다.
- 03 통계청 관리자가 접수된 신청서의 내용 확인 후 승인며부를 결정합니다. 반려되는 경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 04 통계청 관리자가 신청자가 요청한 이용자료를 생성합니다.
- 05 통계청 관리자의 승인이 이루어지면 사용자는 MY서비스 > 데이터이용현황에서 결제를 진행합니다. 결제 진행 전 이용자 준수사항 동의가 필요합니다. 결제는 신용카드, 무통장입금, 실시간계좌이체로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 06 결제 완료 후 원격시스템을 이용합니다.
- 07 신청자가 생성한 데이터는 반출 전 통계청 관리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 08 통계청 관리자의 승인 후 MDIS 웹사이트에서 생성한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출부문]

- □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 제공방법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데이터를 새롭게 집계 가공하지 않고, 마이크로데 이터(원시자료) 형식으로 제공
 - 집계자료 제공 기준
 - 1982년 이후 자료부터 제공 가능함
 - 마이크로데이터자료 이용시 유의사항
 - 이용자가 지켜야할 사항
 - 모든 원시자료는 기본 조사목적(보고서 및 조사지침서 참조)에 알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안 됨
 - 연구 발표 및 공표 : 통계청 발표 범위 내에서 연구 발표 및 공표
 - 자료이용시 유의사항
 - 조사항목이 동일하여도 조사연도에 따라 개념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음
- □ 요구방법 :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시스템(http://mdis.kostat.go.kr)에서 요구
 - MDIS 접속, 로그인
 - 추출, 다운로드 → 조사영역 선택 → 항목 선택 → 추출 실행 → 다운로드
- □ 소요시간 : 요구 자료에 따라 다름(최소 1일, 최대 5일, 평균 2~3일 소요)
- □ 제공자료 포맷
 - TEXT 파일
 - * 단, SAS 및 SPSS로 변환코딩 제공

Ⅸ. 참고문헌

1. 국제기준 또는 권고안

[소득부문]

- □ 캔버라 가구소득통계 핸드북(UN, 2011)
- □ OECD
 - 소득분배지표 요청 가이드라인(Wave6) http://oe.cd/idd
 - Canberra Group Handbook on Household Income Statistics-second edition 2011
 -

https://www.unece.org/fileadmin/DAM/stats/groups/cgh/Canbera_Handbook_2011_WEB.pdf

- O Growing Unequal: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in oecd countries
 - www.oecd.org/els/social/inequality

[지출부문]

- □ 해외 문헌
 - Canberra Group Handbook on Household Income Statistics-second edition 2011

 https://www.unece.org/fileadmin/DAM/stats/groups/cgh/Canbera_Handbook_201
 WEB.pdf
 - Expert Group on Household Income Statstics The Canberra Group http://www.lisdatacenter.org/wp-content/uploads/canberra_report.pdf

2. 동일통계 외국자료

[소득부문]

□ 외국의 가계소득조사

국가별	구분	조사명	Gini (OECD)
미국	소득	○ CPS Annual Social and Economic Supplements : 97,000가구 소득, 사회적수혜, 재산소득, 의료보험료지출, 주택가격, 양육비지출	0
	소득	○ 2013년부터 Canadian Income survey(32,000기구)로 전환 고용, 소득, 주거비, 후원금, 양육비, 공적이전소득, 소득세, 국세자료와 연계	0
캐나다	소득・지출	Survey of Household Spending: 면접 19,541가구, 면접 응답자 대상 가계부(2주) (※ 월별 1,500가구) 소득, 주택형태, 지출, 고용형태, 컴퓨터 등 보유	조사표
	소득・자산	○ Family Resource Survey(매년), 25,000가구, 소득, 주거비, 자산, 저축, 직업, 연금	0
영 국	소득・지출	○ Living costs and Food Survey : 11,484가구, 가계부(2주, 지출) 조사표 -소득(혹은 소득구간별), 주소득원, 정부보조, 개인연금수혜, 소득세, 해외 이전지출, 이자소득, 주식배당	
호 주	소득·자산 (大)	 Survey of Income and Housing : 18,000가구(2년 주기) HH Expenditure Survey가구 포함, 면접시 생활비, 자산, 부채, 일반 지출(관리비), 가구집기 수리비, 가전, 여행비, 육아및교육비, 의료비, 대출 	○ 조사표
<u> </u>	+ 소득· 지출(小)	 Household Expenditure Survey : 9,774가구(6년 주기), SIH의 Sub-sample, 가구의 15세이상 개인 가계부(2주) 	
일 본	소득ㆍ저축 부채	○ Comprehensive Survey of Living Condition(국민생활기초조사): 29만가구(매 3년, 매년간이조사), 1개월간의 소비지출총액, 1년간소득	0
	소득ㆍ저축 소비ㆍ부채	○ Family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가계조사), 저축, 부채	
	소득	○ Tax and Social Income Survey(56,000가구), 행정자료와 연계, 소득, 세금	0
프랑스	소득・지출	○ Household budget survey(5년 주기, 20,000가구), 소득, 지출	
	<i>소</i> 특·자산·부 채	○ Household Wealth Survey, 자산, 부채, 소득, 재정상태	
덴마크	소득	○ Danish Law Model System 행정자료 이용	0
	소득・지출	○ Household Budget Survey, 소득, 소비, 직접세	
이스라 엘	소득(大) · 지출	○ The Income Survey는 HH Expenditure Survey와 통합하여 15,000가구(1997년 이후 연간) 5분기 조사(조사시 월별로 조사)	
네델란 드	소득・자산	Income Panel Survey 행정자료 이용	0
	소득・소비 ・저축	Household budget survey, 5년마다, 다이어리와 질문지, 소비, 소득, 정기 저축(contractual savings), 간단한 취업질문	
뉴질랜 드	소득・지출	○Household Economic Survey, 4,700가구, 3년마다, 매년간이조사, 소유 내구재	0

□ 미국

1. 조사명

소비자 지출 조사(CE: Consumer Expenditure Survey)

홈페이지: http://www.bls.gov/cex/

2. 조사개요

- 의의 : 소득과 미국소비자의 소비습관 및 특성과 관련된 자료 제공
- 주관기관
 - · Bureau of the Census : 조사, 코딩, 에디팅
 - · Bureau of Labour Statistics : 에디팅, 분석, 공표
- 조사주기 : 분기
- 조사단위 : 소비단위(1. 혈연, 입양 및 결혼 포함 2. 타인과 함께 사는 개인 3. 2인이상 비혈연 가구) 및 개인
- 조사부문
 - 면접조사
 - · 1차조사 : 인구학적특성, 가족특성, 주요내구재 목록
 - · 2~5차조사 : 1차조사시의 항목에 지출항목 추가
 - 5차특별조사 : 자산 및 부채변동사항
 - 가계부조사 : 지출항목을 조사
 - 세전 소득(면접조사)
 - · 임금 및 봉급
 - · 사회보장수혜금, 사·공적퇴직금
 - · 자영업자소득: 순사업소득, 순농업소득
 - 재산소득
 - · 이자소득 · 배당소득, 로열티, 부동산, 신탁
 - 하숙비 기타 임대소득
 - · 실직수당, 근로자보조금, 퇴역군인보조금
 - · 공적보조, 생활보조금, 식권배급
 - · 정기적인 보조금
 - · 자녀양육비·이혼수당을 포함한 기타정기적인 보조금
 - · 기타소득
 - 급여로서의 식사 및 월세제공 기타
 - 지출항목(면접조사 + 가계부조사)
 - · 영업상 지출 및 이미 얻은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카드대금이나 할부금은 제외하고, 구매한 날에 모두 지불하지 않았더라도 총 금액을 기입
 - 7대 지출비목: 식료품, 주거, 피복 및 서비스, 교통, 보건의료, 교양오락, 기타지출

- · 조세: 연방소득세, 주 및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보장세
- 소득분배관련 통계
- 4, 5, 10분위별 소득
- · 지니계수, 빈곤율

3. 자료수집방법

가계부조사와 분기별 면접조사와 가계부 작성을 통해 수집(면접조사는 매3개월마다 5분기동안 조사, 제5분기에는 전4분기의 자료를 모두 조사)

4. 표본규모

약 7.760가구

5. 표본추출 방법

1990년 센서스를 토대로 만든 105개의 주요표본단위(primary sample units)에서

- A: 150만명 이상의 대도시 지역

- B: 150만명 미만의 대도시 지역

- C : 소도시 지역

- D : 비도시 지역을 고려하여 표본을 추출

로 나누어 추출

6. 집 계

표준오차 및 상대표준오차 등 다양한 표본오차를 제공함으로써 가계동향조사의 신 뢰성을 제고. 통계자료는 연평균 자료로 공표되어짐

□ 영국

1. 조사명: 가계지출조사

FRS: Family Resources Survey

홈페이지: http://www.dwp.gov.uk/asd/frs)

2. 조사개요

- 의의 : 소득 및 일반가구의 환경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물가지수의 가 중치 자료를 제공함
- 주관기관 : 국가통계청(ONS), 사회리서치센터와 함께 노동연금부(DWP 구, 사회복 지부)가 실시
- 조사주기: 1년
- 조사대상 : 전국의 가구 및 개인
- 조사부문
 - · 소득원천별 가구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투자소득, 연금, 기타사회보장수혜
 - 소비지출항목

식비음료수 및 담배, 연료비, 의복신발, 가사서비스, 자동차 관련비, 개인용품, 교통·오락, 가구가사비 등

• 기타항목

생명보험료, 연금지출비, 의료보험료 및 기타사회보험료, 조세 및 환급액, 저축투자, 부채감소, 부동산구입, 주택부금상환, 국민연금

3. 자료수집방법

가계부 기입(2주간), 면접시 CAPI(Computed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 방법 이용

4. 표본규모

24,988여 가구(총 37,870중 66%)

5. 표본추출 방법

Royal mail's small users Postcode Address File(PAF)로부터 층화집락확율 추출

6. 발표

가구당 주당 소비지출 자료를 발표

□ 독 일

1. 조사명

독일 사회경제 패널조사(German Socio-Economic Panel)

홈페이지 : http://www.diw.de/gsoep/

2. 조사개요

○ 의의 : 가구 및 개인에 대한 마이크로 자료를 수집하여 가족의 안정성 및 삶의 상태의 변화를 특정하여 사회 및 경제연구자 및 정책수립자에게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

> 패널 및 지역간 비교분석이 가능하고, 외국인 및 이민자에 대한 자료도 수 집

- 주관기관 : DIW(Deutsches Institute Wirschaftsforschung)
- 조사주기 : 연간
- 조사대상 : 전국 일반전가구 및 개인
- 조사부문

교육, 직업, 산업 및 가구부문과 개인부문에 대해 사회경제적 부문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자료를 포함함

3. 자료수집방법

면접자 기입방법

4. 표본규모

가구: 전국 11,947가구

개인 : 28,368명중 22,351명 면접(17세 이상)

5. 표본추출 방법

주거 연령층 및 연령에 따라 6종으로 나누어 추출함(지역집락 다단임의추출). 표본은 기초단위와 제2단계의 추출단계를 거치며, 가중치는 횡단면 및 시계열의 가중치를 달리 적용함

6. 모수추정

다른 하위 및 무응답의 표본을 교정하기 위해서 시계열 및 횡단면별로 다른 가중치 (개인 및 가구별)를 적용

□ 프랑스

1. 조사명

가구생활비조사(FBS, Family budget survey)

홈페이지: http://www.insee.fr

2. 조사개요

- 의의 : 프랑스 가구의 정도 높은 소비지출과 소득 자료를 측정하고, 저축율 등 정책에 활용하는 자료 생산
- 주관기관 : INSEE(France's National Institute of Statistics and Economic Studies)
- 조사주기 : 5년
- 조사대상 : 일반 도시가구(시설가구 제외)
- 조사부문

가계부 등 기본항목은 14세 이상의 가구원 모두 작성하고, 교육과 노동시장 관련은 15세이상, 소득관련은 16세 이상이 모두 작성하여, 그 밖에 교육정도, 직업, 산업 등을 조사

3. 자료수집방법

CAPI(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를 이용한 면접조사(대부분 16세 이상은 개인단위, 주거수당, 가족수당, 자본소득, 이전소득 및 비경상수익 등은 가구단위)와, 14세 이상이 기재하는 가계부를 통하여 지출부분을 조사함

4. 표본규모

10,035가구, 25,803명이 조사에 응함 (연락된 가구 중 62%가 조사를 마침)

5. 표본추출 방법

1990년 주거 센서스파일을 기본으로 새로운 주택관련 자료로 보충된 자료를 표본 틀로하여 20,000가구에서 단순 추출함.

6. 모수추정

전 인구로 환산할 수 있도록 가구당 가중치가 있음

7. 집계

소득 및 무응답의 범주형 변수들을 모두 추정하여 임퓨테이션함

□ 캐나다

1. 조사명

가계지출조사(SHS Survey of household spending)

홈페이지: http://www.statcan.ca

2. 조사개요

- 의의 : 가구특성, 가구원수, 가구당 평균소비지출, 평균가구 규모, 중위지출 등을 파악하고. 국민계정 등 추계에 자료를 제공하기 위함
- 주관기관 :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
- 조사주기 : 매년
- 조사대상 : 10개의 도의 일반가구(인디언보호구역, 외국공관 및 그들의 가족, 병 영내 거주하는 군인 및 시설가구거주자 제외)
- 조사부문 : 소득, 자산, 주택크기, 주거형태, 가구특성, 직업, 가구형태, 소비패턴 등

3. 자료수집방법

조사표를 이용한 면접조사(매년초 2개월간 조사)

4. 표본규모

가구: 20,446가구(2004년 기준)

개인 : 72,850명(여기에서 15,409명은 16세미만 어린이이고, 57,441명은 노동 및

소득면접에 응하는 개인임)

5. 표본추출 방법

"매월 노동력조사"의 표본틀에서 추출하며 층화다단확률추출법을 이용하여 추출

6. 집계

캐나다 지방통계청에서 전산입력 및 내검 → 논리성과 일관성에 대한 전산내검(오 류와 경고)→ 근접이웃자료 등을 이용한 임퓨테이션의 체계를 거침

□ 호 주

1. 조사명

소비지출조사(Household Expenditure Survey)

수입 및 주택조사(Household Income and housing)

홈페이지: http://www.abs.gov.au

2. 조사개요

○ 의의 : 소득 빈곤의 분배 자료로 활용

○ 주관기관 : 호주 통계청(ABS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 조사주기 : 부정기(최근 : 2000-2001)

○ 조사대상 : 외국 주둔군, 대외공관 및 오지 등을 제외한 일반 전가구

○ 조사부문 : 교육, 직업, 산업, 가구특성, 가구원, 직업, 주거, 가구소득, 자산, 부채,

세금, 주택대출 등

3. 자료수집방법

면접조사, 가계부조사(2주간의 소비를 가계부에 기록), CAI(computer assisted interview)방법 이용(소득은 개인별로 수집)

4. 표본규모

가구: 6,786가구(총 약7,000가구 중)

개인: 13,193명(15세이상 총 약15,500명 중)

5. 표본추출 방법

월간인구조사(MPS Monthly population survey)의 사적 주거로부터 하위 표본 월간인구조사의 표본은 사적 주거와 기타 주거 표본목록으로부터 다단 추출임

6. 집계

횡단면 자료 추계(시계열이 아님). 가중치를 적용하면 총인구에 대한 자료가 나오 도록 설계됨

※ 상대표준오차 25%이하는 신뢰성이 양호한 자료, 20~50%는 '*'를 하여 이용시 주 의하여 이용할 것을 표시하였으며, 50%이상은 '**'를 표시하여 신뢰가 부족하니 이 용시 매우 주의하라는 표시를 하여 공표

□ 일 본(www.stat.go.jp)

1. 조사명

가계조사(지정통계56호) 가계소비상황조사, 전국소비실태조사

2. 조사개요

- 의의 : 가구의 다양한 소비실태를 파악하여 국민계정 및 소비자물가산정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각종 사회경제정책의 참고자료 제공
- 주관기관 : 총무성 통계국 통계조사부 소비통계과
- 조사주기 : 매월(6개월간)
- 조사대상 : 전국 2인이상 일반가구 및 단독가구(가구단위 통계)
- 조사부문 : 경상수입, 특별수입, 근로수입, 정기수입 등, 사업 및 자가생산수입, 기타경상수입 등의 소득자료와 매일 기록하는 지출 자료, 세대원, 주거 등에 한 사항

3. 자료수집방법

가계실태란(타계식), 가계부(자계식), 연간수입조사표(자계식)

4. 표본규모

약 9,000가구(단독가구 포함), 연동표본으로 매달 1/6씩 교체

5. 표본추출 방법

인구총조사(국세조사)를 표본틀로하여 층화집락추출

6. 모수추정방법

모수 추정방법은 별도로 공개된 자료가 없으며 가구당 월평균 소득 및 지출자료를 공표

7. 집계 및 기타

조사원이 지도원을 경유하여 도도부현에 제출하고 다시 총무성통계센터에서 전산집 계를 통하여 공표

이외에도 일본에서는 국민생활기초조사, 소득재분배조사 및 전국소비실태조사를 실시함

□ 네덜란드

1. 조사명

네덜란드 사회경제 패널조사(Dutch Socio-Economic Panel)

홈페이지 : http://www.scp.nl/miss/sep.htm

2. 조사개요

○ 주관기관 : 네덜란드 통계청(Centraal Bureau voor de Statistiek)

○ 조사주기 : 연간조사

○ 조사대상 : 전국 일반가구

○ 조사부문 : 소득, 시간이용, 인구학적 자료, 전망, 소비, 저축, 부채

3. 자료수집방법

전년자료를 조사(예: 1999년 자료를 2000년 4월에 시작하여 9월에 수집을 마침)

4. 표본규모(2000년 기준)

가구: 5,008가구

개인: 12,445명(16세 이상)

5. 표본추출 방법

2단계로 나뉨. 첫 번째는 지방자치단체, 두 번째 단계는 주소임. 표본은 자체가중치를 갖도록 설계됨. 새로운 가구는 각 회에 없어진 가구를 보충하기 위해 합해짐. 표본추출틀은 모든 우편주소를 포함하는 "기본 지역적 등록"을 통함

6. 모수추정방법

시계열 자료, 개인 가중치만 존재. 가중치는 표본의 인구에 대한 인구 및 지역적 특성에 적합됨

7. 집계절차

시계열 및 횡단면 자료를 추계. 가중치는 개인 시계열 자료만 적용. 가중치는 표본의 인구학적 및 지역적 속성을 인구에 적합시킴

[지출부문]

- □ 해외 유사 통계
- 미국 : Consumer Expenditure Interview Survey, 홈페이지 : http://www.bls.gov/cex/
 - 통계테이블 https://www.bls.gov/cex/tables.htm
 - 관련문서(유저가이드) https://www.bls.gov/cex/csxreport.htm
- 캐나다 : Survey of Household Spending, 홈페이지 : http://www.statcan.ca
 조사개요
 http://www23.statcan.gc.ca/imdb/p2SV.pl?Function=getSurvey&SDDS=3508
 - 통계테이블

https://www150.statcan.gc.ca/n1/en/subjects/income_pensions_spending_and_wealth/household_spending_and_savings/household_spendingf

- 관련문서(유저가이드) https://www150.statcan.gc.ca/n1/en/catalogue/62F0026M
- 영국 : Living costs and Food Survey, 홈페이지 : http://www.dwp.gov.uk/asd/frs - 조사개요

https://www.ons.gov.uk/peoplepopulationandcommunity/personalandhouseholdfinances/expenditure

- 통계 테이블

 $\frac{\text{https://www.ons.gov.uk/peoplepopulationandcommunity/personalandhouseholdfinances/expenditure/compendium/variationintheinflationexperienceofukhouseholds}{2014-12-15/variationintheinflationexperienceofukhouseholds20032014referencetable} \underline{s}$

○ 호주 : Household Expenditure Survey, 홈페이지 : http://www.abs.gov.au

3. 기타 문헌 [소득부문]

] 찬고문	헑
- 1	TT 1'-	'n,

O Canberra Group Handbook on Household Income Statistics-second edition 2011
 Expert Group on Household Income Statistics – The Canberra Group Final Report and Recommendation
O Household Budget Surveys in the EU
 Growing Unedual?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in OECD countries
O System of National Accounts 1993
 Classification of Expenditure According to Purpose Classification of Individual Consumption According to Purpose (COICOP)
○ 일본 가계동향조사 지침서(家計調査 手引)
 Handbook on poverty Statistics: Concepts, Methods and Policy Use - UNSD
O Designing Household Survey Samples : Practical Guideline
Current Population Survey - technical paper 63Design and Methodology(US Census Bureau, BLS)
 Household Expenditure Survey : Australia User Guide for the Survey of Household Spending : Canada

[지출부문]

□ 참고문헌 : 소득부문과 동일